

臺灣省立圖書館藏 臺灣省立圖書館藏
臺灣省立圖書館藏 臺灣省立圖書館藏

1400

1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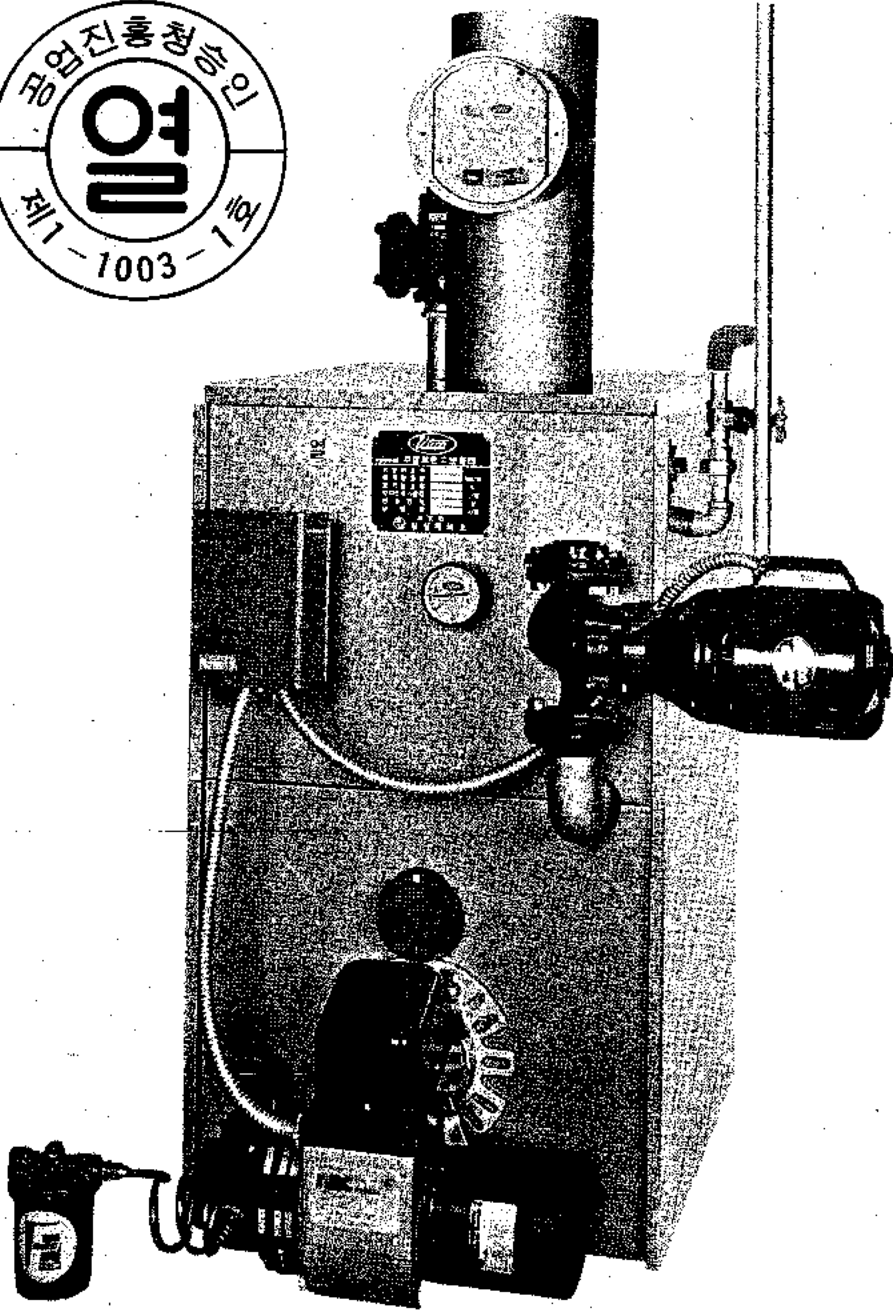


Cast Iron Boilers

놀라운 성능 · 연료비 절감 · 영구적인 수명

※ 난방 / 급탕 겸용 ※

Utica **유티카** **자동 보일러** **신제품**



製造元：三成製作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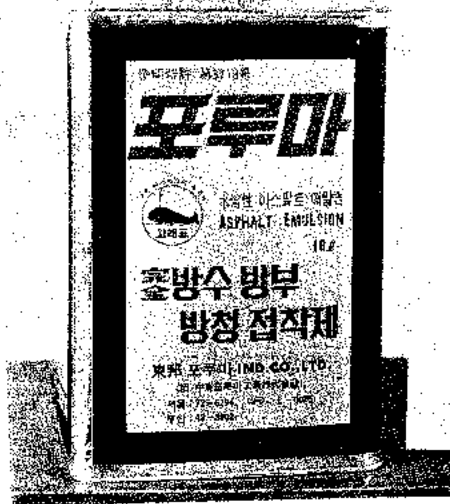
유 보 商 事

서울特別市 中区 忠武路 4 街 126-1 号

進洋商街 1 층 2 동 나열 109 号

TEL: 26-2807 · 26-8015

아스팔트는 끓이는 시대에서 水溶性·아스팔트(ASPHALT·EMULSION)시대로!



完全 방수제 동방 포루마

포루마방수 일위대가표 (m²당)

방수종별	3 회 방수공법	P.P 망 첨부 특수공법		지 하 실 방 수
		5회공법(P.P망 1회)	8회공법(P.P망 2회)	
방수개소	벽면, 옥실, 정화조, 물 탱크, 지하실외벽 등	옥상, 균열벽면	균 열 옥 상	지 하 실 (1층당)
포 루 마 (KR-3)	243.00	324.00(4회)	486.00(6회)	지하실 외벽은 3회 공법적용
포루마止水用(KR-5)				67.50
P.P 망		120.00	241.72	
포루마시공공임	311.91	415.00	624.00	52.28
방수층 혼합세멘트				
바 탕 정 리				
공사준비비용				
보 호 을 탈				
소 계	554.91	860.74	1,351.75	119.76(1층당)
공과잡비 (%)				
합 계				
※방수외벽은 2회도장후 수성페인트로 마감하며, 내벽은 2회도장후 벽지를 붙인다.		포루마(KR-3)는 유연성, 접착력, 내한성 등이 우수하며 P.P망은 인장강도가 강하므로 포루마 5회공법은 아스팔트 8겹 방수의 성능을 능가함.		※수압에 따라 층수가 상이할 포루마止水用은 액체방수, 분말방수등과는 달리 강도가나 면서 균열과 모체분리가 없음.

1975年分

포루마 물발방수

포루마는 수성 아스팔트 인으로 세멘트와 혼합하여도 100% 방수가 됨.

방수실링공사

포루마와 질석을 혼합하면 신축이 우수하고, 완벽한 배수가 됨.

스치로폴 접착

스치로폴을 붙이고, 스치로폴과 자체를 방수하며 스치로폴위에 마감을 할수 있으므로 스치로폴을 옥상상부로 올려 단열방수 있음.

포루마 (KR-3) 1회 도장時 1m²당 소요량

명	칭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세멘트 혼합시
포루마(KR-3)		0.27	ℓ			300.00		81.00		0.2kg 별도계상

포루마止水用(KR-5) 1층당 시공비 (1m²당)

포루마止水用	0.27	ℓ		250.00		67.50				
방 수 공	0.012	인		1,780		21.36				액체방수용생기준
인 부	0.03	인		1,030		30.90				"
※바탕정리, 방수층혼합용세멘트, 보호모로부터는 별도 계상										

포루마도장 방수공임 (1m²당 1회)

방 수 공	0.037	인		1,780		65.86				아스팔트용생기준
인 부	0.037	인		1,030		38.01				"
※ 바탕정리 모르타르바르는 별도 계상										

P.P 망 깔기 (1m² 당 1회)

P.P 망	1.10	m ²		50.00		55.00				중복원본10%가산
깔기 방수공	0.037	인		1,780		65.86				
※ 깔기 인건비가 포함되었음.										

방수 (설계) (시공) 문의는

東邦 포루마 IND. CO., LTD.

서울 : 29-1718 대전 : 3-5255

부산 : 43-45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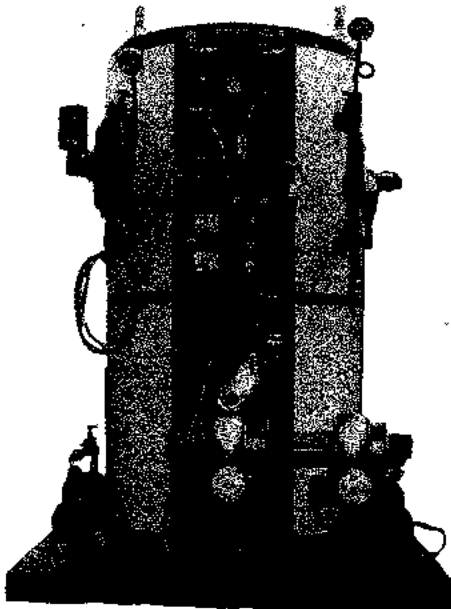
Rocket Boiler

연료비 40% 절약!

로켓트
보일러

工產品 品質管理法에 의한 優秀商品 指定

燃料 使用器機大會 商工部 優秀賞受賞



ROCKET BOILER는

증기용전자동보일러

선박용 보일러

건조용 보일러

공장 난방용 보일러

을료수용 보일러

가정용 온수 보일러

전자동 오일 버너

연탄 보일러

0.5톤, 0.2톤 소형 전자동 증기 보일러가 필요하신 (압력 3.5kg/cm²) 섬유공장, 증기다리, 설탕정조, 열색기, 세탁, 기숙사 1,000명 이상 취사용, 화학반응기 등에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전자동이므로 관리원이 필요치 않으며 연료비와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500TON 미만의 선박난방 및 온수 공급용 전자동 보일러

전조실의 온도를 자유 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전자동 건조용 (증기, 온수) 보일러 (피혁공장, 섬유공장, 식품공장, 화학공장)

전열 20평 ~ 600평 까지 난방용 자동 증기, 온수 (관리자가 필요없음) 보일러

시간당 20TON 미만의 온수 온수 (보일러내수 완전도급)가 필요한 공장 등에 온수공급용 전자동 온수보일러

가정용 난방 급탕 겸용 전자동 온수보일러

미국 하니웰 자동, 섀트 스텝드 펌프 등, 부품을 적수입하여 제작된 전자동 오일버너

온수, 난방, 취사 겸용한 20평 미만의 소형 연탄 보일러

※ 관리 유지비가 없고 최고의 안전도 저렴한 시설비, 연료비 40%를 절약하시려면 Rocket Boiler에 問議하십시오.

※ Rocket Boiler의 보조품에 유의하시고 Rocket 상표를 확인하십시오.

Rocket Boiler는 영하 40℃의 북양어선 선실난방부터 국내 공장 산업시설, 동남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여러분의 안방까지 우수한 성능으로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 사우디아라비아 · 일본으로 수출되는
ROCKET BOILER

※ 건축사를 위한 로켓트 보일러 특성표 ※

TYPE ITEM	종 류 단 위	로켓트 기동 보일러 (가정용 공장용)										로켓트 스탬보일러		로켓트 연탄보일러			
		KR-40	KR-60	KR-80	KR-100	KR-150	KR-200	KR-250	KR-300	KR-400	KR-500	KRS-200	KRS-500	KR-191	KR-192	KR-193	KR-194
발 열 량	Kcal/hr	20,000	30,000	50,000	70,000	100,000	150,000	170,000	200,000	320,000	410,000	120,000	320,000	3,110	6,220	9,330	12,440
난방가능평수	Heating Area	20-30평	30-50	60-80	80-100	100-150	150-200	200-250	250-300	300-400	400-500	200	480-600	3-4	6-9	12-15	18-20
관 수 용 량	ℓ	105	122.9	166.6	178	308	396	573	824	920.9	1280	-	-	35	81	105	130
연료 소비 량	L/HR	3-5	5-6.5	6-8	8-11	11-15	15-20	20-24	24-27	32-36	44-56			19공탄	19공탄	19공탄	19공탄
수압 시험압력	kg/cm ²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8	2	2	2	2
배관 구경	㎜	50	50	65	65	75	75	75	75	100	100	65	75	32	40	40	50
연통 규격	㎜	150	150	200	200	250	250	300	300	350	400	250	360	100	100	100	100
바 나	HP	⅜	⅜	⅜	⅜	⅜	⅜	⅜	⅜	⅜	⅜	⅜	⅜				
외형 직 수	Ø	470	540	610	610	690	800	900	1000	1300	1400	800	1100	430	650	950	1,250
외형 직 수	H	1150	1150	1200	1450	1600	1750	1750	1850	2000	2,300	1750	2200	590	590	590	590
중 량	kg	320	340	420	440	480	520	580	620	720	900	720	2400	780	138	203	269
로켓트 보일러이달가격	공 장 도	158,400	202,000	266,900	301,400	410,900	512,400	580,700	690,900	1,149,800	1,278,400	본 체 280,000 자동장치 527,500	본 체 608,000 자동장치 1,270,000	50,400	82,400	109,000	148,500
로켓트 바나이달가격	공 장 도	194,300	194,300	194,300	246,800	246,800	246,800	246,800	276,300	312,800	312,800						
보일러·바나 합계 금	공 장 도	353,700	396,300	461,200	548,200	657,600	759,200	837,500	968,200	1,462,700	1,591,200	1,207,500	2,878,000				



고려강철주식회사
KOREA STEEL PRODUCTS CO., LTD.

제 1 공장 : 서울 · 영등포구 외발산동 288 - 1

전 화 : 27-9358 · 26 · 1135 ~ 6 · 66-1363 · 66-2810



韓國유리工業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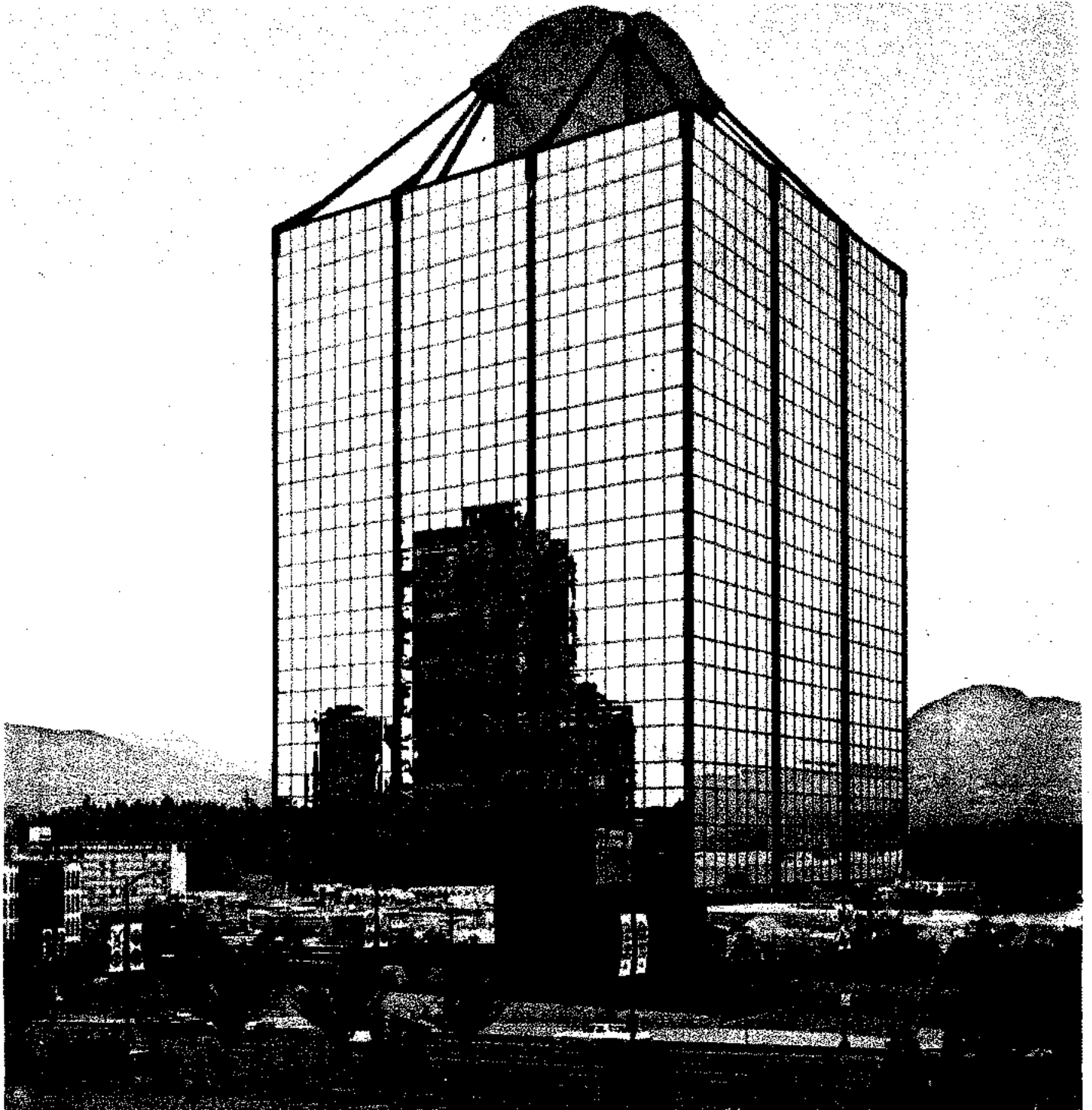
本社：서울特別市 中区 西小門洞75 / 電話：(23) 7141~45
仁川工場：仁川市 東区 萬石洞2 / 電話：仁川 (3) 0111~0119
釜山工場：慶南梁山郡日光面伊川里 / 電話 釜山 (52) 4066~4070

※ 제품 안내

맑은유리, 무늬유리, 강화유리,

각종전구발브, 유리블럭, 관유리 < 조명용
의료기용

各國의 建物들 (씨리즈Ⅲ)



국명：Canada 도시명：British Columbia 주 Vancouver시 빌딩명：The Westcoast Building.

삼원보일러

삼원기름보일러

미국 SBI 규격품

실용신안특허 제7210호
공업진흥청 형식승인필

특징

- ※완전자동 ※최영관특수식 3 - PASS
- ※연료비 20% 절감 ※급탕 겸용
- ※보일러청소간편 ※수명 15년 보장

삼원보일러

종류	형단 위	S-1	S-2	S-3	S-4	S-5	S-6	S-7
발열량	Kcal/Hr	20,000	30,000	50,000	70,000	100,000	150,000	200,000
연료소비량	L/Hr	2.5	3.7	7	9	12.5	18.7	25
수압시험압력	Kg/cm ²	4	4	6	6	6	6	6
진열면적	m ²	2.15	2.68	3.71	5.62	7.4	11.57	16.26
연료직경	mmφ	200	200	250	250	250	300	300
배관구경	mm A	50	50	65	65	80	80	80
마나	HP	1/4	1/4	1/4	1/4	1/4	1/4	1/4
외형치수	W	cm	52	52	57	61	61	80
	H	cm	91.5	91.5	105	122	122	140
	L	cm	55	70	82	92.5	123	120
난방면적	평	30~40	40~60	60~100	100~140	140~200	200~300	300~400
삼원보일러본체가격	공장도(원)	130,000	160,000	200,000	250,000	330,000	440,000	550,000

삼원보일러 연탄용



Smile Boiler

특징 스마일보일러

- ※내부표면특수처리제작
- ※상부 복사열 100% 흡수
- ※탄재가 밀으로 처리됨
- ※수명 일반품의 3배
- ※상하부 2중가열 특수식
-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

연탄보일러

형식종류		SB-1	SB-2	SB-3	SB-4	SB-5
발열량		2탄용 (1열2탄)	3탄용 (1열3탄)	쌍2탄용 (2열2탄)	쌍3탄용 (2열3탄)	3열3탄용 (3열3탄)
수압시험압력	Kg/cm ²	3	3	3	3	3
사용연탄	크기	22	22	22	22	22
연료	mmφ	80	80	80	90	90
배관구경	mm A	25	25	25	25	32
설치방법		부뚜막식	보일러식	부뚜막식 보일러식	보일러식	보일러식
난방면적	평	3~5	5~6	6~10	10~14	14~20
가격	원	35,000	50,000	60,000	95,000	130,000

실용신안 특허출원
1845 · 1846

용도 : 주택, 아파트
병원, 여관



주식
회사

삼원기계

서울 영등포구 등촌동 148

TEL. 63-8872, 전시장 42-8550

正確, 迅速, 便利한 製図機器! SEVEN 平行製図板 輸入品!

数年前부터 美国, 西欧, 日本等 各国의 建築, 土木, 電機, 電子等 技術士들은 이 endless wire-機構에 依한 平行製図板 使用이 常識化되어 普及되었습니다.

型: DM 型: 평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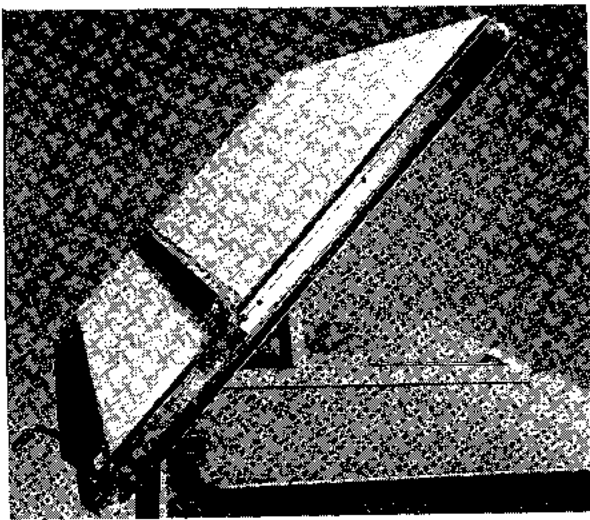
DBM型: 입체 사면용

DKM型: 책상위에 장치

規格: 各 75cm×105cm (中型)

90cm×120cm (大型)

MODEL DKM-70 ↓



※ Seven平行製図板은 一年間 after service하며 部品の 有料 交換도 可能합니다.

製造元 日本国SEVEN工業(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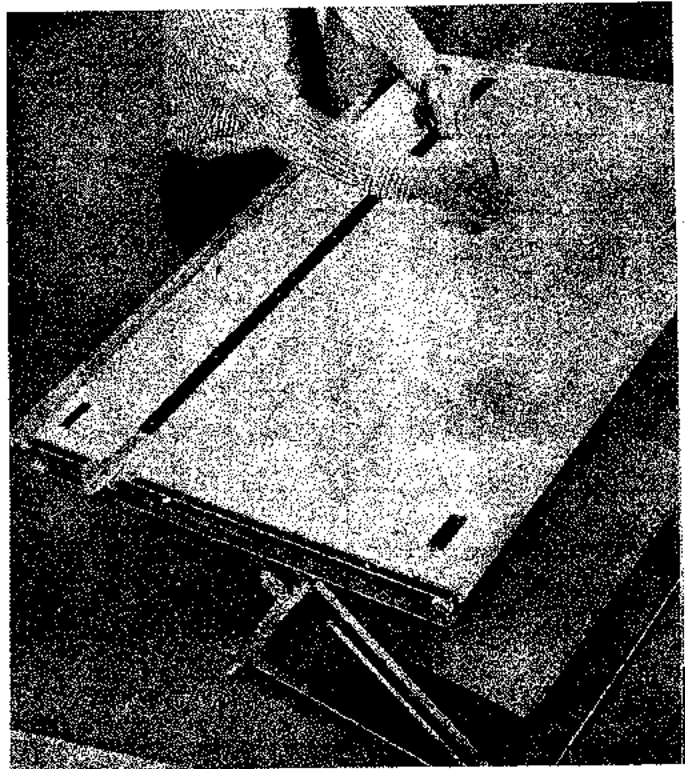
輸入總販

自由商社 電話: 76-1110

서울·中区明洞2가87-3

코스모스百貨店옆 明德빌딩

C. P. O. BOX 27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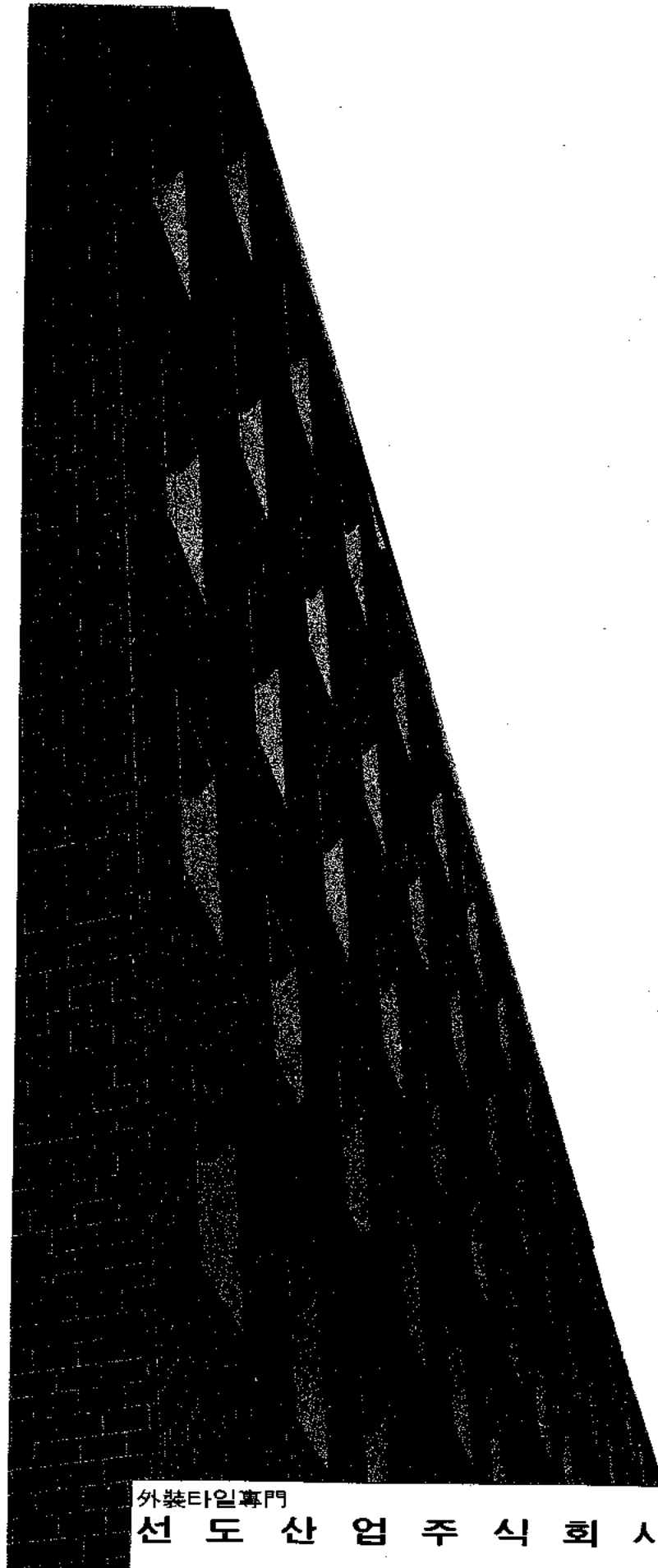


MODEL DBM-90 ↑

❖ 製図機器의 新輸入稀貴品!

- ① Screen tone (200余種) 美製
- ② Color tone (70余種) 美製
- ③ Trepeal paper (찢어지지않는 트레이싱 페이퍼)
- ④ Kent stand holder (製図板 위의 図面걸이)
- ⑤ 製図用 sharp 0.5mm 日製 pentel와 同芯, 色은 黑, 朱赤色, 青色, 茶褐色
- ⑥ TOTO便器 template (조 조 조 조)
- ⑦ 各種 template
- ⑧ Tracing paper 紙端補綴機와 同 테이프
- ⑨ 製図器 KENT 26品 輸入品
- ⑩ 製図板과 製図台, 日製 輸入品

끝없는 空間創造가 이 素材에서...



鮮陶外裝타일은

耐寒・耐酸性이 强하고

優雅한 色感

美麗한 色相

刺戟性있는

余分の 光澤을 除去한
表面의 多様な 色度處理...

지금부터

建材에 必要한 條件을

完全히 具備한

需要家注目の 製品입니다.

(特殊形狀, 特殊치數의 注文도
引受하고 있습니다)

外裝타일專門

선도산업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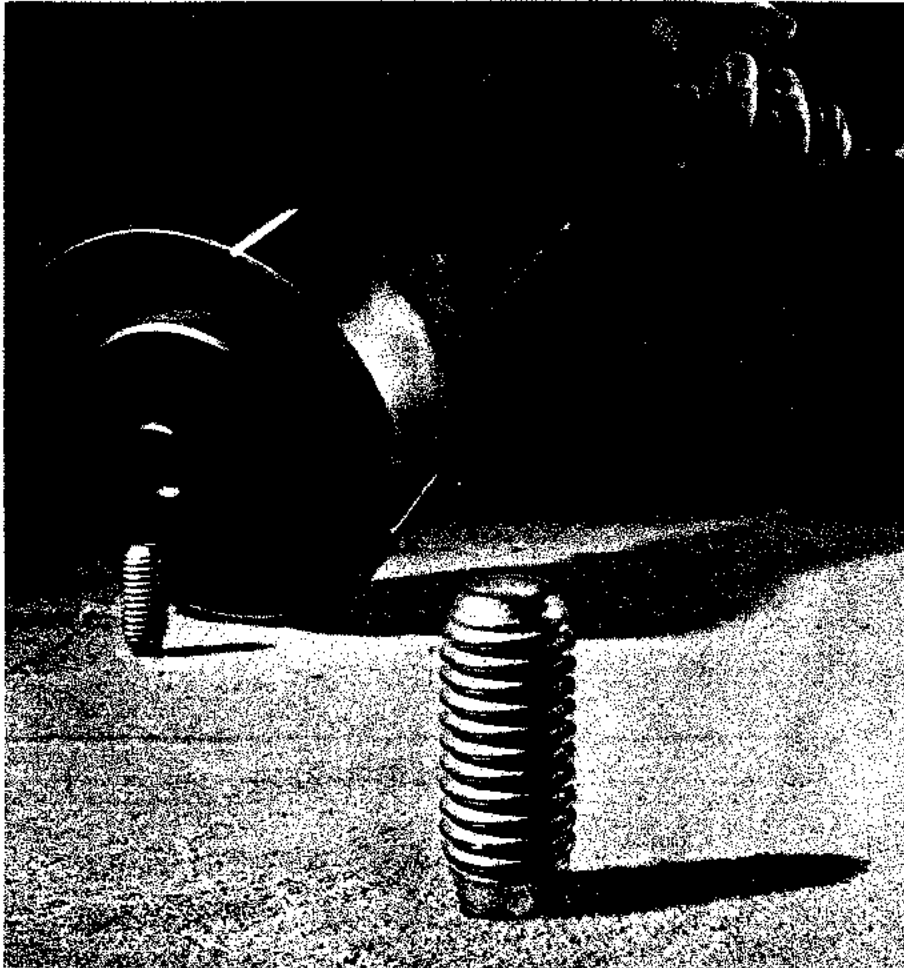
SUNDO TILE

京畿道 廣州郡 西部面 草二里212
서울特別市 中区 乙支路2街 148
TEL. ②⑥ 1565・2534 ⑤⑤ 0764・1790

HILTI

安全建設用 打釘工具

HILTI



* 1. 주요 용도 (건축, 조선, 제강용)

- 건축 토목공사
- 전기 설비 공사
- 배선 배관 공사
- 전철 철도 공사
- 터널 공사
- 조선공사
- 간판, 장식공사
- 냉난방 공사
- 기계 기구류 부착 공사
- 철골 공사
- ROOFING, SIDING, DECKING

* 2. 특 징

- 최대의 안전성
- 시공 기간의 단축
- 시공의 간편, 신속, 확실
- 인건비의 절감
- 깨끗한 외관
- 강한 고착력

* 安全第一을 原則으로 하고있는 HILTI 는 世界에서 最初로 低速式 安全打釘原理 開發에 成功 여러 方面의 附屬作業에 從事하는 分으로 부터 絶對的인 信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네브國際勞動局(ILO) 後援의 HILTI 安全原理에 依한 打釘工具는 여하한 狀態에 있어서도 鋼鉄의 PIN을 安全하게 確實히 CONTROL 해 줍니다.

* 새로운 HILTI SYSTEM의 시공예



韓國總代理店

韓國火藥株式會社

本社: 서울特別市 中区 西小門洞12-1
TEL. 23-0381~9 · 直 22-6679

●營業所

釜山 Tel (43) 2066 · 全州 Tel (2) 3181
天安 Tel 3500 · 堤川 Tel 2044
星湖 Tel 300 · 黃池 Tel 410
店村 Tel 2314 ·

●대리점

서울: 삼성화약사 TEL (96) 1949
산성 HILTI TEL (68) 0290
인천: 대한화약사 TEL (2) 0750
대구: 아세아화약사 TEL (2) 0109
부산: 한광출포사 TEL (23) 1577

月刊「建築士」(通卷86号)

1976 4

目次

總	會		(2)
會	員	作	品
			(3)
月	間	協	會
		動	靜
			(14)
會	員	코	니
			俞景哲 (15)
會	員	動	靜
			(17)
消	防	法	改
		正	施
		行	令
			(26)
都	市	人	의
		特	性
		과	그
		發	展
		的	
			金真一 (61)
		模	型
		의	透
		導	
東	南	亞	視
		察	團
		紀	行
		(2)	
			朴榮大 (64)
海	外	作	品
			(71)
建	築	設	計
		事	務
		所	의
		經	營
		組	織
		實	態
		에	
		對	한
		調	查
		研	究
			李暎會 (82)
建	築	許	可
		統	計
			建 設 部 (89)

委員	長員	金金	斗仁	燮錫
委		金	眞鉉	一植
		辛俞	景道	哲根
		尹李	文鏞	輔燮
		韓		

表紙說明 韓國木造建築架構變遷分類圖表

電話・73-9491～2〈非売品〉

庶政刷新全國促進大會 및 1976年度 제 1회 臨時總會

지난 3月26日 午前 10時 庶政刷新全國促進大會 및 1976年度 제 1회 臨時總會를 市内 엠버서더호텔大會議室에서 全國各市道支部代議員 182名이 參席한 가운데 개최, 먼저 政府가 強力히 추진하고 있는 庶政刷新 施策에 발마추어 促進大會에서 다음 3個項의 決議文을 채택

促進大會가 있는 직후 江原道支部 李相哲 代議員의 緊急動議로 새마을 돕기 誠金 募金案이 滿場一致로 채택 現國家施策에 적극호응하고 있음을 다시한번다졌다.

庶政刷新促進大會에 이어 75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의 決算案과 76年度 第1回 追加更正予算을 通過시켰고 77年度부터의 本協會 統合予算의 編成을 위한 現行定款 및 關係規程을 通過 시키고 任員補選에서 金斗燮, 鄭孝煥 兩氏를 理事로 選任하였다.

李圭福 會長은 開會辭를 통해

우리는 國民總和에 의한 國家安保態勢確立이 그어느 때 보다도 切實하게 要請되는 時點에 놓여 있음을強調하며 政府가 추진하고 있는 庶政刷新에 우리 會員들은 앞장서서 率先수범하여야 하겠으며 우리에게 負荷된 사명의 完遂와 造形創作인 建築設計作品 活動을 통한 技術의 向上으로 새로운 民族文化 창달과 우리의 權益을 確保 하자고 호소하였다.

決議文

1. 우리는 政府의 庶政刷新施策에 호응하여 모든 不条理 척결에 앞장선다.
2. 우리는 庶政刷新에 관한 建設部長官 및 會長의 지시 사항을 철저히 준수이행하여 所期의 成果를 거두도록 最善을 다한다.
3. 우리는 우리의 業務와 關聯된 주변의 淨化運動을 自律적으로 果敢히 展開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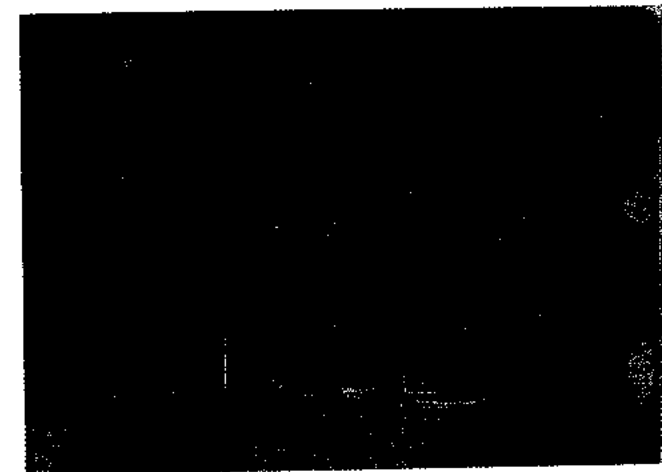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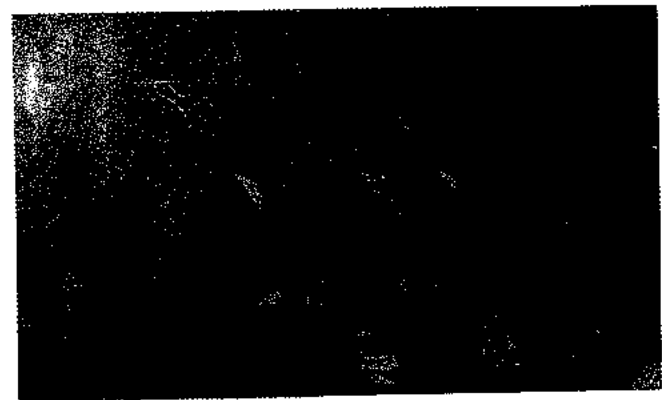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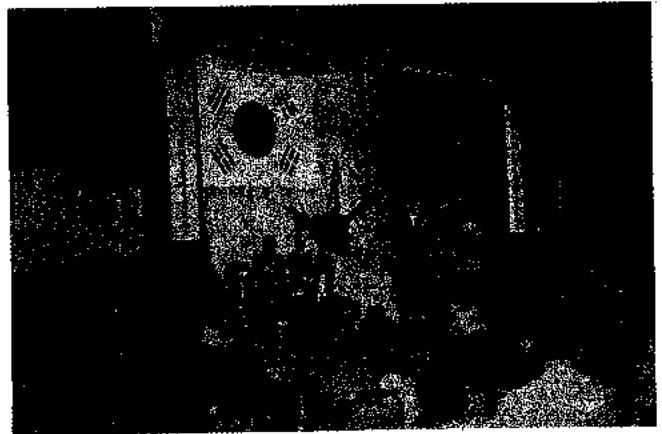
사진설명 ▷

來賓으로 參席한 歷代會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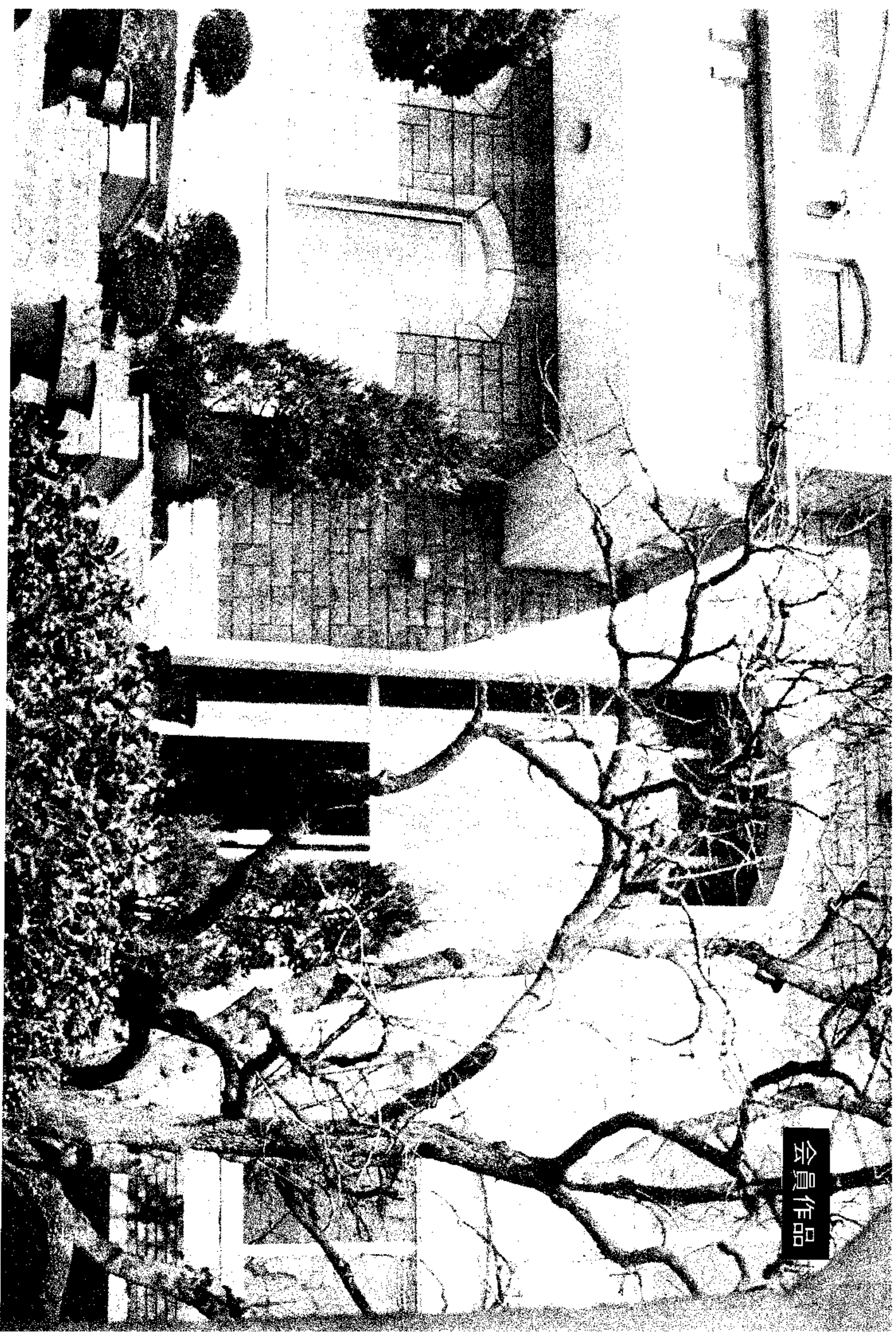
李圭福(現) 姜奉辰(5代) 張起仁(2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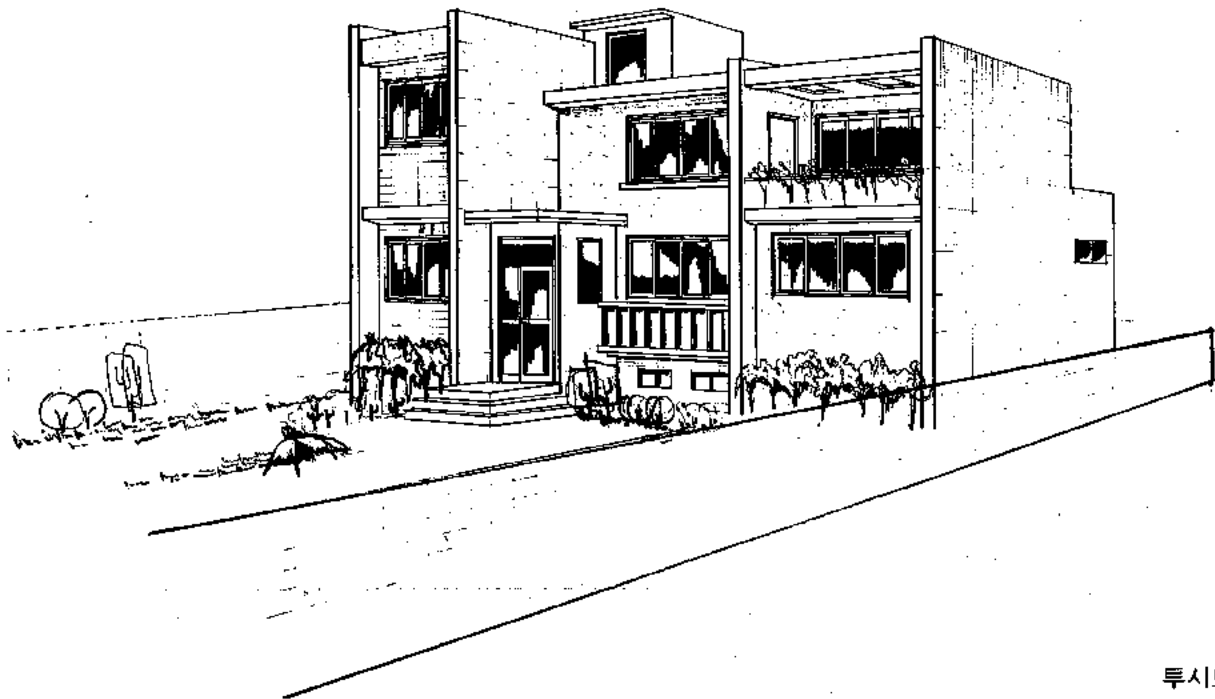
開會辭를 하는 李圭福 會長

공로패를 받는 강봉진 전회장



会員作品





투시도

조씨주택

설 계 : 박 성 규 (합성건축기술공사)

설계담당 : 조 남 주

위 치 : 서울성동구중곡동

대지면적 : 297M²

1 층 : 98.44M²

2 층 : 58.05M²

지 하 실 : 25.92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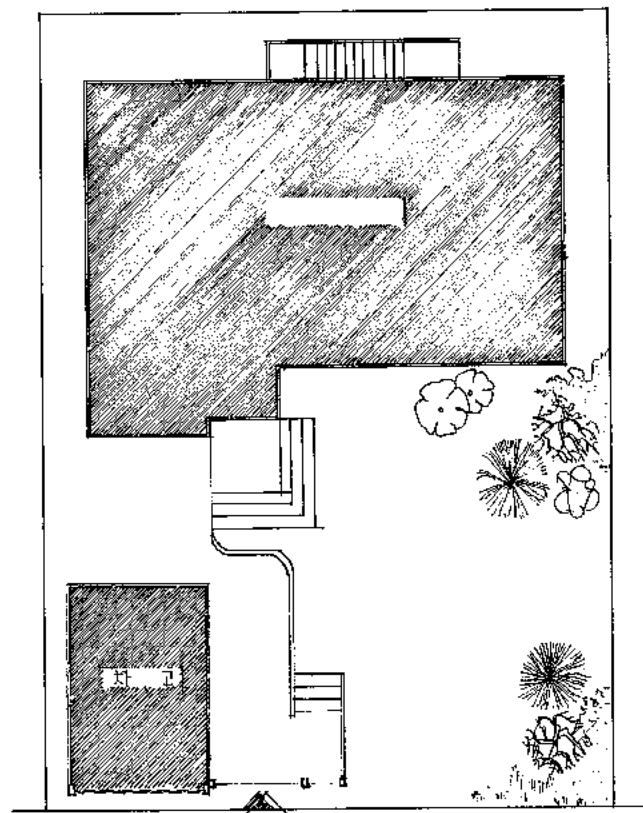
차 고 : 17.34M²

연 면 적 : 199.76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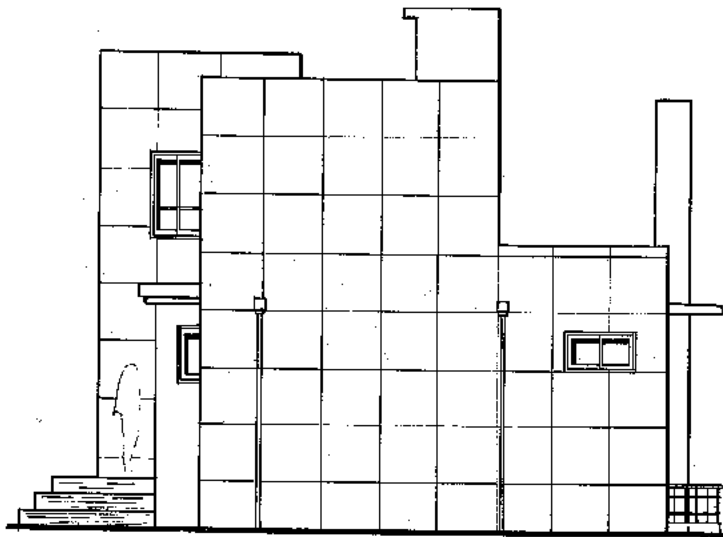
구 조 : 벽돌조 슬라브 지붕 오일

보일러 및 연탄 보일러 온

수난방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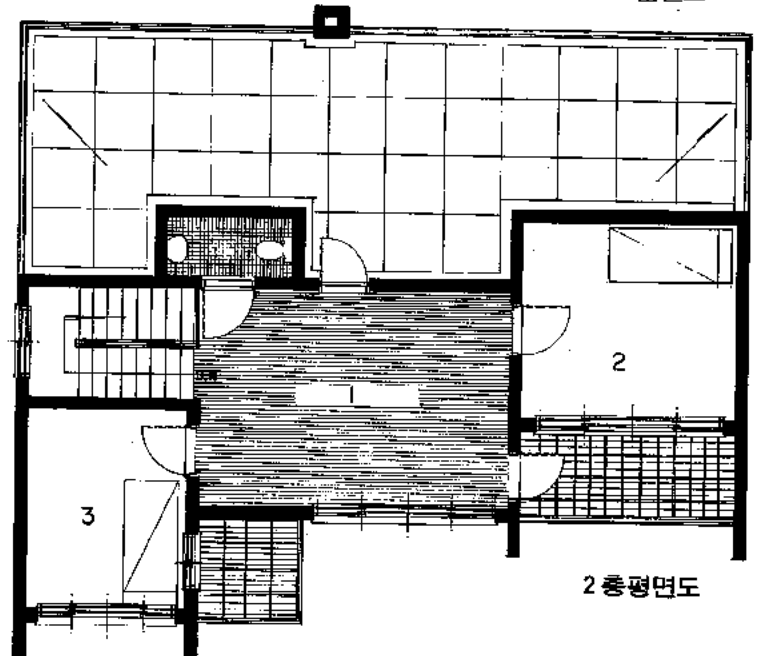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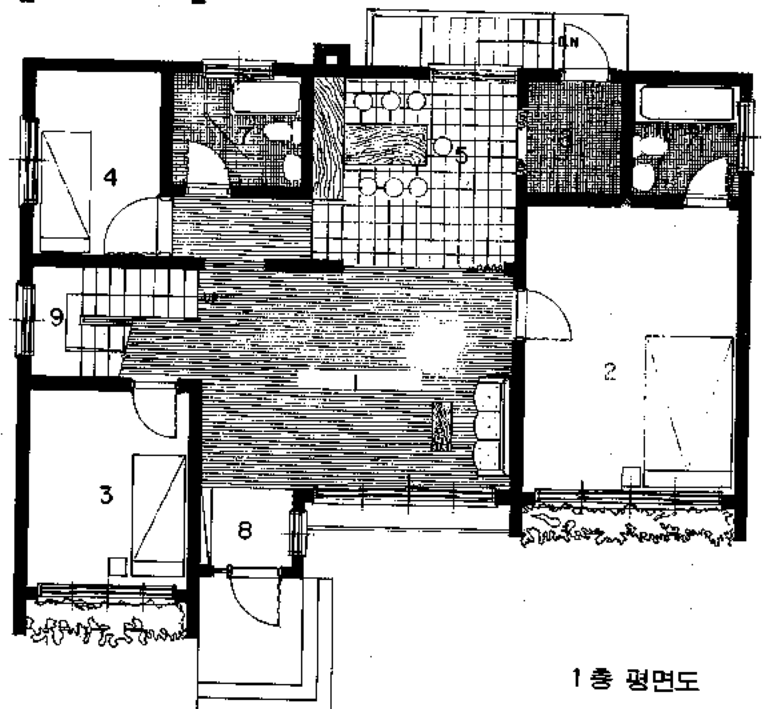
입면도

1. 가족실
2. 침실
3. 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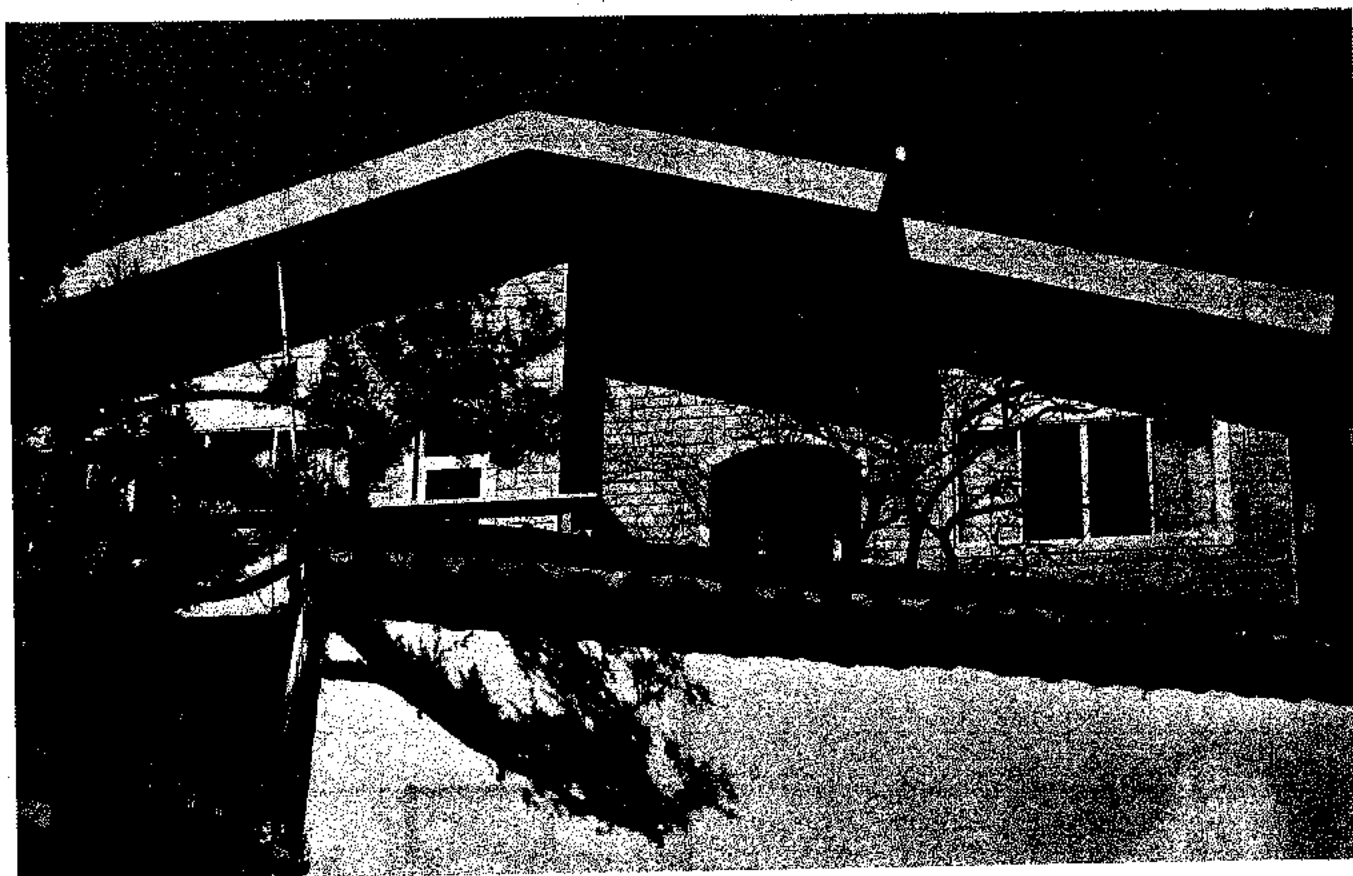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 응접실
2. 주인침실
3. 침실
4. 침실
5. 식당
6. 부엌
7. 욕실
8. 현관
9. 계단



1층 평면도



延禧洞. L 氏宅

設計：洪 淳 寅 (大宇建築研究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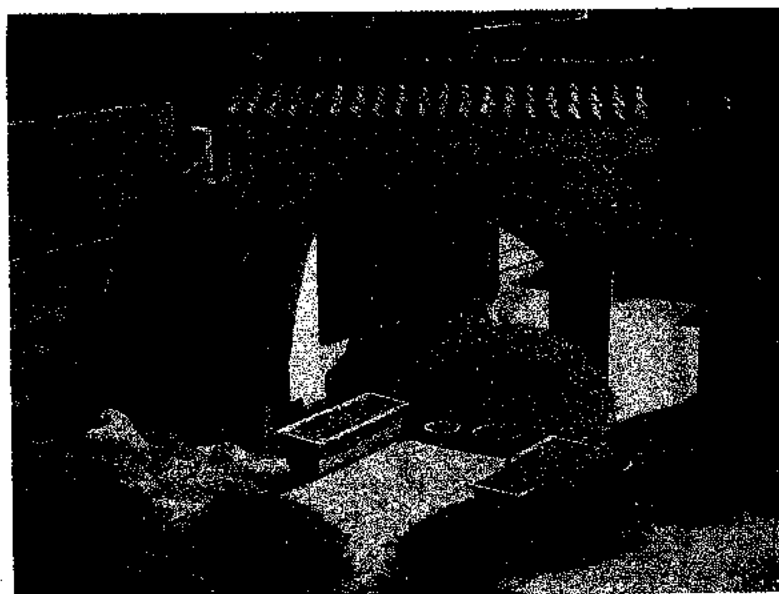
位 置：서울西大門區延禧洞
構 造：벽돌조
堡 地 面 積：250坪
建築延面積：374m² (113坪)

地下層 60m² (18坪)

地上1層 164m² (50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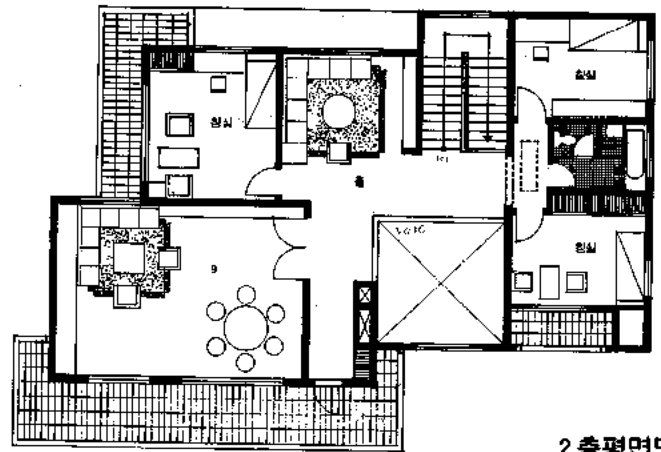
地上2層 150m² (45坪)

外 裝：회갈색折石半割
設 備：溫水暖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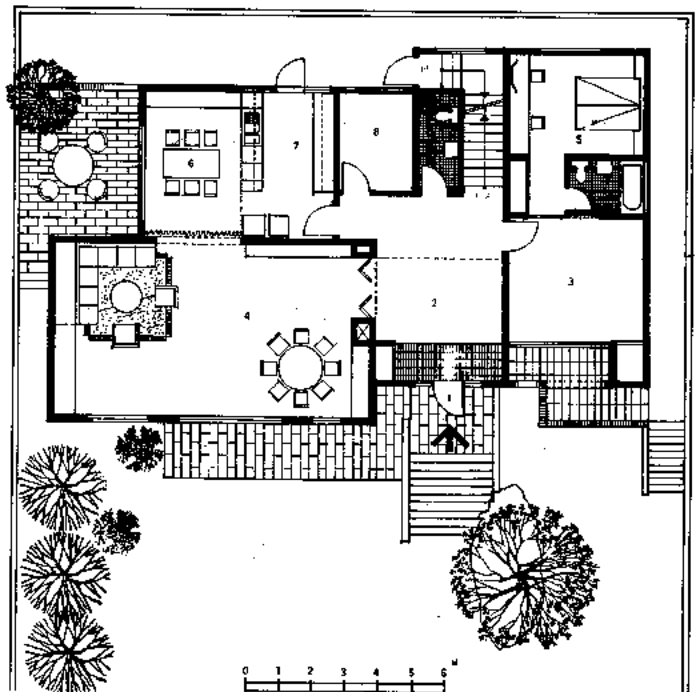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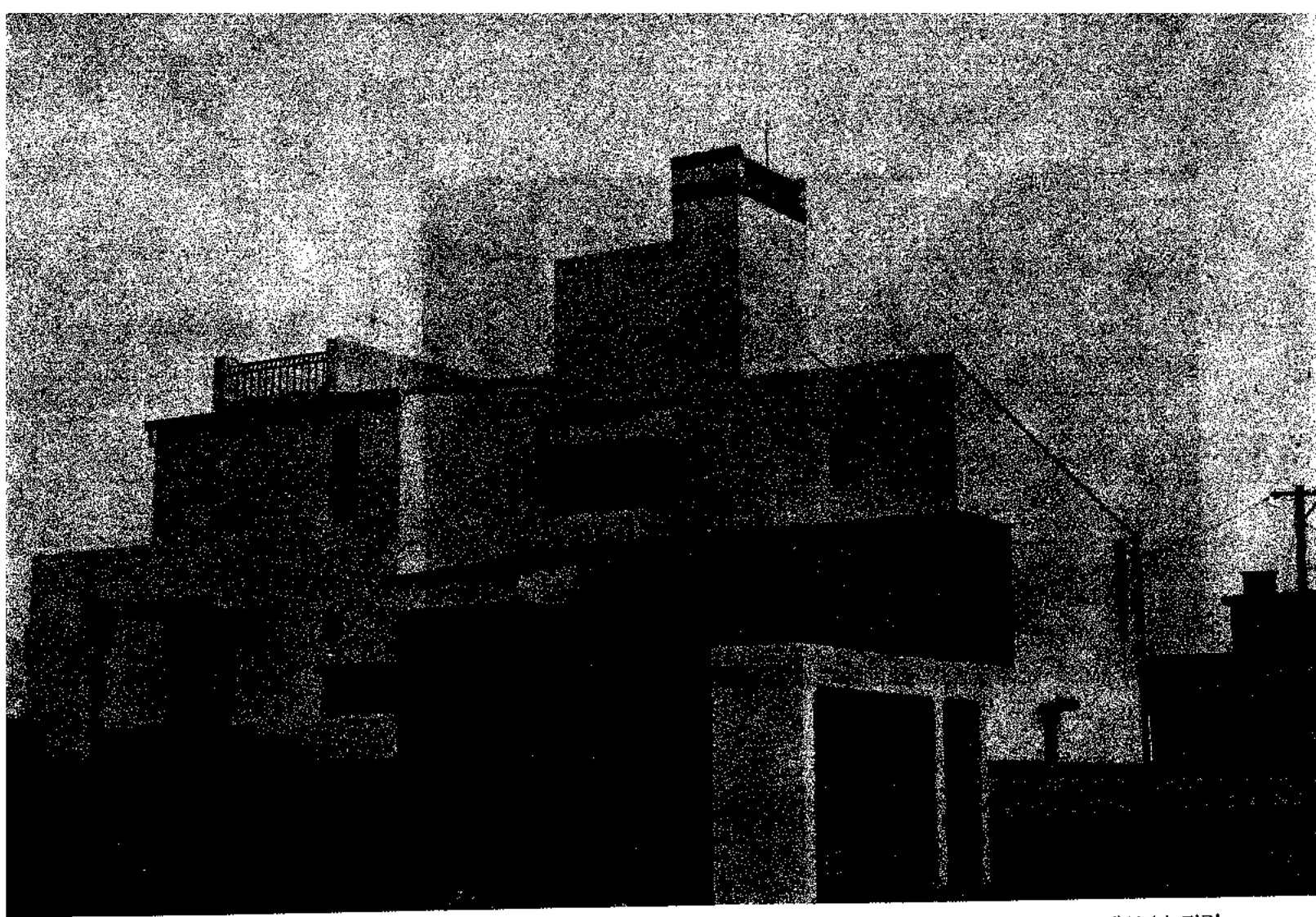
- 1 현관
- 2 홀
- 3 주인용접실
- 4 등접실
- 5 주인침실
- 6 식탁방
- 7 부식방
- 8 식모방
- 9 가옥



2층평면도



1층평면도



북측 길쪽에서 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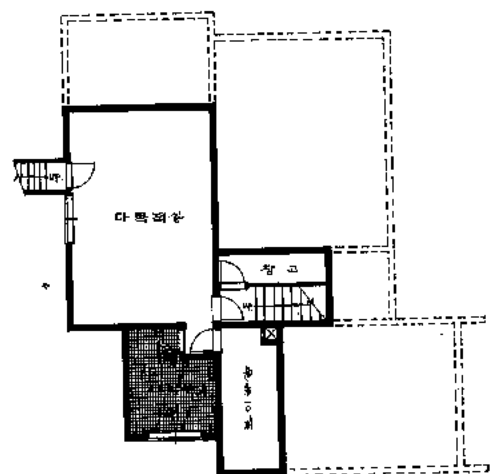
배 사장댁

설 계 : 조구현 조구현 건축설계 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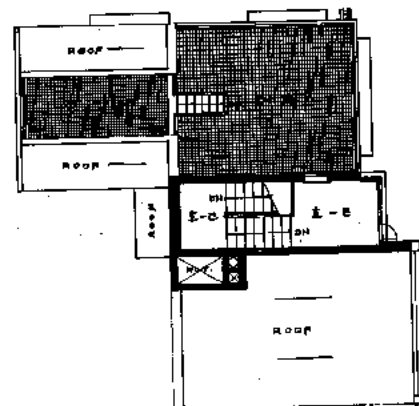
전기-양전사 (이경식)
위생, 난방-김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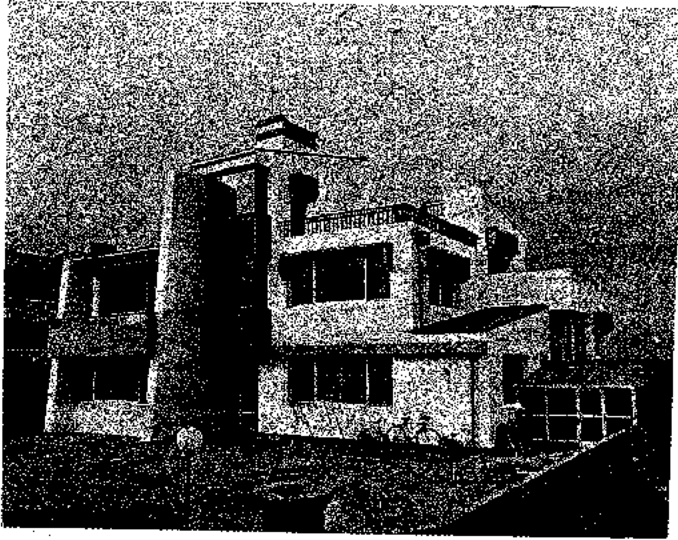
북측 현관 입구쪽에서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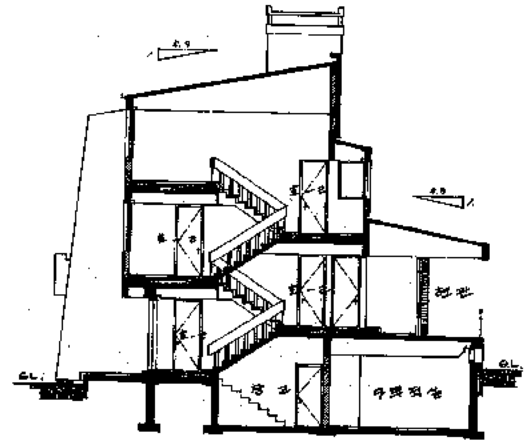
지층평면도



옥탑층평면도



남측 정원쪽에서 봄



단면도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산85-35
면 적 : 매지-100평
건물-1층-45평
2층-30평
옥탑-4.5평
지중-16.5평 제96평

공사기간 : 1975년 8월10일부터 12월20일까지

가족구성 : 부부 (2인)

아들 (2인)

딸 (1인) 계 5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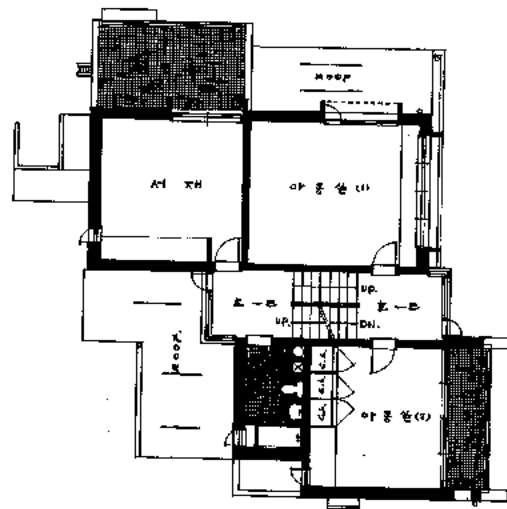
마 감 : 바닥-파넬리-링기 아스타일, 장판지, 타일 등
벽 -비닐벽지, 타일, 비단

천정-비닐벽지, 미충후로팅, 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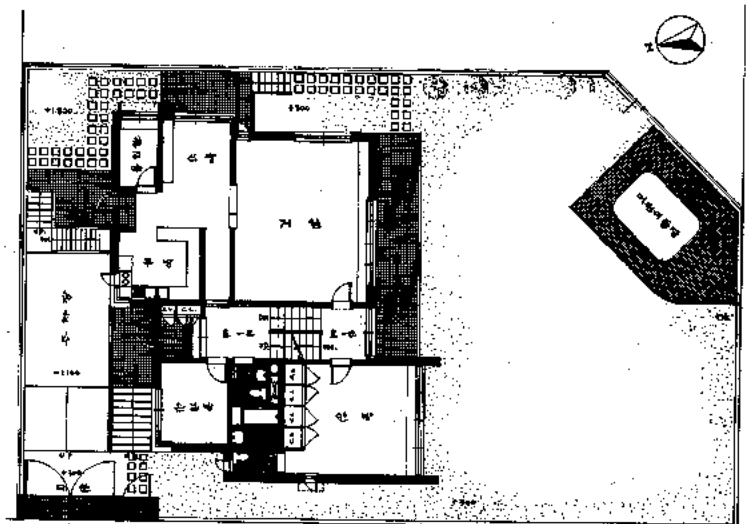
지붕-스라브위개와, 스라브위타일

외벽-돌타일 예옥시뽀칠

설계요점 : 본대지가 강변로의 남쪽에처위에 위치하여 동, 남, 북 3방향의전망. 모-두가 훌륭한것을 감안 평면을 남과 북으로 2등분 하여 중위층구조로 처리함으로서 채광, 환기, 전망 등의 자연 조건을 각방공히 혜택받게함은 물론 식당, 부엌, 현관, 객실등을 기준층으로 보고 지실및 안방층에서나 아동실에서 기준층까지의 높이차를 반층차로 좁혀 동선을 최대한 단축하였다. 또 계단실은 평면을 동, 서로 2등분하는 위치에놓아 공유면적을 최대한 단축되도록 하였다.



2층평면도



1층평면도



전경 투시도

한남동 P 씨댁

설계개요:

실 계: 방규상

위 치: 한남동

가 족: ① 주인부부 ② 자녀 3명 ③ 가정부

대지크기: 322.8M²

구 조: 연와조, 스테트 기와엮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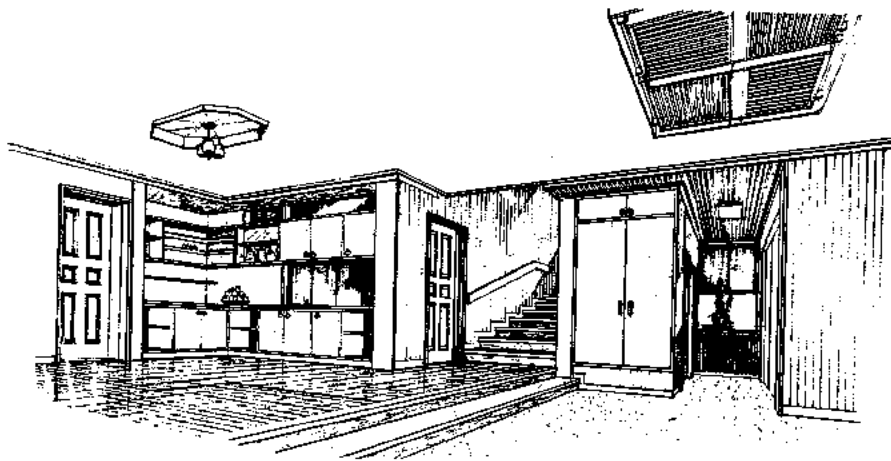
건물면적: 지하층: 7.83M²

1 층: 111.25M²

2 층: 81.885M²

전 면 적: 200.965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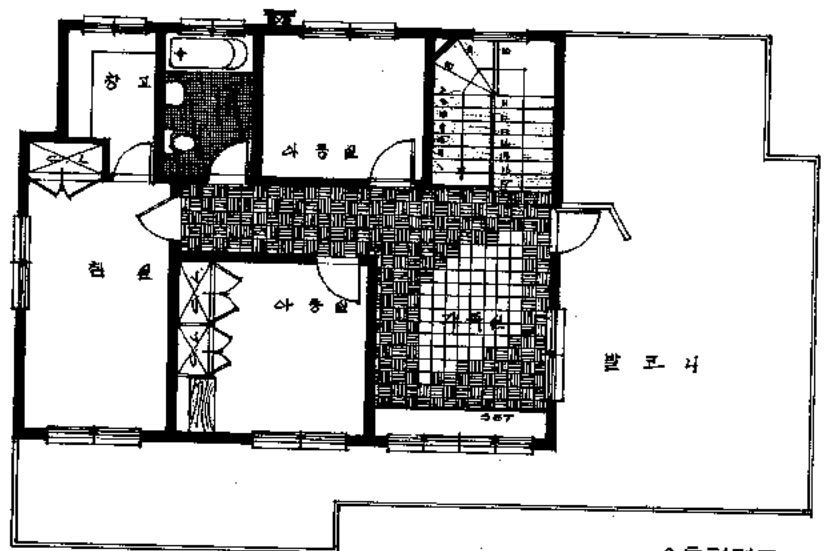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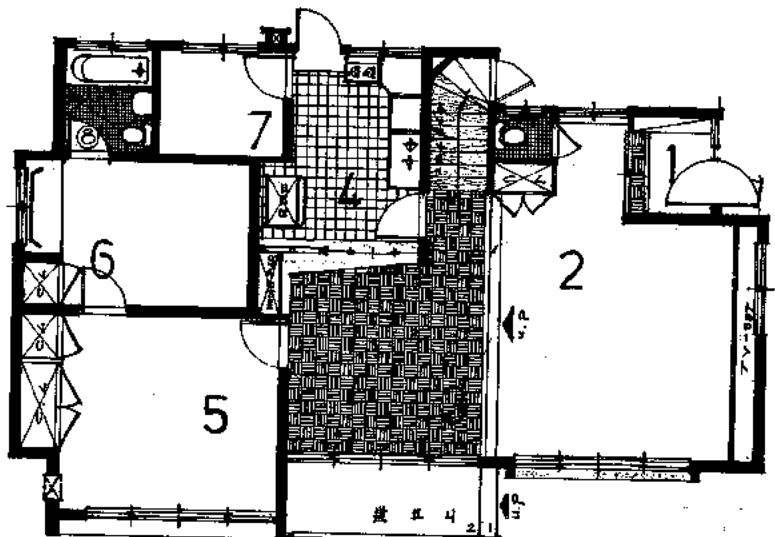
거실에서 식당을 바라볼

※복잡한 생활권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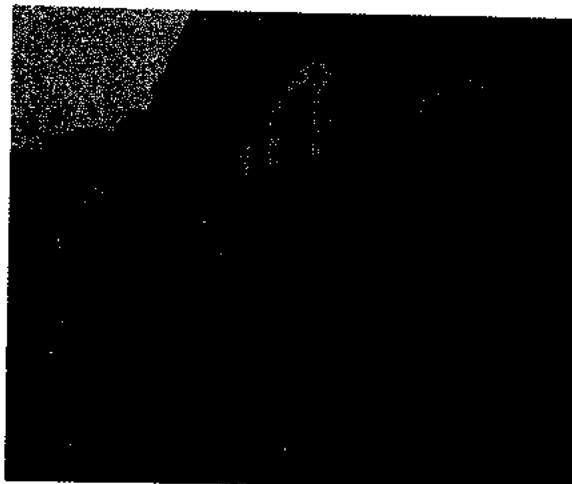
하루를 가장 편안하게 휴식할수 있는 생활공간인 My Home을 주인의 감각과 취향에 맞추어 비교적 좋은 대지와 환경에 위치하였고 가족 각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고 공동가족생활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1층은 부부침실과 개방적인 응접실, 부엌과 대화할 수 있는 카운터식 식당 그리고 2층은 점점 자라나는 자녀들의 개성에 맞추어 조용한 분위기가 독립성을 주었다.



2층평면도



1층평면도



설 계: 나 영균 (동산건축연구소)

위 치: 성동구 신사동 산43~52

대지면적: 97.3평 (321.6n²)

건축면적: 일층 108,400n²

이층 61,115n²

지층 39,270n²

연 면 적: 208,825n²

구 조: 조적조

외부마감 정면: 뮤르 코트 및 자연석

기타: 유액 오지 벽돌

난방: 경유 보일러

총 공사비: 약 12,000,000

착공연월일 75. 6.

준공연월일 75.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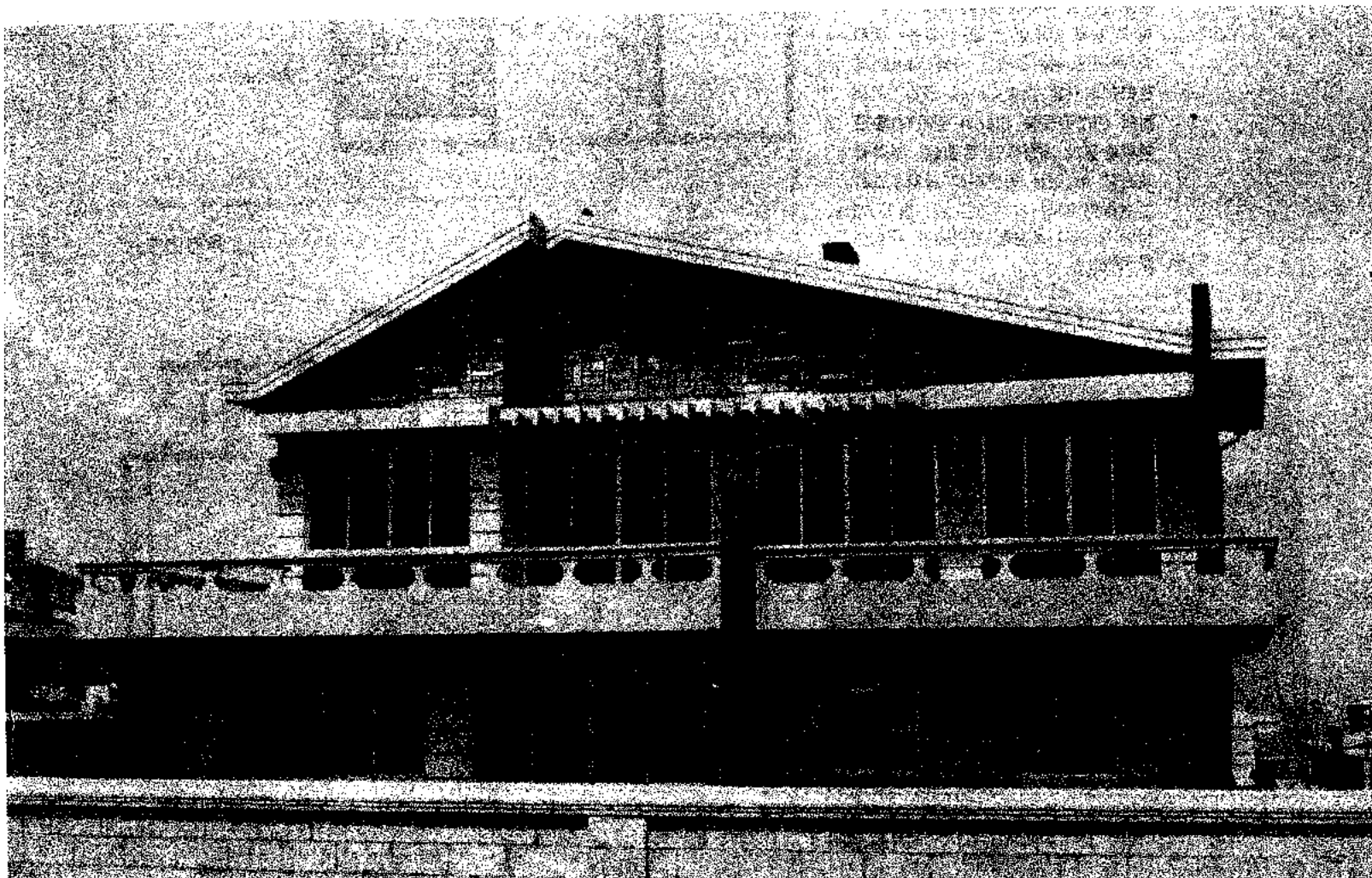
~실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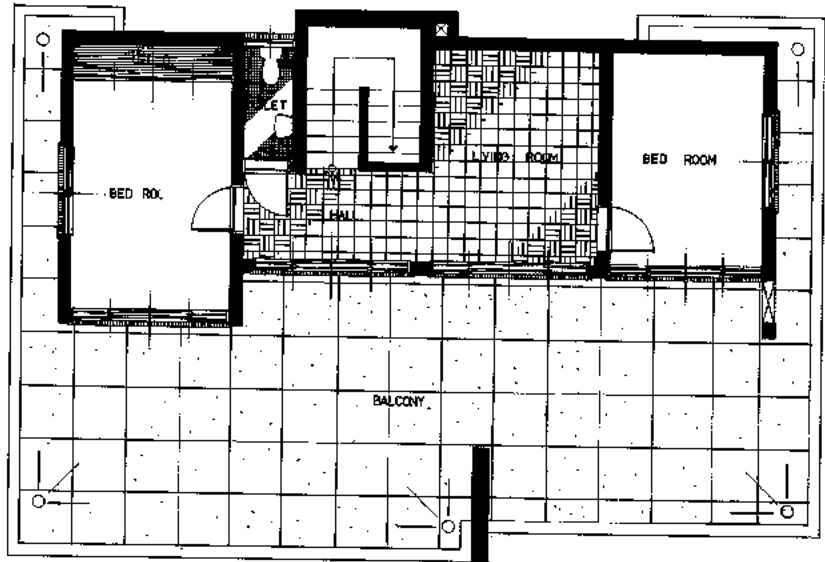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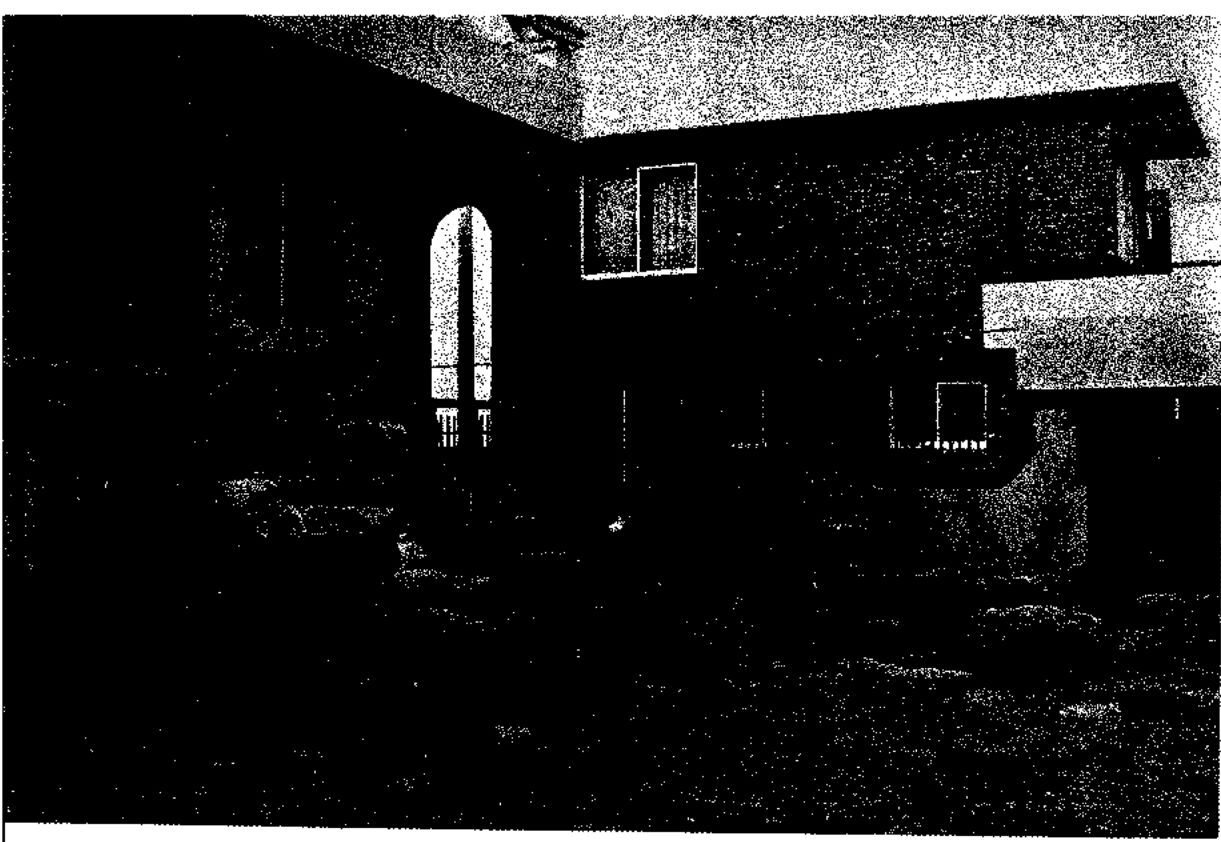
○대지 조건이 평지와 달라 경사지로써
대문과 현관 사이에 정원석을 깔아 정
면의 넓은 정원과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했다.

○현관과 1층 거실사이에 벽을 쌓아 손
님의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했으며 또
한 2층에 주인 거실을 따로 부어 주
인과 손님의 공간을 분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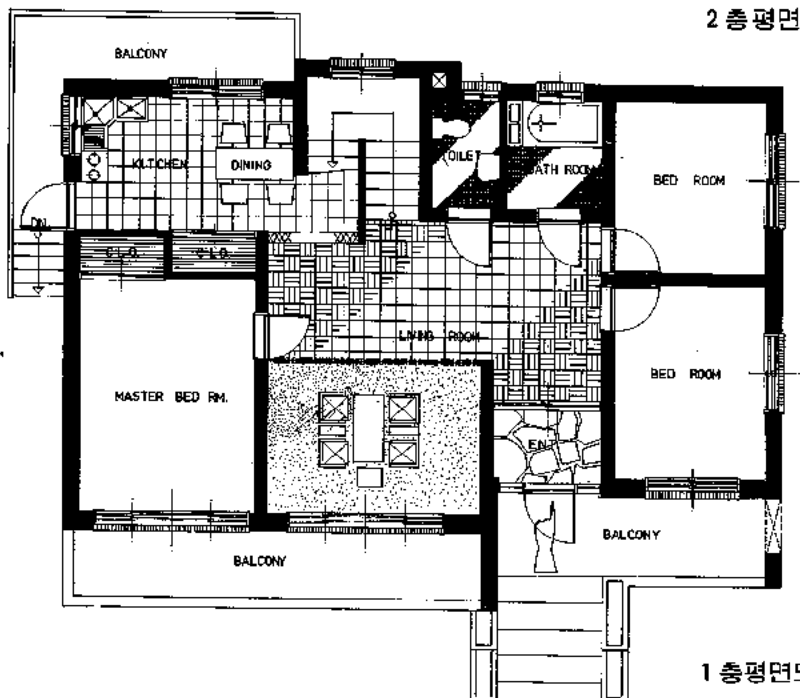
○거실과 식당 부엌의 사이를 접는문으
로 처리하여 정면의 콤팩트인 정원과 조
화를 이루려고 노력했다.

○외관은 백색 뮤르코트가 주가되어 신
선한 맛을 풍기게 하였으며 단조로움
을 오지벽돌과 자연석 붙임으로 해소
하려고 노력했다.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제 6 회(임시) 이사회

일 시: 1976. 3. 25 (목) 16:00
 장 소: 본회의실
 출석의원: 회 장 이 규 복
 총무이사 박 성 규
 이 사 성 일 영·김 진 성
 참석의원: 감 사 박 래 운
 서울시지부장 이 봉 로

주요결정사항

- 가. 제 1 회 임시 총회 회순 및 서정채선 촉진대회 회순 확정
- 나. 이홍수이사 사표 총회에 부의기로 결정
- 다. 이춘상 회원이 질의한 설계 도서를 2종으로 확정

제 7 회(정기) 이사회

일 시: 1976. 4. 7 (수) 16:00
 장 소: 본회 회의실
 출석의원: 회 장 이 규 복
 총무이사 박 성 규
 이 사 성 일 영·김 진 성
 김 두 섭·정 효 환
 감 사 윤 회 준·박 래 운
 서울시지부장 이 봉 로

부의안건:

- 가. 5개년 계획 수립 및 통합 예산 지침작성 소위원회 구성의 건
- 나. 건축법 및 동 시행령 책자 발간의 건
- 다.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
- 라. 총회 요망 사항 처리의 건
 - 1) 타지부 회원에 대한 실적회비 징수와 건
 - 2) 사무국장 퇴직금에 관한 건
- 마. 건축사 업무의 보수기준중 표준 설계도의 정의에 관한 건
- 바. 홍보 선전 사업에 관한 건
- 사. 직원 (3명) 채용의 건
- 아. 기타사항

제 3 회 편찬 위원회

일 시: 1976. 3. 18 (목) 16:00
 장 소: 본회의실
 출 석: 위원장 이 홍 수
 위 원 김 진 일
 위 원 이 문 보
 위 원 윤 도 군
 위 원 유 경 철

- 부의안건: 1. 2월호 합평
 2. 3월호 편집 계획안 검토
 3. 기타사항

會 員 講 習 會 改正建築法 및 同施行令

다음과 같은 日程을 정하여 講習會를 各支部 單位로 開催하오니 會員들의 많은 參席을 바랍니다.
 參席範圍는 正會員·補助員 및 建築職關係公務員)

日程

- 1976. 5월 1일 (토)
 부산-부산동아대학강당(부산, 경북, 경남, 제주)
- 1976. 5월 2일 (일)
 서울-서울한양대학강당(서울, 경기, 강원)
- 1976. 5월 8일 (토)
 광주-광주건축사회관(전남, 전북)
- 1976. 5월 9일 (일)
 대전-대전시청회의실(충남, 충북)

두 가지 問題

俞 景 哲

三·六建築研究所 代表

1. 建 築 狀 況

어떤 사람은 오늘의 建築現狀을 가리켜 混沌期 또는 過度期 建築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어떤이는 現代라는 時代를 文化形態가 정립되지 않은 未同化 時期로도 잡고 있다.

이러한 말들은 대체로 建築뿐만 아니라 모든 社會現狀이 옛날처럼 一目瞭然하지도 않으며, 그 現狀이 종래와 같은 方法으로 잘 규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종래 政治, 經濟, 社會, 藝術 등 제분야에 걸쳐 하나의 一般現象을 당 時代 여건과 당 시대 행위자 특질의 함수관계로 규명하여 왔으나 그 시대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行為者의 특질마저 천차만별한 現今에서는 하나의 現象만이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옛날처럼, 특정 양식이 成立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國家간의 文物 교류가 빈번해지는 데도 원인이 있겠으며, 이 방면에 중사하는 행위자의 數的 증가와 이들의 創意力이 날로 高揚되어 가는 데도 큰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대로 일괄되지 않은 建築現象이 오래 지속되어도 좋겠으나, 날로 증가되는 行為者, 즉 建築人의 증가와 그들의 創意力은 왕왕 社會와 동떨어진 결과를 빚어내게 되는데, 이른바 視覺公害라는 말로 표현되어도 좋을 듯하다.

創意力, 創造, 創作 등의 어휘는 무엇을 말함인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이 만들어 질 수는 없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創作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는 이미 저질러진 무수한 建築物 遺産위에서 創作活動을 하는 셈인데, 이 活動은 순수한 모방과 진정한

意味의 創作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셈이라 풀이가 되겠다. 어떤 사람은 模倣에 가까운 쪽에서 作家수업을 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진정한 意味의 創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建築을 藝術活動의 일환으로 보고자 할 때 創造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後者의 값어치는 배가 되는 셈이나, 建築이라는 創造行爲를 지배하는 크나큰 大義命題인 社會性내지 普遍性을 전제로 할 때 생겨나는 문제들은 제거하기 어려운 것이다.

비근한 예로, 몇해전 光化門 승전비각 부근 건물이 물의를 빚은 바 있으며, 70年代 초반을 주름잡는 각종 지붕형태를 볼 때 그 수많은 지붕형태의 차이 만큼, 많은 作家들이 개개인의 創意力을 발휘한 셈인데 創意力과 變造와는 어떤 선에서 구분이 되어야 할지 아쉬운 감이 있다.

建築士는 순수한 創意力을 구사하기에 앞서 수천년에 걸쳐 이루어진 美의 원리나 디자인 원리를 일단은 존중해야 하며, 이러한 연후라면 創意力은 발전적으로 高揚되지 않을까 사료되는 바이다.

지붕형태의 변조를 두고 자신의 創意力을 저울질 하려는 간지러운 作業과 비록 無學無知할 망정 素朴 誠實한 眼目에서 어느 시골 초가지붕이나 스텝 지붕을 만들어 내는 匠人의 作業은 어떻게 비교해야 될 것인가.

創造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때로는 기존 秩序의 존중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근래 당국이 제정한 지붕형태 규제안은 바로 그러한 현상에 대한 고충을 말함이지만, 創作을 바탕으로 하는 建築士에 있어서는 造形上的 制限을 받게 되어 매우 불 유쾌한 일이며 부끄러운 노릇이라 할 것이다.

옛부터 建築에 가해 지는 각종 法的規制는 많았다. 또한 建築物이 社會의 물의를 자아 낸 일도 허다하다. 바로 이러한 일들은 建築이 다른 장르의 藝術과는 달리 社會에 깊숙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때문이며, 作家 자신의 藝術世界의 具現이나, 순수한 創意力의 구사만으로 존립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建築士 스스로의 겸허한 자세는 지금의 이러한 狀況을 넘어설 수 있으며, 高揚된 創意力을 發展의으로 구사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되는 바이다.

2. 室內裝飾

近來 建築에 있어서 室內裝飾이라는 問題가 두드러지게 浮刻되고 있음을 주지해 오는 바이다. 우리의 生活 속에서 室內裝飾이라는 다분히 裝飾의인 면이 유독 지목되는 데는 그 만큼 生活이 經濟的 安定을 얻고 있으며 居住만을 위한 室內에서 裝飾이 부가된 展示의空間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暗示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傾向에 힘입어 室內裝飾業이라는 職種이 雨後竹筍格으로 마구 亂立되어 감에, 더러는 建築과 室內裝飾이 獨立되어 진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실제 건축과정에서도 양자가 分離되어 施工되어지고 있음이 散見되는 터이다. 그러나 양자가 分離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가 결코 看過되어 질 수 없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는 것인데, 대체로 建築의 本質의인 면이 무시되어 지거나, 그중의 노력이 소모되어 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問題에 앞서 室內裝飾이라는 것은 그 한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도 判別되어야 하겠으나 文字대로 辭典的 풀이를 하자면 그 범위는 대체로 骨造가 끝난 室内部에서 이루어 지는 裝飾行爲, 즉 내부 마감재료, 家具, 조명, 커튼, 카펫 벽장식등에 대체적으로 한정되어짐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가 모두 建築行爲에 부수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點에 想到하여 볼 때, 室內裝飾행위는 獨立의인 것이 아니며, 室內形成이라는 建築의 大義命題아래 풀려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하나의 建築物을 위해서 두가지 이상의 디자인 原理가 적용될 수도 있겠으나, 그 原理조차 뜬 구름처럼 荒雜한感이 있고, 적용시키는 主体가 들일 경우 혼잡이 일어나고, 經濟的 손실이 디자인 效果이상으로 클 수 있는 것이므로 注意가 필요한 것이다.

세상에 建築다운 建築物이 적다해서인지 건축의 본질적인 문제까지 무시되어 지고 술한 建築物이 裝飾業者의 손에 改造되어 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비근한 例로, 지은 지 1년 안팎의 집이 室內裝飾이 바뀐다면 建築空間을 이루는 기둥, 보, 耐力壁등 구조체가 손상되거나, 室內裝飾때문에 불합리한 구조체가 생기는 경우를 보게 되는 데 건축을 설계한 사람의 처지에서는 섭섭한 감을 금하기 어려운 것이다.

歷史上의 사실을 들추거나 누구누구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建築의 本質은 空間形成에 있으며 空間을 形成하는 構造技術을 넘어서 실현된 空間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建築設計過程에서 이미 작성된 構造體에대한 하자를 만들어 내는 것은 자칫 室內裝飾 뿐만 아니라 室內空間을 이루어 주는 건축물 자체의 存在마저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방이 좁다 하여 耐力壁을 헐어 室을 넓히거나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의 건물속에 韓屋形態를 재현하기 위해 대들보를 매달고 서까래를 올려 슬라브및 壁體에 무리한 하중을 주거나 室內 분위기를 田園의으로 꾸민다는 미명하에 흙더미와 바위덩어리를 들어다 갖고 놓는 것은 設計者의 意圖를 어떻게 대변하려고하는 소행인지

그들은 그들이 이루려고 하는 空間이 어떻게해서 생겨나는지를 생각해야 되며, 구조의 不合理性·構造上 虛構가 建築意匠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좋은 디자인은 여러모의 合理性과 假飾 없는 순수함과 성실성에서 이루어 짐을 銘心해야 되지 않을까?

더우기 과감하게도 内部裝飾의 연장이라는 美名아래 建物마다 얼룩강아지를 만들어 가며 自己만을 내세우는 요즈음의 作風은 廣告公害이상으로 社會問題를 야기 시키며, 이어지는 後進들에게 부끄럽기까지 하다.

한동안 造景家가 아닌 정원사인지는 職種이 建築을 제쳐놓고 標流하다 그네들의 限界點과 建築人과의 協同을 다시 認識한 후에 비로소 定石의 뿌리를 내리듯이 새로운 建物の 設計時에만 美觀地區 심의위원회의 사슬이 퍼런 난도질에만 期待할 것이 아니라, 겨우 햇빛을 본 건물이나 既存建物들이 간혹 不誠實한 사람들의 作風으로 대중에 대해 怪物로 둔갑하는 요즈음 우리 建築人들의 좀더 겸허한 自制와 協同이 要望되는 때이다.

會員勸靜

서울特別市支部 新入會員



本籍 서울
姓名 정 소
名 稱 신동건축
所在地 중로구운니동98-78
電話 25-1510
免許番号 1-1505
登録番号 700
年月日 76. 3. 5



本籍 경북
姓名 金 在 敏
名 稱 일원건축설계사무소
所在地 중로구신문로2가89-2
(외어선빌딩 605호)
電話 72-0911
免許番号 1-1491
登録番号 703
年月日 76. 3. 22



本籍 충남
姓名 金 祥 準
名 稱 대화건축
所在地 강남구논현동 158-1
(대성빌딩 2층)
電話 57-7827
免許番号 2-953
登録番号 435
年月日



本籍 경북
姓名 羅 殿 澤
名 稱 세원건축연구소
所在地 중로구신문로1가171-5
(세종빌딩 301호)
電話 75-0667
免許番号 237
登録番号 702
年月日 76. 3. 13



本籍 경북
姓名 李 鍾 七
名 稱 정주건축연구소
所在地 중구을지로6가18-97
(추원빌딩 305)
電話 29-9863
免許番号 1475
登録番号 701
年月日 76. 3. 11



本籍 서울
姓名 金 培 格
名 稱 대림건축설계사무소
所在地 성동구성수동2가299-216
電話 55-4505
免許番号 2-1748
登録番号 430
年月日 76. 2. 10



本籍 서울
姓名 김 준 명
名 稱 대우건축
所在地 관악구봉천동 419-3
電話 87-0077
免許番号 2-1547
登録番号 439
年月日



本籍 충북
姓名 郭 殿 榮
名 稱 대진사-건축연구소
所在地 중구무교동11번지
電話 22-0253
免許番号 1-1508
登録番号 693
年月日 76. 1.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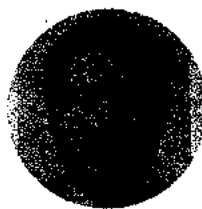


本籍 서울
姓名 김 관 옥
名 稱 대호건축연구소
所在地 용산구이촌동 301-135
민영아파트F동 304
電話 42-7578
免許番号 1-1413
登録番号 605
年月日 76. 3. 10



本籍 서울
姓名 李 信
名 稱 상신건축설계사무소
所在地 서대문구용암동78-2
電話 39-5534
免許番号 1408
登録番号 438
年月日 76. 3. 13

서울特別市支部 新入會員



本 籍 서울
姓 名 洪 昇 毅
名 稱 삼미환경건축연구소
所 在 地 용산구동자동14-129
電 話 42-5538
免許番号 227
登録番号 706
年 月 日 76. 3. 30

忠清北道支部 新入會員



本 籍 서울
姓 名 尹 錫 範
名 稱 진석건축설계사무소
所 在 地 충북제산군증평읍교동46
電 話 514
免許番号 2-1631
登録番号 142
年 月 日

忠清南道支部 新入會員



本 籍 충 남
姓 名 송 원 응
名 稱 송원용건축설계사무소
所 在 地 대전시선화동277-2
電 話 3-1250
免許番号 2-1034
登録番号 제38호
年 月 日 76. 3. 4

釜山直轄市支部 新入會員



本 籍 부산시
姓 名 裴 基 壽
名 稱 신개발건축공사
所 在 地 부산시부산진구부전동469
電 話 3-5672
免許番号 1258
登録番号 252
年 月 日 76. 3. 19

全羅南道支部 新入會員



本 籍 부산시
姓 名 宋 奎 泰
名 稱 유성건축설계사
所 在 地 부산시부산진구부전동259-2
電 話 2-9626
免許番号 2-1502
登録番号
年 月 日



本 籍 전 남
姓 名 서 영 훈
名 稱 내외건축연구소
所 在 地 광주시동구계림동505-658
電 話 3-5421
免許番号 1-1481
登録番号 26호
年 月 日 76. 3. 4

江原道支部 新入會員



本 籍 강원도
姓 名 김 재 철
名 稱 삼우설계기술공사
所 在 地 강원도속초시중앙로478-34
電 話 2497
免許番号 2-1268
登録番号 속초2호
年 月 日 76. 3. 25



本 籍 전 남
姓 名 김 용 균
名 稱 삼성건축연구소
所 在 地 광주시동구계림동 505-108
電 話 4-3200
免許番号 2-1322
登録番号 38호
年 月 日 76. 3. 11

慶尚北道支部 | 新入會員



本 籍 京 北
姓 名 尹 斗 鉉
名 稱 아성건축사무소
所 在 地 대구시남구남산동684-39
電 話 4-2916
免許番号 1-762
登録番号 32호
年 月 日 76. 3. 20



本 籍 京 北
姓 名 金 泰 鳳
名 稱 환경건축사무소
所 在 地 대구시중구동문동16-2
電 話
免許番号 2-508
登録番号
年 月 日 76. 3. 27



本 籍 京 北
姓 名 河 在 浩
名 稱 아성건축설계사무소
所 在 地 대구시남구남산동684-39
電 話 4-2916
免許番号 2-474
登録番号 40호
年 月 日 76. 3. 20



本 籍 京 北
姓 名 閔 昌 基
名 稱 아성건축설계사무소
所 在 地 대구시남구남산동684-39
電 話 4-2916
免許番号 2-479
登録番号 56호
年 月 日 76. 3.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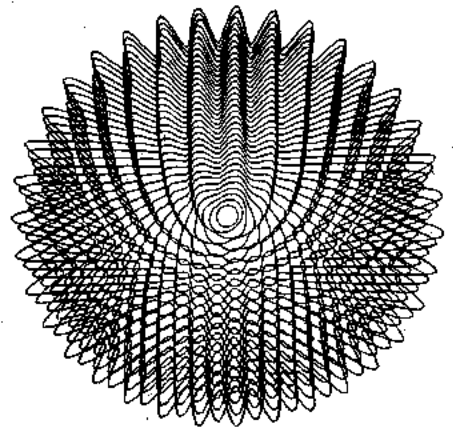
本 籍 京 北
姓 名 朴 泰 閔
名 稱 연합건축설계사무소
所 在 地 경북영주군하망4리326-6
電 話
免許番号 2-515
登録番号 1호
年 月 日 76. 3. 31



本 籍 京 北
姓 名 裴 基 鎭
名 稱 대우건축설계사무소
所 在 地 대구시중구삼덕동1가32-2
電 話
免許番号 2-1048
登録番号 74호
年 月 日 76. 3. 31

創 (祝) 刊

建築韓國
Vol. 1
學術 • 技術 • 芸術
THE KEONGHONG-HANKOOK
May 1978 Seoul Korea



A monthly Architectural Journal Vol. 1

☎ 73-0420 · 6616

釜山直轄市支部
事務所 移転

姓 名	名 稱	所 在 地	電 話	免許番号	登録番号	年 月 日
문 정 규	현대건축연구소	부산시동구범일동26-4	8-1867		42호	76. 3
김 신 재	한국건축설계공단김신재사무소	부산시부산진구부전동191	6-6763 8-2841		중구제47호	
김 창 신	한국건축설계공단김창신사무소	부산시부산진구부전동191	6-6763 8-2841		부산진제9호	
李 憲 雨	한국건축설계공단이헌우사무소	부산시부산진구부전동191-1	6-6763 8-2841		동래구제33호	76. 3
박 명 수	아세아건축설계사	부산시 남구대연동1741-3	6-5656		대연출장소제4호	76. 3
송 규 태	유성건축설계사	부산시부산진구부전동352-14	3-9626		부산제90호	76.2.21

休業会員

황 경 호	경진건축사무소	부산시부산진구 399-1			부산진구제76호	76. 3. 1-
황 영 철	이화건축사무소	부산시부산진구범천동1253			부산진구70호	76. 3

폐업회원

강 행 생	동림건축연구소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55-1			제20호	76. 3
정 양 부	대흥설계사무소	부산시 중구 부평동2가35			중구제43호	76. 3

忠淸南道支部

休業会員

최 덕 종	중도건축설계사무소	대전시대흥동487-1			제24호	76.4.1- 77.3.30
-------	-----------	-------------	--	--	------	--------------------

폐업회원

임 호 군	삼정건축설계사무소				제18호	76. 3. 22
-------	-----------	--	--	--	------	-----------

全羅北道支部

폐업회원

김 민 술	협성건축설계사	전주시경원동1가76		1-337	1-17	76. 3.18
정 근	문화건축사무소	전주시경원동1가76				76. 3.29
노 승 기	노승기건축설계사무소	군산시중앙로1가88				76. 3.31
강 대 승	이리건축설계사무소	이리시창인동1가181				76. 3.31
이 원 대	대웅건축설계사	정읍군정주읍수성리590				76. 3.31
강 경 식	강경식건축설계사무소	정읍군정주읍수성리531				76. 3.31
이 근 성	신성건축설계사	김제군김제읍요촌리				76. 3.31

転入会員

허 철	신일건축설계사무소	군산시중앙로1가87		1-1485	1-19	76.2.12
-----	-----------	------------	--	--------	------	---------

全羅南道支部

폐업회원

황 의 국				2-270	18	76. 3.29
-------	--	--	--	-------	----	----------

慶尙北道支部
事務所 移転

姓 名	名 稱	所 在 地	電 話	免許番号	登録番号	年 月 日
권 정 부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중구동문동13			20	76. 1. 10
김 총 삼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중구동문동13			38	76. 1. 10
한 석 인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중구동문동13			128	76. 1. 10
박 정 규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중구동문동13			129	76. 1. 10
박 래 용	동산건축설계사무소	중구동문동13			42	76. 1. 10
이 우 상	영주건축설계사무소	영주군영주읍휴천리642			42	76. 3. 8
최 강 호	전영건축연구소	동구신천동 171			127	76. 1. 17
이 병 택	국도건축기술공사	동구신천동 740			51	76. 1. 18
고 만 권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중구동인동12- 1			71	76. 1. 17
한 윤 호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중구동인동12- 1			125	76. 1. 17
이 덕 우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중구동인동12- 1			126	76. 1. 17
안 호 일	전영건축설계사무소	영주군영주읍휴천리642			140	76. 1. 5
정 구 윤	대영건축설계사무소	영주군영주읍휴천리642			136	76. 1. 5
김 성 중	신영건축설계사무소	영주군영주읍휴천리642			153	76. 1. 5
이 태 수	수명사전측	중구북성로 1 가77- 1			39	76. 1. 13
이 종 만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동문동13			53	76. 1. 13
박 휴 태	청대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서구비산동415- 5			37	76. 1. 26
방 한 수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 중구동인동2가12- 1			49	76. 1. 26
김 태 욱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 중구동인동2가12- 1			64	76. 1. 26
이 무 상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 중구동인동2가12- 1			81	76. 1. 26
이 상 열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 중구동인동2가12- 1			103	76. 1. 26
임 팔 암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 중구동인동2가12- 1			107	76. 1. 26
고 목 훈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 중구동인동2가12- 1			119	76. 1. 26
문 귀 등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 중구동인동2가12- 1			131	76. 1. 26
김 신 원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 중구동인동2가12- 1			132	76. 1. 26
안 승 재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동문동13			6	76. 1. 26
진 병 달	대구건축사합동서부사무소	대구시서구비산동389-5			142	76. 1. 26
이 재 목	대구건축사합동서부사무소	대구시서구비산동389-5			143	76. 1. 26
이 흥 길	대구건축사합동남부사무소	대구시 남구남산동690- 8			144	76. 1. 26
강 진 구	대구건축사합동남부사무소	대구시 남구남산동690- 8			145	76. 1. 26
김 재 우	대구건축사합동남부사무소	대구시 남구남산동690- 8			146	76. 1. 26
백 정 훈	대구건축사합동남부사무소	대구시 남구남산동690- 8			66	76. 1. 26
박 재 우	대구건축사합동남부사무소	대구시 남구남산동690- 8			122	76. 1. 26
유 병 득	대구건축사합동남부사무소	대구시 남구남산동690- 8			148	76. 1. 26
김 한 필	대구건축사합동남부사무소	대구시 남구남산동690- 8			149	1. 26
이 원 호	대구건축사합동남부사무소	대구시 남구남산동690- 8			150	76. 1. 26
유 우 록	대구건축사합동남부사무소	대구시 남구남산동690- 8			147	76. 1. 26

慶尙北道支部
事務所 移轉

姓 名	名 稱	所 在 地	電 話	免許番号	登録番号	年 月 日
정 영 철	대구건축사합동북부사무소	대구시북구칠성동 2가161-1			55	76. 1.26
최 종 언	대구건축사합동북부사무소	대구시북구칠성동 2가161-1			115	76. 1.26
안 상 온	대구건축사합동동촌사무소	동구입석동999-1			89	76. 1.26
박 종 화	대구건축사합동동촌사무소	동구입석동999-1			90	76. 1.26
정 원 성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중구동문동13			60	76. 1.26
윤 욱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중구동문동13			76	76. 1.26
서 보 광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중구동문동13			93	76. 1.26
김 무 권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중구동문동13			99	76. 1.26
이 성 해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중구동문동13			151	76. 1.26
김 용 태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중구동문동13			152	76. 1.26
김 팔 섭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중구동문동13			1	76. 1.26
임 윤 상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중구동문동13			4	76. 1.26
이 종 섭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중구동문동13			14	76. 1.26
장 호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중구동문동13			45	76. 1.26
김 재 수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중구동문동13			57	76. 1.26
도 원 회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중구동문동13			63	76. 1.26
서 종 달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중구동문동13			80	76. 1.26
이 근 상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중구동문동13			80	76. 1.26
라 정 도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중구동문동13			87	76. 1.26
홍 기 원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중구동문동13			98	76. 1.26
김 선 료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중구동문동13			100	76. 1.26
오 인 준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중구동문동13			121	76. 1.26
이 지 관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중구동문동13			153	76. 1.26
박 해 권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중구동문동13			154	76. 1.26
김 주 화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중구동문동13			106	76. 1.26
김 상 태	대구건축사합동 중부사무소	중구동문동 19-7			7	76. 1.26
김 영 두	대구건축사합동중부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 9-7			22	76. 1.26
정 수 영	대구건축사합동중부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 9-7			155	76. 1.26
박 현 일	대구건축사합동중부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 9-7			68	76. 1.26
임 결 종	동남아합동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 중구동성로 3가74-1			29	76. 1.26
서 광 신	대구건축사합동중부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13			36	76. 1.26
권 문 수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13			52	76. 1.26
박 영 하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 13			47	76. 1.26
남 창 화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 13			70	76. 1.26
도 무 찬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 13			79	76. 1.26
김 상 웅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 13			82	76. 1.26
김 영 태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 13			94	76. 1.26

慶尙北道支部
事務所 移転

姓 名	名 稱	所 在 地	電 話	免許番号	登録番号	年 月 日
윤 철 준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13			95	76. 1.26
이 기 혁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13			101	76. 1.26
이 우 일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13			12	76. 1.26
이 중 우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13			23	76. 1.26
임 종 순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13			62	76. 1.26
배 천 근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13			133	76. 1.26
강 정 공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13			92	76. 1.26
김 경 진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13			134	76. 1.26
이 병 일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13			135	76. 1.26
박 절 택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13			5	76. 1.26
전 재 기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13			17	76. 1.26
이 동 근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13			26	76. 1.26
채 용 회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13			104	76. 1.26
최 병 민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13			105	76. 1.26
이 무 식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13			111	76. 1.26
이 승 희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13			112	76. 1.26
서 상 길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13			114	76. 1.26
구 성 일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13			108	76. 1.26
이 흥 기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13			116	76. 1.26
김 규 열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13			117	76. 1.26
홍 호 용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13			118	76. 1.26
박 동 룡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13			123	76. 1.26
박 상 정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13			124	76. 1.26
정 현 수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13			136	76. 1.26
이 재 윤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13			137	76. 1.26
최 병 윤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13			138	76. 1.26
이 대 일	대구건축사합동중부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 9 - 7			88	76. 1.26
김 대 룡	대구건축사합동중부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 9 - 7			139	76. 1.26
최 용 남	대구건축사합동중부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 9 - 7			46	76. 1.26
김 영 수	대구건축사합동중부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 9 - 7			110	76. 1.26
김 흥 대	대구건축사합동중부사무소	대구시 동구신천동174-3			72	76. 1.26
최 원 태	대구건축사합동중부사무소	대구시 동구신천동 781-3			140	76. 1.26
이 수 일	대구건축사합동중부사무소	대구시 동구신천동781-3			11	76. 1.26
이 연 역	대구건축사합동중부사무소	대구시 동구신천동781-3			28	76. 1.26
김 건 일	대구건축사합동중부사무소	대구시 동구신천동781-3			48	76. 1.26
임 두 현	대구건축사합동중부사무소	대구시 동구신천동781-3			67	76. 1.26
이 태 우	대구건축사합동서부사무소	대구시 서구비산동389-5			83	76. 1.26

慶尙北道支部
事務所 移転

姓 名	名 稱	所 在 地	電 話	免許番号	登録番号	年 月 日
김 중 배	대구시 건축사합동서부사무소	대구시서구비산동389-5			84	76. 1. 26
이 완 열	대구시 건축사합동서부사무소	대구시서구비산동389-5			141	76. 1. 26
이 길 웅	대구 건축사합동서부사무소	대구시서구비산동389-5			18	76.1. 26
김 상 익	대구 건축사합동서부사무소	대구시서구비산동389-5			35	76.1. 26
박 종 섭	대구 건축사합동서부사무소	대구시서구비산동389-5			97	76.1. 26
김 인 호	대구 건축사합동동부사무소	대구시동구신천동174-3			10	76.1. 26
장 관 권	대구 건축사합동동부사무소	대구시동구신천동174-3			19	76.1. 26
안 주 원	대구 건축사합동동부사무소	대구시동구신천동781-3			25	76.1. 26
정 재 수	대구 건축사합동동부사무소	대구시동구신천동174-3			41	76.1. 26
민 병 덕	대구 건축사합동동부사무소	대구시동구신천동781-3			156	76.1. 26
장 상 회	대구 건축사합동서부사무소	대구시서구비산동389-5			157	76.1. 26
이 건 호	대구 건축사합동남부사무소	대구시 남구남산동690-8			158	76.1. 26
최 성 덕	대구 건축사합동북부사무소	대구시북구칠성동 2 가161-1			160	76.1. 26
한 석 배	대구 건축사합동북부사무소	대구시북구칠성동 2 가161-1			31	76.1. 26
조 정 부	대구 건축사합동북부사무소	대구시북구칠성동 2 가166-1				76.1. 26
구 정 광	대구 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중구동문동13			96	76.1. 26
윤 자 균	대구 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중구동문동13			85	76.1. 29
김 성 일	대구 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중구동문동13			30	76.1. 29
이 상 익	대구 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중구동문동13			78	76.1. 29
백 봉 상	대구 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중구동문동13			160	76.1. 29
이 성 영	대구 건축사합동서부사무소	대구시서구비산동389			102	76.1. 29
이 송 기	시내건축설계사무소	중구북성로 1 가77-1			161	76.1. 29
전 성 팔	대구 건축사합동경산사무소	경산읍서상동75			1	76.1. 31
장 화 선	대구 건축사합동경산사무소	경산읍서상동75			2	76.1. 31
황 용 주	대구 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중구동문동20-11			44	76.1. 10
김 남 수	대구 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중구동문동13			33	76.2. 10
이 진 회	대구 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중구동문동13			3	76.2. 10
라 종 택	대구 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동구신천동174-3			24	76.2. 10
윤 태 식	합동건축기술공사	대구시중구서성로 2 가353			75	76.2. 24
정 봉 진	대구 건축사합동사무소	중구동문동20-11				76.2. 4
이 흥 노	신흥건축설계사무소	중구동성로 2 가152			27	76.3. 16
김 성 수	대광건축	대구시북구칠성동 2 가53			2-50	76.3. 24
정 원 성	대구 건축사합동신암사무소	동구신암동164-17			60	76.3. 3
윤 자 균	대구 건축사합동신암사무소	동구신암동164-17			85	76.3. 3
라 정 도	대구 건축사합동신암사무소	대구시동구신암동164-17			87	76.3. 3
이 지 관	대구 건축사합동신암사무소	동구신암동164-17			153	76.3. 3

慶尚北道支部

폐업회원

姓 名	名 稱	所 在 地	電 話	免許番号	登録番号	年 月 日
이 유 욱	청화건축설계사무소					75.12. 30
최 준 한	최준한건축설계사무소	영주읍영주리470-30				76.3. 2
석 용 길	우진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중구남일동14-1				76.3. 3
장 화 선	아주건축연구소	대구시중구공명동60			113	76.1. 21
문 정 식	범양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남구남산동379			27	76.1. 14
권 영 환	합동건축연구소	대구시중구서성로2가39-3			74	76.3. 12
여 욱 동	동일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중구동성로3가9			122	76.3. 12
김 재 수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중구동문동13			57	76.3. 22
채 용 회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중구동문동13			104	76.3. 1

休業會員

오 인 준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대구시중구동문동13			121	76.3. 15 76.5. 14
-------	------------	------------	--	--	-----	----------------------

慶尚南道支部

事務所 移転

김 도 순	북지건축설계사무소	경남김해군김해읍서상동82-15	김해 1207			76.3. 15
조 호 제	공간건축설계사무소	경남김해군김해읍서상동82-15	김해 1207			76.3. 15
허 호 웅	대명건축연구소	경남김해군김해읍서상동82-15	김해 1207			76.3. 15

서울市支部 前方將兵慰問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일선장병을 위문하고자 서울지부에서는 3.29일지부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전선○○사단을 방문하고 라디오17대 책자 800권 등 많은 위문품을 전달하여 전방에서 수고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높였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법시행령 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인

1976년 3월 27일

국무총리 최규하
국무위원 김치열
내무부장관

● 대통령령제8,038호

소방법시행령개정령

소방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법시행령

제1장 화재의 예방

제1조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특수장소의 지정)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특수장소”라 함은 별표 1에 기재하는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제2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 ①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는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허가대상물 중 다음에 기재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공동주택·여관·하숙·진료소 또는 조산원으로서 연면적이 300평방미터 미만의 것.
2. 사업장으로서 연면적이 200평방미터 미만의 것.
3.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660평방미터 미만의 것.
4. 차고로서 연면적이 200평방미터 미만의 것.
5. 창고업 또는 위험물저장 이외의 용도에 공하는 창고.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것으로서 연면적이 150평방미터 미만의 것.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기재하는 2이상의 용도에 공하여지는 복합건물로서 각 용도에 공하여지는 부분의 규모 및 용도가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것. 다만, 각 용도에 공하여지는 부분의 합계가 660평방미터 이상의 복합건물은 제외한다.

② 건축허가청이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확인에 관한 동의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①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는 별표 1에 기재한 소방대상물(동표의 (19)항 및 (20)항은 제외한다)중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거나 근무 또는 거주하는 자의 수(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가 50인 이상인 소방대상물로 한다.

② 수용인원의 산정방법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동일 대지안에 있는 2 이상의 특수장소) 동일대지안에 제3조 제1항의 특수장소가 2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때에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1개의 특수장소로 본다.

제5조 (공동방화관리를 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화관리를 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별표 1의 (16)항에 기재한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상인 소방대상물로 한다.

제6조 (방화관리자의 자격) ①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는 당해 특수장소의 관리 및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철도청장이 철도법에 의한 철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대합실에는 철도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로 한다.

1. 내무부령이 정하는 방화관리 업무에 관한 강습과정을 수료하고 그 자격을 인정 받은 자.
2. 초급대학(전문학교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교에서 소방에 관한 학과 또는 과정을 수료한 자.
3. 소방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방화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에 관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 방화관리자는 매년 소방실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과 교육의 실시방법·시간·과목 기타강습과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강습 및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방화관리자의 책무) ① 방화관리자는 방화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

② 방화관리자는 소방시설의 점검, 정비와 화기의 사용,

취급등에 대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방화관리자는 소방계획에 의한 통보·소화및 피난등의 훈련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소방계획) ① 법 제1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검사 계획
2. 소방시설등의 점검·정비계획
3. 피난통로·피난구·안전구획·방연구획 기타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계획
4. 방화벽·방화내장 기타 방화상의 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 계획
5. 인원의 수용계획
6. 방화상 필요한 교육 계획
7. 화재시의 소화활동·통보연락·피난유도 등의 훈련 계획
8. 자위소방대의 조직과 임무부여
9. 소방관서와의 업무연락
10. 기타 관할소방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방화관리자는 다음 연도에 관한 제1항의 소방계획을 매년 10월31일까지 작성하여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소방계획의 작성 및 그 실시에 관하여 지도한다.

제9조 (특수장소의 방염) ①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를 하여야 할 기타 소방대상물은 다음에 계기하는 소방대상물로 한다.

1. 나이트클럽
2. 맨스홀

②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성능이 있어야 할 기타 물품은 문발·차광막·전시용섬유판 (식물 섬유를 주 원료로 한 것에 한한다) 무대에서 사용하는 막, 대도구용 합판 또는 섬유판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의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하나의 불꽃을 접하였을 때 용융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고, 기타 물품에 있어서는 제1호내지 제3호에 규정된 수치의 범위안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1. 물품의 잔염시간(착염후에 바나를 제거한때부터 불꽃을 울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경과시간을 말한다)은 10초 이내
2. 물품의 잔진시간(착염후에 바나를 제거한때부터 불꽃을 울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때까지의 경과시간을 말한다)은 30초 이내
3. 물품의 탄화면적(제1호의 잔염시간 또는 제2호의 잔진시간 내에서 탄화하는 면적을 말한다)은 50평방센티미터 이내

4. 탄화길이(제1호의 잔염시간 또는 제2호의 잔진시간내에 탄화하는 길이를 말한다)는 20센티미터 이내

5. 물품의 접염회수(완전히 용융될 때까지 필요한 불꽃을 접하는 회수를 말한다.)는 3회 이상 10회 이하

④ 제3항에 규정한 방염성능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의 표시·검사방법 및 방염처리자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위험물·준위험물 및 특수가연물의 지정) ①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화성 또는 인화성 위험물의 품명은 별표 2에 계기한 것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물품이라 함은 위험물에 준하는 가연성 물품으로서 별표 3에 계기한 것(이하 "준위험물"이라 한다)과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확대가 빠른 물품으로서 별표 4에 계기한 것(이하 "특수가연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장 소방시설 등

제1절 소방시설을 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종류

제11조 (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법 제29조 제1항동 제16조 제1항 및 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을 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1. 별표 1에 계기한 특수장소
 2. 별표 2 내지 별표 4에 계기한 수량 이상의 위험물·준위험물·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3. 별표 2에 계기한 위험물의 지정 수량의 5분의 1 이상을 제조·저장·취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4.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경계지구안의 주택·점포 기타의 건축물이나 시설
-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종류와 기준은 이 장에 규정하는 것 외에 제6장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 (소방시설의 종류) ① 소화설비는 물 기타 소화제를 사용하여 소화를 행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것을 말한다.

1. 소화기 및 다음에 계기하는 간이소화용구등
가. 물양동이
나. 소화수통
다. 건조사
라. 팽창질식 또는 팽창진주암
2. 옥내소화전 설비

3. 스프링크러 설비
4. 물분무소화 설비
5. 포말소화 설비
6. 불연성가스 소화 설비
7. 증발성액체소화 설비
8. 분말소화 설비
9. 옥외소화전 설비
10. 동력소방펌프 설비

②경보설비는 화재발생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화재탐지 설비
2. 전기화재경보기
3.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화재속보설비·자동화 재속보 설비
4. 비상경보기구(경종·휴대용 확성기·수동식 사이렌 등) 및 비상경보설비(비상벨·자동식 사이렌·방송설비)

③피난설비는 화재가 발생한 때에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1.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고기타 피난기구
2.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

④소화용수 설비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지 기타 소화용수를 말한다.

⑤기타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는 배연설비·연결살수설비·연경송수관설비 또는 비상콘센트 설비를 말한다.

제2절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의 기준

제1관 통칙

제13조 (소방대상물의 완전구획구분)내화구조의 소방대상물로서 개구부가 없는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고 그 구획된 이외의 장소로 연소할 우려가 없는 부분은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제14조 (소방대상물의 용도별 부분)별표 1의 (16)항에 제기하는 소방대상물로서 그 일부분이 동표의 (1)항 내지 (15)항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용도별로 각각 1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다만, 제29조 제2항 제2호 및 동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제2관 소화설비의 기준

제15조 (소화기구에 관한 기준) ①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소방대상물에는 소화기 또는 간이 소화용구(이하 "소화기구"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1)항(가)호·(2)항·(17)항·(18)항·(20)항에 제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2. 별표 1의 (1)항(나)호·(3)항 내지 (6)항·(9)항 또는 (12)항 내지 (14)항에 제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50평방미터 이상의 것.
 3. 별표 1의 (7)항·(8)항·(10)항·(11)항 또는 (15)항에 제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의 것.
 4. 별표 1에 제기한 소방대상물 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건축물 기타의 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한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의 위험물이나 별표 3에서 정한 수량 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별표 4에서 정한 수량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및 시설
 5. 별표 1에 제기한 소방대상물 중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건축물의 지하층·무장층(건축물의 지상층 중 피난상 또는 소화 활동상 사용될 개구부의 면적이 그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50평방미터 이상의 것.
- ②제1항의 소화기구의 설치·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소화기구는 별표 5에 의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소화기구의 종류와 성능에 따라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증발성 액체를 방사하는 소화기는 지하층·무장층 기타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화기구는 통행 또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사용할 때에 쉽게 반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③제1항 각호에 제기한 소방대상물에는 제16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옥내 소화전설비·스프링크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말소화설비·불연성가스소화설비·증발성액체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를 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구의 설치개수를 감소할 수 있다.
- 제16조 (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기준) ①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소방대상물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1)항에 제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의 것.
 2. 별표 1의 (2)항 내지 (10)항(12항) 또는 (14)항에 제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700평방미터 이상의 것.
 3. 별표 1의 (11)항 또는 (15)항에 제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의 것.

4. 별표 1에 제기한 소방대상물 중 제 1호 내지 제 3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건축물 기타의 시설로서 별표 3에서 정한 수량의 750배 이상의 제 1류·제 2류 제 5류의 준위험물 또는 별표 4에서 정한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및 시설
5. 별표 1에 제기한 소방대상물(동표의 (13)항 및 (17)항을 제외한다)중 제 1호 내지 제 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건축물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동표의 (1)항에 제기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100평방미터 이상, 동표의 (2)항 내지 (10)항·(12)항 또는 (14)항에 제기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150평방미터 이상, 동표의 (11)항 또는 (15)항에 제기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00평방미터 이상의 것.
- ②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3호 또는 제 5호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이 그 주요구조부(건축법 제 2조 제 7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한 부분(반자틀림·창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제외한다)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난연합판·난연섬유판·난연프라스틱판 기타의 건축재료로서 난연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은 동항에 규정된 해당면적의 3배를 기준으로 한다.
- ③ 제 1항의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옥내소화전은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호오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설치개수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개로 한다)에 2.6일방미터를 곱하여 얻은 양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옥내소화전설비는 어느 층에 있어서는 당해 층의 모든 옥내소화전(설치개수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개의 옥내소화전으로 한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 노즐의 선단의 방수압력이 매 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1.7킬로그램 이상이고 방수량이 매분 130리터 이상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4.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하기가 편리하고 화재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옥내소화전을 11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설치할 때에는 따로 비상전원을 부설하여야 한다.
- ④ 제 1항 각호에 제기한 소방대상물에는 제 17조 내지 제 21조·제 24조 또는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크

라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말소화설비·불연성가스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 소방펌프설비를 한 때에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에 있어서는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스프링크라설비에 관한 기준) ① 다음 각호에 제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스프링크라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1)항에 제기한 소방대상물로서 무대부(무대에 부설된 장치물 및 소품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바닥면적이 당해 무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300평방미터 이상, 기타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500평방미터 이상의 것.
2. 별표 1의 (4)항에 제기한 소방대상물로서 판매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층 이하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9,000평방미터 이상, 5층 이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6,000평방미터 이상의 것.
3. 별표 1의 (12)항 (가)호에 제기한 소방대상물 중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4. 별표 1의 (14)항에 제기한 소방대상물 중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미터를 넘고 연면적이 700평방미터 이상의 락크식 창고(선반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창고를 말한다)
5. 별표 1에 제기한 소방대상물 중 제 1호 내지 제 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로서 별표 3에서 정한 수량의 1,000배 이상의 제 1류·제 2류·제 5류의 준위험물 또는 별표 4에서 정한 수량의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및 시설
6. 별표 1에 제기한 소방대상물 중 제 1호 내지 제 5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건축물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중 그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동표의 (2)항 및 (4)항에 제기한 것에 있어서는 1,000평방미터 이상, 동표의 (3)항 (나)호, (5)항 (가)호 및 (6)항에 제기한 것에 있어서는 1,500평방미터 이상의 것. 다만, 별표 1의 (1)항, (3)항 (가)호, (5)항 (나)호 및 (7)항 내지 (17)항에 제기한 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7. 별표 1의 (1)항 내지 (6)항·(12)항 (나)호 및 (15)항에 제기한 소방대상물 중 제 1호, 제 2호 및 제 5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상의 부분중 건축법시행령 제 96조 제 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이외의 부분으로서 그 바닥면적

의 합계가 100 평방미터 이상의 것.

② 제 1항의 스프링크라설비의 설치·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스프링크라헤드는 제 1항 제 1호에 제기한 소방대상물에는 무대부에, 제 1항 제 2호에 제기한 소방대상물에는 판매장의 부분에, 제 1항 제 5호에 제기한 소방대상물에는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부분에, 제 1항 제 6호에 소방대상물에는 그 주된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에, 제 1항 제 7호에 제기한 소방대상물에는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부분에, 제 1항 제 4호에 제기한 소방대상물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2. 스프링크라헤드는 제 1호에 제기한 부분의 지붕의 옥내에 면한 부분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그 부분으로부터 어느 1개의 스프링크라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 1항 제 4호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가. 제 1항 제 1호 및 제 7호에 제기한 소방대상물의 부분(별표 1의 (1)항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의 부분에 한한다)의 무대부에 있어서는 1.7미터 이하
나. 제 1항 제 2호·제 5호 내지 제 7호에 제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1미터 이하(내화건축물에 있어서는 2.3미터 이하)
3. 제 2호에 의하는 것 외에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건축법 제 2조 제 8호의 규정에 의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말한다)의 개구부에는 그 윗 인방에 거리 2.5미터마다 스프링크라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대상물의 10층 이하의 부분에 있는 개구부에 감종방화문 또는 울종방화문(건축법시행령 제 95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문을 말한다)을 설치하였거나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드래자설비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원의 수량은 스프링크라헤드의 종류별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스프링크라헤드의 소요개수에 1.6입방미터를 곱하여 얻은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스프링크라설비는 스프링크라헤드의 종류별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개수의 스프링크라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헤드의 전단의 방수압력이 매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1킬로그램 이상이고 방수량이 80리터 이상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6.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점이 편리하고 화재등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7. 스프링크라헤드를 소방대상물의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할 때에는 비상전원을 부설하고 소방펌프차 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쌍구형의 송수구를 부설하여야 한다.

제③ 1항 각호에 제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부분에 제 18조 내지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물분무소화설비·포말소화설비 또는 불연성가스 소화설비를 한 때에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스프링크라 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 16조 제 2항의 규정은 제 1항 제 4호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적용 소화 설비
별표 1의 (13) 항 (가) 호에 제기한 소방대상물의 층(주차한 제차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구조의 층을 제외한다)으로서 주차의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200평방미터 이상, 1층에 있어서는 500평방미터 이상의 것.		물분무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 연성가스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별표 1의 (13) 항 (나) 호에 제기한 소방대상물		포화소화설비
별표 1에 제기한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통신기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500 평방미터 이상의 것.		물분무소화설비, 불연성가스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별표 1에 제기한 건축물이나 시설로서 별표 3 정한 수량의 1,000배 이상의 준위험물(제 3류 및 제 6류를 제외한다) 또는 별표 4에 정한 수량의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및 시설	제 1류 또는 제 2류의 준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곳.	물분무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
	제 4류의 준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곳.	물분무소화설비, 불연성가스소화설비, 중발성액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제 5류의 준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곳.	물분무소화설비
	석탄 및 목탄 이외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곳.	물분무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 불연성가스소화설비(전역방출 방식의 것에 한한다).

제18조 (물분무소화설비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① 다음에 계기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에 적응한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계기한 별표 3의 제1류·제2류 및 제5류의 준위험물 또는 별표 4의 특수가 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스프링클라설비를 제17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 때에는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 (물분무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제18조에 규정한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한다.

1. 분무헤드는 방호대상물(당해 소화설비에 의하여 소화할 수 있는 범위의 대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구조·성질·수량 또는 취급방법에 따라 표준방사량(제18조 제1항의 '소화설비의 각 헤드별로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물분무·포말·불연가스·증발액제 또는 분말의 방사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별표 1의 (13)항(가)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의 층에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한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3. 고압의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에는 당해 전기기기와 분무헤드 및 배관과의 사이에 전기절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4. 수원의 수량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화재시 연소 또는 충격에 의한 손상의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장치를 유효하게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포말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제18조에 규정한 포말소화설비의 설치·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한다.

1. 고정식 포말소화설비의 포말헤드는 방호대상물의 형상·구조·성질·수량 또는 취급방법에 따라 표준방사량으로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이동식 포말소화설비의 호오스 접결구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호오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이동식 포말소화설비의 포말방사용 기구를 넣어 들함은 호오스 접결구로부터 3미터 이내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수원의 수량, 포말소화약제 또는 화학포말 소화액의 저장량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이어야 한다.
5. 포말소화약제 또는 화학포말소화액의 저장 장소 및 가압송액장치는 화재시 연소 또는 충격에 의한 손상의 우려가 적고 약제가 변질할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장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불연성가스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제18조에 규정한 불연성가스 소화설비의 설치·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한다.

1. 전역방출방식의 불연성가스 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불연재로 된 벽·기둥·바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지붕)로 구획하고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갑종 방화문·울충방화문 또는 불연재로 된 문으로서 불연성가스가 방사될 직전에 개구부를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 부분에 대하여 당해 부분의 용적 및 그 방호대상물의 성질에 따라 표준방사량으로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연성가스가 외부로 새어 나가더라도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양을 방출할 수 있는 불연성가스 소화설비를 한 때에는 당해 개구부의 자동폐쇄장치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소방출방식의 불연성가스 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형상·구조·성질·수량 또는 취급방법에 따라 방호대상물에 불연성 가스를 직접 방사함으로써 표준방사량으로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불연성가스 소화설비의 호오스 접결구는 모든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그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호오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불연성가스용기에 저장하는 불연성가스의 양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이어야 한다.
5. 불연성가스용기는 화재의 경우에 연소 또는 충격에 의한 손상의 우려가 적고 온도의 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장치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증발성 액체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제18조 제1항에 규정한 증발성 액체소화설비의 설치 및 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역방출방식 및 국소방출방식의 증발성 액체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설치는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역방출방식 및 국소방출방식의 불연성가스 소화설비의 분사헤드설치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
2. 이동식 증발성액체소화설비의 호오스 접결구는 모든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그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호오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증발성 소화약제탱크에 저장하는 증발성 액체의 양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이어야 한다.
4. 증발성 소화약제탱크 및 가압송액장치는 화재외경우 연소 또는 충격에 의한 손상의 우려가 적고 온도의 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장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분말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제18조 제1항에 규정한 분말소화설비의 설치·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역방출방식 및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설치는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역방출방식 및 국소방출방식의 불연성가스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
2. 이동식 소화설비의 호오스 접결구는 모든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그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호오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소화분말용기에 저항하는 소화분말의 양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이어야 한다.
4. 소화분말용기 및 가압용 가스용기는 화재시에 연소 또는 충격에 의한 손상의 우려가 적고 온도의 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장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옥외소화전설비에 관한 기준) ① 별표 1에 기재한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인 경우에는 1층의 바닥면적,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2이상인 경우에는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내화건축물에 있어서는 9,000평방미터 이상, 준내화건축물에 있어서는 6,000평방미터 이상, 기타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3,000평방미터 이상의 것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동일대지안에 별표 1에 건축물(내화건축물·준내화

건축물을 제외한다)이 2이상인 있을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외벽 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하, 2층에 있어서는 5미터이하인 것은 이를 1개의 건축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옥외소화전은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호오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원 수량은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설치개수가 2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로 한다)에 7입방미터를 곱하여 얻은 양 이상의 양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옥외소화전설비는 2개의 옥외소화전(설치개수가 1개인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 노즐의 선단의 방수압력이 매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2.5킬로그램 이상이고 방수량이 매분 350리터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옥외소화전 및 동설비의 방수용기구를 넣어둘 한은 피난 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조작에 방해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건축물에 제17조 내지 제23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말소화설비·불연성가스소화설비·증발성액체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한하여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 (동력소방펌프설비에 관한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기재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16조 제1항 각호에 기재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2. 제24조 제1항의 건축물

② 제16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제1호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동력소방 펌프설비는 규격방수량이 매분 400리터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한 동력소방펌프설비의 설치·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동력소방펌프설비의 수원은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원까지의 수평거리가 당해 동력소방펌프의 규격방수량이 매분 500리터 이상의 것에 있어서는 100미터 이내, 매분 400리터 이상 500리터 미만의 것에 있어서는 40미터 이내, 매분 400리터 미만의 것에 있어서는 25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원의 수량은 당해 동력소방펌프의 규격 방수량으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이어야 하되, 20입방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0입방미터로 할 수 있다.
3. 동력소방펌프는 소방펌프자동차 또는 자동차에 의하여 견인되는 것에 있어서는 수원으로부터 보행거리 1,000미터 이내의 장소에,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수원의 직근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 ⑤ 제 1항 각호에 계기한 소방대상을 또는 그 부분에 다음 각호의 소화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 동력소방펌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 1항 각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때
2. 제 1항 제 1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의 1층 또는 2층에 제 16조 내지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크라설비·물분무 소화설비·포말소화설비 또는 불연성가스소화설비를 설치한 때
3. 제 1항 제 2호에 계기한 건축물의 1층 또는 2층에 제 17조 내지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스프링크라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말소화설비·불연성가스소화설비·증발성액체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한 때

제 3관 경보설비의 기준

제26조 (자동화재탐지설비에 관한 기준) ① 다음 각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13)항(나)호 및 (17)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
2. 별표 1의 (1)항·(2)항·(5)항(가)호 및 (6)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의 것.
3. 별표 1의 (3)항·(4)항·(5)항(나)호·(7)항 내지 (10)항·(12)항·(13)항(가)호 및 (14)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의 것.
4. 별표 1의 (11)항 및 (15)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의 것.
5. 제 1호 내지 제 4호에 계기한 것 외에 별표 1에 계기한 건축물이나 시설로서 별표 3에 정한 수량의 500배 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별표 4에 정한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것.
6. 제 1호 내지 제 5호에 계기한 것 외에 별표 1에 계기한 건축물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의 것.
7. 별표 1의 (13)항(가)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제 3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의 층(주차한 차량이 동시에 옥외로 나갈 수 있는 구조의 층은 제외한다)으로서 주차용에 공하는 구분의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의 것.

8. 별표 1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의 통신기기실로서 바닥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의 것.

② 제 1항 제 2호 내지 제 4호 및 제 6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고, 실내에 면한 벽과 반자의 표면이 불연재로 또는 난연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은 동항에 규정된 해당면적의 2배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 1항에 규정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자동화재탐지설비의 1회선이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다)은 소방대상물의 2 이상의 층에 미쳐서는 아니된다. 다만,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개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평방미터 이하로 하고, 그 1변의 길이는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문에서 그 내부를 투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1,000평방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3.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 및 반자안의 부분(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반자안의 부분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전원을 부설하여야 한다.

④ 제 1항 각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부분(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제 17조 내지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스프링크라설비·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말소화설비(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폐쇄형 스프링크라 헤드를 설비한 것에 한한다)를 한 때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의 한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 (전기화재경보기에 관한 기준) ① 다음 각호에 계기한 건축물(내화구조의 것을 제외한다)로서 그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연재로나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축물에는 전기화재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17)항에 계기한 건축물
2. 별표 1의 (5)항 및 (9)항에 계기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50평방미터 이상의 것.
3. 별표 1의 (1)항 내지 (4)항·(6)항 및 (12)항에 계기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의 것.
4. 별표 1의 (7)항·(8)항·(10)항 및 (11)항에 계기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의 것.
5. 별표 1의 (14)항 및 (15)항에 계기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의 것.
6. 제 1호 내지 제 5호에 계기한 것 외에 별표 1의 (1)항 내지 (6)항·(15)항에 계기한 건축물로서 계약전류용량(동일건축물로서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의 최대계약전류의 용량)이 100암페어를 초과 하는 것.

② 제 1항의 전기화재경보기는 건축물의 옥내전기배선에 관한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화재속보설비에 관한 기준)

① 다음 각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에는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있는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1의 (1)항·(2)항·(4)항·(5)항(가)호·(6)항·(12)항 및 (17)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의 것.
2. 별표 1의 (3)항·(5)항(나)호·(7)항 내지 (11)항 및 (13)항 내지 (15)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의 것.

② 다음 각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에는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4)항·(5)항(가)호·(6)항(가)호·(12)항·(14)항 또는 (18)항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바닥면적이 1,500평방미터 이상의 것.
2. 제 17조 제 1항 제 5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

③ 제 1항 화재속보설비는 여러 사람의 눈에 잘 보이고 화재의 경우 신속히 조작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이나 관리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에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하거나 제 2항의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 1항의 화재속보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 (비상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에 관한 기준)

① 별표 1의 (4)항·(6)항(나)호·(다)호 및 (12)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수용인원이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제 2항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비상경보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소방

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가 제 26조 또는 이 조 제 4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한하여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음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제 3항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비상벨·자동식 사이렌 또는 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제 26조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한하여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별표 1의 (5)항(가)호·(6)항(가)호 및 (9)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수용인원이 20인 이상의 것.

2. 별표 1의 (1)항 내지 (17)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제 1호에 계기한 것을 제외한다)로서 수용인원이 50인 이상의 것 또는 지하층이나 무창층의 수용인원이 20인 이상의 것.

③ 다음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에는 방송설비 및 비상벨이나, 방송설비 및 자동식 사이렌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의 것.
2. 제 1호에 규정된 소방대상물 이외에 별표 1의 (5)항(가)호 및 (6)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의 것 또는 별표 1의 (1)항 내지 (4)항·(5)항(나)호·(7)항 및 (8)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수용인원이 800인 이상의 것.

④ 제 1항 내지 제 3항에 규정한 비상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의 설치·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비상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화재발생을 유효·신속하게 통보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비상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의 기동장치는 여러 사람의 눈에 잘 보이고 화재의 경우 신속히 조작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비상경보설비에는 비상전원을 부설하여야 한다.

⑤ 제 3항 각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방송설비가 제 26조 또는 이 조 제 4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한하여 비상벨 또는 자동식 사이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관 피난설비의 기준

제30조 (피난기구에 관한 기준) ① 다음 각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의 층(건축법시행령 제 104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층 및 11층 이상의 층을 제외한다)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6)항에 제기한 소방대상물의 2층 이상의 층 또는 지하층으로서 수용인원이 20인 이상의 것. 다만, 그 하층에 동표의 (1)항 내지 (4)항·(9)항·(12)항(가)호·(13)항(가)호·(14)항 또는 (15)항에 제기한 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10인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별표 1의 (5)항에 제기한 소방대상물의 2층 이상의 층 또는 지하층으로서 수용인원이 30인 이상의 것. 다만, 그 하층에 동표의 (1)항 내지 (4)항·(12)항(가)호·(13)항(가)호·(14)항 또는 (15)항에 제기한 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10인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별표 1의 (1)항 내지 (4)항 및 (7)항 내지 (11)항에 제기한 소방대상물의 2층 이상의 층(주요구조부틀 내 화구조로 한전축물에 대하여는 2층을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으로서 수용인원이 50인 이상의 것.
4. 별표 1의 (12)항 및 (15)항에 제기한 소방대상물의 3층 이상의 층 또는 지하층으로서 수용인원이 무창층 또는 지하층에 있어서는 100인 이상 기타의 층에 있

어서는 150인 이상의 것.

② 제 1항에 규정한 피난기구의 설치·유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제 1항 각호에 제기한 층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구분에 따라 각층에 적용한 피난기구를 설치하되, 그 개수는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에 제기한 층에 있어서는 수용인원이 100인 이하의 경우에는 1개, 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을 초과할 때마다 1개씩 가산하여 설치하고, 제 1항 제 3호에 제기한 층에 있어서는 수용인원이 200인 이하의 경우에는 1개, 그 이상인 경우에는 200인을 초과할 때마다 1개씩 가산하여 설치하며, 제 1항 제 4호에 제기한 층에 있어서는 수용인원이 300인 이하의 경우에는 1개, 그 이상인 경우에는 300인을 초과할 때마다 1개씩 가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개수를 감소하거나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방대 층 상물	제 1 항 제 1 호의 소방대상물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의 소 방대상물	제 1 항 제 4 호의 소방대상물
지 층	피난사다리, 피난용타람	피난사다리, 피난용타람	피난사다리, 피난용타람
2 층	미끄럼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타람	미끄럼대, 미끄럼봉, 피난로프, 피난사다리,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타람	
3 층	미끄럼대,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타람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타람
4 층 및 5 층	구조대, 피난교, 완강기	구조대, 피난교, 완강기	구조대, 피난교, 완강기
6 층이 상의층	구조대, 피난교, 완강기	구조대, 피난교, 완강기	구조대, 피난교, 완강기

2.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강기를 설치하는 때에는 그 가산의 기준수를 2배로 한다.
3. 피난기구는 피난하기 쉽게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설치하되, 안전한 구조로 된 개구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피난기구는 제 3호의 개구부에 고정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신속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야 한다.

제31조 (유도등 및 유도표지에 관한 기준) ① 다음 각호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이 용이하다고 인정되는 곳으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1의 (1)항 내지 (4)항·(5)항(가)호·(6)항 및 (9)항에 제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동표의 (5)항(나)호·(7)항·(8)항 및 (10)항 내지 (15)항에 제기한 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11층 이상의 부분에는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
 2. 별표 1의 (1)항에 제기한 소방대상물에는 객석유도등
 3. 별표 1의 (1)항 내지 (15)항에 제기한 소방대상물에는 유도표지
- ② 제 1항에 규정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라는 뜻을 표시한 녹색의 등으로 피난구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통로유도등은 복도·계단·통로 기타 피난설비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되, 당해 장소의 조명도가 피난상 유효하도록 되어야 한다.

3. 객석유도등은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석의 조명도가 0,2룩스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부설하여야 한다.
5. 유도표지는 피난의 방향을 지시하는 표시를 하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 1항 제 3호에 제기한 소방대상물에 피난의 방향을 명시한 통로유도등을 제 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설치한 때에는 당해 통로유도등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유도표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5관 소화용수의 기준

제32조 (소화용수설비에 관한 기준) ① 다음 각호에 제기한 건축물에는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제기한 소방대상물 중 그 대지면적이 20,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그 바닥면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인 경우에는 1층의 바닥면적,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2 이상인 경우에는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내화건축물에 있어서는 15,000 평방미터 이상, 준내화건축물에 있어서는 10,000 평방미터 이상, 기타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5,000평방미터 이상의 것.

2. 별표 1에 제기한 소방대상물 중 그 높이가 31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지하층을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다)이 25,000평방미터 이상의 것.

②동일 대지안에 별표 1에 제기한 건축물인 소방대상물(높이 31미터 이상의 것으로서 그 연면적이 25,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제외한다)이 2 이상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외벽 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 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하, 2층에 있어서는 5미터 이하의 것으로서, 그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내화건축물에 있어서는 15,000평방미터로, 준내화건축물에 있어서는 10,000평방미터로, 기타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5,000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일 때에는 이를 1개의 건축물로 보고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 1항에 규정한 소화용수설비의 설치·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소화용수설비는 그 유효수량(지하에 설치된 소화용수설비에 있어서는 그 지면으로부터 깊이 4,5미터 이내의 부분의 수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다)의 합계가 제 1항 제 1호에 제기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을, 제 1항 제 2호에 제기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 연면적을 다음의 구분

에 따르는 면적으로 나누어 얻은수(1 미만의 끝수는 받아 올림한다)에 20입방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이 경우에 유수를 당해 소화용수로 이용할 때에는 매분 0,8입방미터의 유량을 20 입방미터의 수량으로 환산한다.

소방대상물의 구분			면 적
제 1 항 제 1 호에 제기한 소방대상물	내화건축물		7,500평방미터
	준내화건축물		5,000평방미터
	기타의 건축물		2,500평방미터
제 1 항 제 2 호에 제기한 소방대상물			12,500평방미터

2. 소화용수설비는 건축물의 각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용수설비까지의 수평거리가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1개의 소화용수설비의 유효수량은 20입방미터 이상(유수의 경우에는 매분 0,8입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소화용수설비의 흡관투입부분의 수심은 당해 소화용수의 전부를 유효하게 흡수할 수 있는 깊이로 하여야 한다.
4. 소화용수설비는 2미터 이내의 지점까지 소방펌프 자동차가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소화수조에는 적당한 크기의 흡관투입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6관 기타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의 기준

제33조 (배연설비에 관한 기준) ① 다음 각호에 제기한 소방대상물의 부분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1)항에 제기한 소방대상물의 무대부로서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의 것.
2. 별표 1의 (2)항·(4)항·(10)항 및 (13)항에 제기한 소방대상물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의 것.

②제 1항에 규정한 배연설비의 설치·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배연설비는 제 1항 각호에 제기한 소방대상물의 부분의 용도·구조 또는 규모에 따라 화재가 발생한 때에 생기는 연기를 유효하게 배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설비에는 수동기동장치 또는 화재로 인하여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에 동작되는 자동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연설비의 풍도는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4. 배연설비에는 비상전원을 부설하여야 한다.

③제 1항 각호에 제기한 소방대상물의 부분에 배연상 유효한 창 기타의 개구부가 있을 때에는 내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연결송수관에 관한 기준) ①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소방대상물에는 연결 송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제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의 것.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옥내 소화전이 설치되고 바닥면적이 150평방미터 이하로서 10층 이하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별표 1에 제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 이상의 것으로서 연면적이 6,000 평방미터 이상의 것.
3. 별표 1의 (18)항에 제기한 소방대상물

② 제 1항에 제기한

② 제 1항에 규정한 연결송수관의 설치·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방수구는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에 제기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3층 이상의 각층의 계단실·비상용 에레베이터의 승강로비 또는 그 부분에 설치하되 그 층의 각부분으로부터 1개의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제 1항 제 3호에 제기하는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1개의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주관의 안지름은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송수구는 쌍구형으로 하고,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송수관에 관하여는 제 1호 내지 제 3호의 기준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당해 건축물의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나.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수용기구를 넣어 둘 함을 방수구에 부설하여야 한다.

제35조 (연결살수설비에 관한 기준) ① 별표 1에 제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700평방미터 이상의 것에는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규정한 연결살수설비의 설치·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살수헤드는 제 1항의 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의 부분 중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반자 또는 반자안에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는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제 1항의 소방대상물에 포말소화설비·불연성가스 소화설비·증발성액체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나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가 제 17조 내지 제 23조의 기준에 따라 적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한하여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 (비상콘센트설비에 관한 기준) ① 별표 1에 제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것에는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규정한 비상콘센트의 설치·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비상콘센트는 건축물의 11층 이상의 각층의 계단실·비상용에레베이터의 승강로비 또는 그 부근에 설치하되, 그 층의 각부분으로부터 1개의 비상콘센트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비상콘센트 설비는 3상교류 200볼트로서 30암페어 이상 및 단상교류 100볼트로서 15암페어 이상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각각 설비하여야 한다.
3. 비상콘센트설비에는 비상전원을 부설하여야 한다.

제 3 장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조 및 검정등

제37조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제조업종 등 지정)법 제 34조 제 1항 및 동 제3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제조업 및 판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

1. 소화기구
2. 소화약제·방염액·방염도로
3. 동력소방펌프
4. 소방용흡수관·소방용호오스 및 결합금속구
5. 피난기구 및 유도등
6. 각종소화용헤드 (스프링클러헤드·물분무헤드·불연성가스헤드·포헤드·분말헤드·살수헤드)
7. 자동화재탐지기 및 자동경보장치 (발신기·중계기·수신기·감지기 및 자동경보장치의 유수검지장치·압력검지장치 및 음향장치)
8. 전기화재속보기
9. 자동화재속보기
10. 가스화재탐지기

제38조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검정범위) ① 법 제 3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아야할 소방용기계·기구 등은 다음과 같다.

1. 각종소화기
2. 소화약제·방염액·방염도로
3. 동력소방펌프

4. 소방용호오스 및 결합금속구
5. 소화용흡수관
6. 자동화재탐지기 (발신기·중계기·수신기·감지기)
7. 전기화재경보기
8. 자동화재속보기
9. 가스화재탐지기
10. 자동소화설비 (각종 소화용헤드·살수헤드·자동경보장치의 유수검지장치·압력검지장치 및 음향장치 또는 수신기)

11. 금속제피난사다리
12. 완강기
13. 구조대
14. 유도등

② 제 1항의 소방용기계·기구 등으로서 그 성분·재료·구조·규격 등이 내무부령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의 추천으로 점정에 갈음할 수 있다.

제 4 장 소방설비기사

제39조 (소방설비기사가 행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공사 정비의 종류 등)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면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를 할 수 없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 1호 내지 제 3호·제 8호 및 제 14호에 계기한 소방설비에 있어서는 전원·수원 및 배관의 부분을 제 4호 내지 제 7호, 제 9호 및 제 10호에 계기한 소방설비에 있어서는 전원의 부분을 제외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
2. 스프링크라설비
3. 물분무소화설비
4. 포말소화설비
5. 불연가스소화설비
6. 증발성액체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옥외소화전설비
9. 자동화재탐지설비
10. 소방기관에 통보하는 화재속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11. 금속제피난사다리 (고정식에 한한다)
12. 구조대
13. 완강기
14. 연결살수설비 및 연결송수관 설비
15. 소화기 (정비의 경우에 한한다)
16. 전기화재경보기, 가스화재탐지기 및 유도등 (정비의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기술사 및 소방설비기사자격증 소지자는 당해 자격증의 유별 지정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계기하는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소방설비기사 2급자격증소지자는 소방시설의 공사를 할 수 없다.

지정구분	소방시설등의 종류
제 1 류	옥내소화전 설비, 스프링크라 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제 2 류	포말소화설비
제 3 류	불연성가스소화설비, 증발성액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제 4 류	자동화재탐지설비, 소방기관에 통보하는 화재속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제 5 류	금속제,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제 6 류	소화기 (정비의 경우에 한한다)
제 7 류	전기화재경보기, 가스화재탐지기, 유도등 (정비의 경우에 한한다)

제 5 장 화재경제지구등

제40조 (화재경제지구의 지정) ① 시장 (서울특별시시장 및 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법 제4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경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 등이 밀집한 지대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대
4. 소방수리·소방시설 또는 소방통로가 미흡한 지대
5. 위험물의 저장지대

② 시장 (서울특별시시장 및 부산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제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 (화재경제지구안의 소방점사 및 소방훈련)

① 법 제4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점사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제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화재통보훈련
2. 소화훈련
3. 피난훈련
4. 구조훈련

③ 제 2항의 소방훈련은 화재경제지구별로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 (소화응원요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 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화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그 임무·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 6 장 위험물의 취급

제 1 절 통 칙

제43조 (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 1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별표 2에 계기한 수량으로 한다.

제44조 (위험물의 구분) ① 제 10조 제 1항에 규정한 위험물은 감중위험물과 울중위험물로 구분한다.

② 감중위험물은 다음에 계기한 것으로 한다.

1. 별표 2의 제 1류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 및 과산화물
 2. 별표 2의 제 2류의 위험물 중 황린
 3. 별표 2의 제 3류의 위험물 중 금속칼륨 및 금속나트륨
 4. 별표 2의 제 4류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제 1석유류·초산에스테르류·의산(개미산)에스테르류·메틸에틸케톤·알코올류·피리딘·클로로벤젠 및 제 2석유류
 5. 별표 2의 제 5류의 위험물
 6. 별표 2의 제 6류의 위험물 중 발연질산·발연황산·크로로술포산·무수황산
- ③ 울중위험물은 감중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험물로 한다.

제45조 (저장소의 구분) 법 제 1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창고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이하 "옥내저장소"라 한다)
2. 옥외에 있는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이하 "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다만, 제 4호 내지 제 6호에 계기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옥내에 있는 탱크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이하 "옥내탱크저장소"라 한다)다만, 제 4호 내지 제 6호에 계기하는 것을 제외한다.
4.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이하 "지하탱크저장소"라 한다)다만, 제 5호에 계기하는 것을 제외한다.
5. 간이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이하 "간이 탱크저장소"라 한다)
6. 차량(피견인차를 포함한다)에 고정시킨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이하 "이동탱크저장소"라 한다)
7. 옥외의 장소에서 별표 2의 제 4류의 위험물 중 제 2석유류·제 3석유류·제 4석유류·동식물유 또는 동표의 제 6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

소(이하 "옥외 저장소"라 한다)

8.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하여 선박안에 시설한 탱크저장소(이하 "선박탱크저장소"라 한다)

제46조 (취급소의 구분) 법 제 1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취급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이하 "주유취급소"라 한다)
2. 점포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 수량의 5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이하 "판매취급소"라 한다)
3. 제 1호 및 제 2호에 계기한 것 외의 위험물 취급소(이하 "일반취급소"라 한다)

제47조 (탱크용적의 산정방법) 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내용적 및 공간용적의 계산방법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 1항의 탱크의 용량은 당해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적량으로 한다.

제48조 (2품목 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지정수량에 미달하는 위험물을 2품목 이상 동일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조·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에 각 품목별로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수량을 그 품목별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이 될 때에는 이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제 2 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

제49조 (설치허가의 신청) ① 법 제 1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허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신청서에는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및 시방서와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0조 (변경허가의 신청) ① 법 제 1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허가 신청서에 관계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 1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용도폐지신고서를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 (완공점사의 신청) ① 법 제 1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완공점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완공점사신청서를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조소 등의 설치자는 제조소 등의 탱크부분에 배관 기타 부속설비를 장치하기 전에 허가청의 중수시험 또는 수압검사를 받은후 제 1항의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허가청이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허가청이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결과 당해 제조소 등이 그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합격증을 교부하고,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제52조 (제조소 등의 양수신고) ① 제조소 등의 양수인은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양수신고서에 허가증 및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신고를 받은 허가청은 그 양수시설을 확인하고 허가증을 정정 교부하여야 한다.

제 3 절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제 1 관 제조소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53조 (제조소의 기준) 법 제1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소화 및 경보설비를 제외한다. 이하 제 1관 내지 제 3관에서 같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조소(생석회 및 별표 2의 제 6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의 위치는 그 인근의 다음에 기재한 건축물 등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이에 상응하는 공작물의 외측을 포함한다)까지의 사이에 각각 다음에 정한 구분별 거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가)목 내지 (다)목에 기재한 건축물 등에 있어서는 불연재료를 만든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함으로써 안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청이 인정하는 거리를 당해 기준거리로 할 수 있다.

가. (나)목 내지 (다)목에 기재한 것 외의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로서 주거의 용에 공하는 것(제조소가 있는 대지와 동일대지안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상

나. 학교·병원·극장 기타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내부부령으로 정한 것의 경우에는 70미터 이상

다.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문화재·중요민속자료 사적 또는 중요기념물로 지정된 건조물의 경우에는 70미터 이상

라. 고압가스 기타 재해의 발생우려가 있는 물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내부부령으로 정한 거리

마. 사용전압 7,000볼트 이상 35,000볼트 이하의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경우에는 수평거리 3미터 이상
바. 사용전압 35,000볼트를 초과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경우에는 수평거리 5미터 이상

2.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또는 기타의 시설(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상유효한 격벽을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험물의 취급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의 수량	3미터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수량	5미터 이상

3. 제조소에는 내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제조소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 및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지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석가래 및 계단은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제 6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위험물이 침윤될 위험이 있는 부분을 아스팔트 기타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할 수 있다.

6.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지붕은 석면판·금속판 기타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제 2류의 위험물(유황분·금속분A·금속분B을 제외한다)·생석회 또는 별표 2의 제 6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지붕을 불연재료가 아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7.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망이든 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적당하게 경사를 지게하고 그 최저부에 저류설비를 하여야 한다.

10.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데 필요한 채광·조명·환기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11.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체류할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12. 옥외에서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그 바로 아래의 지면의 주변에 높이 0.15미터 이상의 턱

을 설치하고, 그 바닥을 콘크리트 기타 불침윤재료로 경사지게 덮고, 그 최저부에 저류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별표 2의 제4류의 위험물(물에 용해하는 성질의 것을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당해 저류설비와 유분리시설을 하여야 한다.

13.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기타 설비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또는 비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에 위험물의 누출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따라 온도변화가 생기는 설비에는 온도 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가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에 따라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내부부령이 정하는 안전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7. 전기설비는 전기공작물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8.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그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19.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생석회 또는 별표 2의 제6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정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 가. 옥외에 설치하는 탱크의 구조 및 설비는 제55조 제4호 내지 제12호, 제16호, 제17호 및 제20호에 제기한 옥외탱크 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의 예에 의한다.
 - 나. 옥내에 설치하는 탱크의 구조 및 설비는 제56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12호 및 제14호에 제기한 옥내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의 예에 의한다.
- 다. 지하에 설치하는 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제57조(제5호를 제외한다)에 제기한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와 예에 의한다.
21.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급수관·도관 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2. 전동기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펌프·발브나 손잡이 등은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3.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을 취급하는 설비는 온·수온·동·마그네슘 또는 온·수온을 성분으로하는 합금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24.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방지를 위하여 불연성가스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위험물의 저장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당해건물의벽, 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경우	좌란에게기한 이외의 경우
지정수량의 5배 미만		0.5미터 이상
지정수량의 5배 이상 10배 미만	1미터 이상	1.5미터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20배 미만	2미터 이상	3미터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이상 50배 미만	3미터 이상	5미터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이상 200배 미만	5미터 이상	10미터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	10미터 이상	15미터 이상

제2편 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54조 (옥내저장소의 기준)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저장소 중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옥내저장소의 위치는 제53조 제1호에 제기한 제조소의 위치의 예에 의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20배 미만의 별표 2의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를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와 생석회 또는 별표 2의 제6류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 있어서 “저장창고”라 한다)의 주위에는 그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제기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20배 미만의 별표 2의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를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와 생석회 또는 별표 2의 제6류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의 공지의 너비와 2이상의 옥내저장소를 인접하여 설치할 경우의 그 저장소 상호간의 거리는 내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축할 수 있다.
3. 옥내저장소에는 내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옥내저장소가 있는 뜻을 표시한 표지 및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기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저장창고는 단층건물을 전용하고 그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다만, 울충위험물 또는 별표 2의 제 6류의 각종 위험물의 저장창고는 단층건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1개의 저장창고의 건축면적은 150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50평방미터 이상마다 불연재료를 사용한 벽으로 완전히 구획하여 동류의 위험물만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 또는 울충위험물만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저장창고의 건축면적을 1,000평방미터까지 확장할 수 있다.
6. 저장창고의 벽·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석가래는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다만, 울충위험물 또는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의 갑종위험물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외벽·기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만들 수 있고, 별표 2의 제 6류의 위험물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위험물로 인하여 침윤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아스팔트 기타 부식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할 수 있다.
7. 저장창고의 지붕은 석면판·금속판 기타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하며, 반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별표 2의 제 2류위험물(유황분·금속 A 및 금속분B를 제외한다)·생식회 또는 동표의 제 6류의 위험물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으며, 셀룰로이드류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당해 저장창고안의 온도를 적당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난연성의 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만든 반자를 설치할 수 있다.
8. 저장창고의 창 및 출입구는 갑종방화문 또는 울충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 저장창고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망이 든 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별표 2 중 알칼리금속의 피산화물·금속분A 금속분B·제 3류위험물·제 4류의 갑종위험물 또는 제 6류의 위험물의 저장창고의 바닥은 바닥면에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1. 액체의 위험물 저장창고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적당하게 경사를 지게 하고 그 최저부에 저류설비를 하여야 한다.
12. 저장창고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채광 및 환기설비를 하고, 별표 2의 제 4류의 갑종위험물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내부에 체류한 증기를 지붕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13. 전기설비는 제53조 제17호에 규정된 제조소의 전기설비의 예에 의한다.
14.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의 저장창고(생식회 및 별표 2의 제 6류의 위험물의 저장창고를 제외

한다)에는 유효한 피뢰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위의 상황에 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셀룰로이드류의 저장창고는 통풍장치·냉방장치 등의 설비를 하여 당해 저장창고안의 온도가 셀룰로이드류의 발화점에 달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정수량의 20배 미만의 위험물의 옥내저장소 또는 알칼리금속 이외의 과산화물 중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옥내저장소에 관하여는 제 1항에 개기한 기준에 대한 특례를 내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1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저장소 중 옥외 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는 제53조 제 1호에 규정된 제조소의 위치의 예에 의한다.
2.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생식회 또는 별표 2의 제 6류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의 공지의 너비와 2개 이상의 옥외탱크 저장소를 인접하여 설치할 경우에 그 저장소 상호간의 거리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축할 수 있다.

위험물의 저장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미만	3미터 이상
지정수량의 500배 이상 1,000배 미만	5 "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 2,000배 미만	9 "
지정수량의 2,000배 이상 3,000배 미만	12 "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 4,000배 미만	15 "
지정수량의 4,000배 이상	당해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횡령의 것은 가로 길이) 또는 높이의 수치중 가장 큰 것과 대등한 거리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5미터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3. 옥외탱크저장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옥외탱크저장소"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 및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이하 “옥외 저장탱크”라 한다)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 판으로 틀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하되,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 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압력탱크 이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충수 시험(물 이외의 적당한 액체를 충전하는 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고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옥외저장탱크는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동 및 풍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지주(별표 2의 제 6류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지주를 제외한다)는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6. 옥외저장탱크는 위험물의 폭발등으로 탱크안의 압력이 이상 상승할 경우에는 내부의 가스 또는 증기를 상부로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7. 옥외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8.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안전장치를, 압력탱크 이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통기관을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9.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급유호오스 또는 급유관과 결합할 수 있고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에는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라는 뜻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펌프 및 이에 부속되는 전동기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기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펌프설비의 주위에는 너비 3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한 경우 기타 내부부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펌프설비와 옥외저장탱크와의 사이는 당해 옥외 저장탱크 주위의 공지너비의 3분의 1 이상의 거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 펌프 및 이에 부속하는 전동기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기타시설(이하 “펌프실”이라 한다)의 벽·기둥·바닥 및 보·석가래는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제 6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위험물에 의하여 침윤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아스팔트 기타 부식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할 수 있다.

라. 펌프실의 지붕은 석면판·금속판 기타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제 6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마. 펌프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감증방화문 또는 울충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설비에는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라는 뜻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옥외저장탱크의 개폐발보는 늦최로 만들고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은 탱크의 측면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저면판에 설치할 수 있다.

14. 옥외저장탱크의 배관은 금속관·도관등 내연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5. 액체의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옥외저장탱크의 배관은 진동등에 의하여 당해 배관과 탱크와의 결합부분에 손상에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6.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옥외저장탱크의 설비는 온·수온·동·마그네슘 또는 온·수온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하는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17.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 옥외저장탱크에는 냉각장치 또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보냉장치”라 한다) 및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불연성 가스를 봉입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8. 전기설비는 제 53조 제 17호에 규정된 제조소의 전기설비의 예에 의한다.

19.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 저장소(생석회 또는 별표 2의 제 6류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는 유효한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위의 상황에 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별표 2의 제 4류 위험물의 옥외 저장탱크의 주위에는 위험물이 새는 경우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유제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1. 카바이트·인화석회 또는 생석회의 옥외저장탱크에는 방수성의 불연재로 만든 피복설비를 하여야 한다.
22. 이황산탄소의 옥외저장탱크는 두께 0.2미터 이상의 벽과 바닥이 새지 아니하는 철근콘크리트의 수조에 넣어 물속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6조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저장소 중 옥내탱크저장소(제2항에 정한 것을 제외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탱크(이하 “옥내저장탱크”라 한다)는 단층건축물의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또는 1개의 탱크전용실내에 옥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할 경우의 탱크 상호간의 사이에는 0.5미터 이상의 간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3. 옥내탱크저장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옥내탱크저장소”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 및 기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1개의 옥내탱크저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의 용량과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은 지정수량의 40배 미만으로 한다.
5. 옥내저장탱크의 구조는 제55조 제4호에 규정된 옥외저장탱크의 구조의 예에 의한다.
6. 옥내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7.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안전장치를 압력탱크 이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통기관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8. 액체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9. 액체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의 주입구는 제55조 제10호에 규정된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의 예에 의한다.
10. 옥내저장탱크의 개폐발브는 누설로 만들고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옥내저장탱크의 배수관은 제55조 제13호에 규정된 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의 예에 의한다.
12. 옥내저장탱크의 배관은 금속관·도관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3. 액체의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옥내저장탱크의 배관은 제55조 제15호에 규정된 옥외저장탱크의 배관의 예에 의한다.

14.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옥내저장탱크의 설비 및 장치는 제55조 제16호 및 제17호에 규정된 옥외저장탱크의 설비 및 장치의 예에 의한다.

15. 탱크전용실은 벽·기둥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석가래를 불연재로 만들어야 한다. 다만, 을종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외벽·기둥 및 바닥을 불연재로 만들 수 있고, 별표 2의 제6류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위험물에 의하여 침윤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아스팔트 기타 부식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할 수 있다.

16. 탱크전용실은 지붕을 불연재로 만들어야 하며, 반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7. 탱크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18. 탱크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망이 든 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19. 액체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적당하게 경사를 지게하고 그 최저부에 서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0. 탱크전용실의 출입구의 턱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1. 탱크전용실의 채광설비·환기설비 및 증기를 방출하는 설비는 제54조 제1항에 제12호에 규정된 옥내저장소의 채광·환기 및 증기방출설비의 예에 의한다.

22. 탱크전용실의 전기설비는 제53조 제17호에 규정된 제조소의 전기설비의 예에 의한다.

② 별표 2의 제2류의 위험물(유황분·금속분A 및 금속분B를 제외한다)과 생석회 및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의 별표 2의 제4류의 위험물 또는 동표의 제6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탱크저장소(탱크전용실을 단층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13호·제18호·제19호·제21호 및 제22호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액체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의 주입구의 부분에는 그 탱크에 들어있는 위험물의 양을 알아볼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탱크전용실은 벽·기둥·바닥과 보 및 석가래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제6류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에 있어

서는 위험물에 의하여 침윤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아스팔트 기타 부식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할 수 있다.

4. 탱크전용실은 그 건축물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붕을 불연재로 만들어야 하며, 반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탱크전용실에는 창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석회 또는 별표 2의 제 6류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이 있는 창을 설치할 수 있다.
6. 탱크전용실의 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석회 또는 별표 2의 제 6류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다.
7. 탱크전용실의 환기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석회 또는 별표 2의 제 6류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액체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은 그 옥내저장탱크에서 새어나온 위험물이 탱크전용실 이외의 부분에 유출되지 못하게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57조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1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소 중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탱크(이하 "지하저장탱크"라 한다)는 지하에 설치된 탱크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제 4류의 위험물의 지하저장탱크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당해 탱크를 탱크실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탱크가 지하철 또는 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미터 이내의 장소 또는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금지된 장소에 설치되지 아니할 것.
 - 나. 탱크의 외면이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되어 있을 것.
 - 다. 탱크가 그 수평투영의 세로 및 가로보다 각각 0.6미터 이상 크게 만들어지고 두께 0.3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의 두께로 덮여져 있을 것.
 - 라. 두께에 가해지는 중량이 직접 그 탱크에 가해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될 것.
 - 마. 탱크가 견고한 기초위에 고정되어 있을 것.

2.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실의 내측벽의 사이는 0.2미터 이상의 간격을 보유하고 그 탱크의 주변에는 건조된 모래로 채워야 한다.

3. 지하저장탱크는 그 윗 부분이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깊이가 되도록 매설하여야 한다.

4. 지하저장탱크를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그 2개 이상의 지하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미만일 때에는 그 상호간의 간격을 0.5미터까지 감할 수 있다.
5. 지하탱크저장소에는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지하탱크저장소"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 및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지하저장탱크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고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사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를 제외한 탱크에 있어서는 매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0.7킬로그램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행하는 수압시험에서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지하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8.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안전장치를, 압력탱크를 제외한 탱크에 있어서는 통기관을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9. 액체위험물의 지하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액체위험물의 지하저장탱크의 주입구는 옥외에 설치하되 제55조 제 10호에 규정된 옥외 저장탱크의 주입구의 예에 의한다.
11. 지하저장탱크의 배관은 당해 탱크의 윗부분에 장치하여야 한다.
12. 지하저장탱크에 장치된 배관 중 지하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상부의 지면에 가하여지는 중량이 그 배관 부분에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연결부(통기관의 연결부를 제외한다)에서 위험물이 새는 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그 연결부분을 뚜껑이 있는 콘크리트조의 실에 넣어야 한다.
13. 지하저장탱크의 배관은 금속관·도관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4. 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는 탱크로부터 액체의 위험물이 새는 것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4개소 이상 적당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5. 탱크실의 벽 및 바닥은 두께 0.3미터 이상의 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와 적당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하며 뚜껑은 두께 0.3미터 이상의 방수조치를 한 철근콘크리트조로 하여야 한다.

제58조 (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소 중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간이탱크(이하 “간이저장탱크”라 한다)는 옥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전용실안에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용실의 구조가 제56조 제1항 제15호 및 제16호에 규정된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의 구조의 예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을 것.

나. 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을 것.

다. 전용실의 바닥이 위험물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적당히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처저부에 지류설비가 되어 있을 것.

라. 전용실의 채광·환기 및 증기방출의 설비가 제54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옥내저장소의 예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을 것.

2. 1개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는 3개 이내로 하며, 동일품질의 위험물의 간이저장탱크를 2개 이상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간이탱크저장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간이탱크저장소가 있는 뜻을 표시한 표지 및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간이저장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면 또는 가설대에 고정시키고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위에 너비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하며, 전용실안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 탱크와 전용실의 벽과의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간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5. 간이저장탱크의 용량은 600리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6.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고, 매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0.7킬로그램의 압력으로 10분간 행하는 수압시험에서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간이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8. 간이저장탱크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간이저장탱크에 주유설비를 할 경우에는 제6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의 예에 의한다.

제59조 (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소 중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동탱크저장소는 방화상 안전한 옥외의 장소 또는 벽·바닥·보·석가래 및 지붕을 내화구조나 불연재로 한 건축물의 단층차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이하 “이동저장탱크”라 한다)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고,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를 제외한 탱크에 있어서는 매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0.7킬로그램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행하는 수압시험에서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세탈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이동저장탱크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되, 불연성가스를 봉입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산화프로필렌의 이동저장탱크 및 보냉장치가 있는 아세탈데히드의 이동저장탱크에 있어서는 매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0.7킬로그램의 압력보냉장치가 없는 아세탈데히드의 이동저장탱크에 있어서는 매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1.3킬로그램의 압력으로 10분간 행하는 수압시험에서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이동저장탱크의 용량은 20,000리터 이하로 하고, 그 내부에 4,000리터마다 안전한 칸막이를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를 운행하는 이동저장탱크의 용량은 34,000리터 까지로 할 수 있다.

5. 제4호의 칸막이로 된 각 부분에는 맨홀 및 내무부령이 정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두께 1.6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으로 만든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이동저장탱크의 맨홀 및 주입구의 두께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으로 만들어야 한다.

7. 맨홀·주입구·완전장치등(이하 이 조에서 “부속장치”라 한다)이 탱크의 상부에 돌출되어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있어서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부속 장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이동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9. 이동저장탱크의 하부에 배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배출구에 밀발브를 설치하고 비상시에 즉시 그 밀발브를 폐쇄할 수 있는 수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인 위험물의 이동저장탱크의 배출구 또는 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의 배출구에 설치하는 밀발브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제9호의 수동폐쇄장치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레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밀발브를 설치하는 이동저장탱크에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12. 이동저장탱크의 배관의 선단부에는 개폐발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이동저장탱크의 설비는 제55조 제16호에 규정된 옥외저장탱크의 설비의 예에 의한다.
 14. 액체위험물의 이동저장탱크의 주유호오스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주입구와 결합할 수 있는 금속구를 사용하되 그 결합금속구(과산화수소 또는 별표 2의 제 6류 위험물의 이동저장탱크의 것을 제외한다)는 낫쇠 기타 마찰동에 의하여 불꽃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15. 휘발유·벤젠 기타 정전기에 의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액체위험물의 이동저장탱크 중 계량봉으로 그 위험물의 양을 계량하는 것에 대하여는 계량시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16. 이동저장탱크에는 보기 쉬운 곳에 그 탱크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 및 최대수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제10호의 레바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직근에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아루미늄알킬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이동탱크저장소에 관하여는 제 1항에 계기한 기준을 초과하는 특례를 내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 (옥외저장소의 기준) 법 제1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소 중 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저장소의 위치는 제53조 제 1호에 규정된 제조소의 위치의 예에 의한다.
2. 옥외저장소는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철조망 등을 설치하여 명확하게 그 장소를 구획하여야 한다.
4. 제 3호에 규정된 철조망 등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계기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제 6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지의 너비를 감할 수 있다.

위험물의 지정최대수량	공지의너비
저장수량의 10배 미만	3미터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20배 미만	6 "
지정수량의 20배 이상 50배 미만	10 "
저장수량의 50배 이상 200배 미만	20 "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	30 "

5. 옥외저장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옥외저장소"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 및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1조 (선박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1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소 중 선박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탱크의 두께는 3,2밀리미터 이상이 강철판으로 틀이 없도록 제작하고 매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0,7킬로 그램의 압력으로 10분간 행하는 수압시험에서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탱크는 20,000리터마다 완전한 칸을 막고 각실마다 1개 이상의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제 4류의 위험물 중 인화점이 섭씨130도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60,000 리터마다 완전한 칸을 막을 수 있다.
3. 탱크의 맨홀설치 및 방청도장에 관하여는 제59조 제 1항 제 6호 내지 제 8호의 예에 의한다.
4. 선창에 탱크를 장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 및 상하에 0,5미터의 이상의 공간을 두어야 한다.
5. 탱크에는 적당한 통기관을 설치하고 가는눈의 동선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6. 선창내의 탱크를 장치하는 장소는 불연재료로 만들거나 피복하는 등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7. 탱크를 장치한 선창은 기계실 기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구별하여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8. 탱크를 장치한 선창내의 펌프실 기타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에는 유효한 환기설비를 하고 가는눈의 동선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9. 탱크를 장치한 선창내의 전기공작물은 제53조 제 17호에 규정된 제조소의 전기설비의 예에 의한다.
10. 탱크를 장치한 선창내에는 새어나온 유류를 배제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 3관 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62조 (주유취급소의 기준) ① 법 제1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소 중 옥외에 설치하는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유취급소에는 자동차 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이하 “고정주유설비”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그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기 위한 너비 15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2. 제 1호의 공지의 지면은 주위의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3. 제 1호의 공지에는 새어나온 기름 기타의 액체가 그 공지 외의 부분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및 저류·유분리장치를 하여야 한다.
4. 주유취급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주유취급소”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 및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기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주유취급소에는 용량 12,000리터 이하의 전용탱크를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방화구역 외에 구역에 있어서는 지상의 고정주유설비에 접접하는 용량 600리터 이하의 간이탱크를 그 취급하는 석유류의 각 품목별로 1개씩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6. 제 5호의 전용탱크 또는 간이탱크를 설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전용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제 57조(제 5호 및 제 10호의 규정중 게시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에 규정된 지하탱크저장소의 지하저장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예에 의하고, 간이탱크의 구조 및 설비는 제 58조(제 1호 내지 제 3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간이탱크저장소의 간이저장탱크의 구조 및 설비의 예에 의한다.
7. 고정주유설비는 유류가 셀 우려가 없고 또한 화재 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하고, 주유관의 길이는(선단의 개폐발브를 포함한다) 5미터 이내로 하되, 그 선단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8. 고정주유설비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4미터 이상, 대저경계선 및 건축물의 벽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간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취급소의 건축물의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부터의 간격은 1미터로 할 수 있다.
9. 주유취급소에는 사무실 기타 취급소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건축물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석가래 및 지붕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 하고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사무실 등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망이 든 유리로 하여야 한다.

12. 제 10호의 건축물 중 사무실 기타 화기를 사용하는 것에는 새어나온 유류의 증기가 그 내부에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3.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측면을 제외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담이나 벽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유취급소의 근처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담 또는 벽을 방화상 안전한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14. 전기설비는 제 53조 제 17호에 규정된 제조소의 전기설비의 예에 의한다.

② 주유취급소를 건축물안에 설치할 경우의 그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제 1항(제 10호를 제외한다)에 규정한 것 외에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주유취급소는 단층건물 또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되, 당해 건축물 중 주유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의 벽·기둥·바닥·보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건축물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 하여야 한다.

2. 당해 건축물 중 주유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에는 2개 방면은 통풍을 위하여 벽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당해 건축물 중 주유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에는 그 상층 및 하층으로 통하는 계단 및 통로 기타 유류의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구멍 또는 구멍이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주유취급소의 상호간의 거리는 1,000미터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그 거리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 3항의 거리는 주유소 상호의 직선거리로 측정한다.

⑤ 비행장에서 항공기에 주유하기 위한 주유취급소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유취급소에 관하여는 제 1항 내지 제 4항의 기준에 대한 특례를 내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 63조 (판매취급소의 기준) 법 제 1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취급소 중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판매취급소는 단층건물 또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판매취급소에는 판매하고자 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 이상 5배 미만의 저장설비를 하여야 한다.

3. 제 2호의 저장설비는 제 54조 제 1항 및 제 57조의 예에 의한다.

4. 판매취급소에는 내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판매취급소”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 및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분의 벽·보·반자는 내화구조로 하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곳과 다른 부분과의 사이에는 내화구조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분위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 하여야 한다.
7.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분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감충방화문 또는 울충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8.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분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망이 든 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판매취급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분의 전기설비는 제53조 제17호에 규정된 제조소의 전기설비의 예에 의한다.
10.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바닥면적은 6평방미터 이상 10평방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나. 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 다. 바닥에는 적당한 경사를 두어 저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 라. 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 감충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마. 출입구에는 바닥으로부터 0.1미터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바. 내부에 채류한 증기를 지붕 위로 방출하는 유효한 환기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64조 (일반취급소의 기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소 중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제53조의 예에 의한다.

제4관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의 기준

제65조 (소화설비의 기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조소·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옥외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 중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6에 기재한 제1종 내지 제5종의 소화설비 중 당해 소방대상물의 구분에 의한 적응소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2. 제조소·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옥외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 중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소화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내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6에 기재한 제4종 및 제5종의 소화설비 중 당해 소방대상물의 구분에 의한 적응소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외에 제조소 등에 있어서는 내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6에 기재한 제5종의 소화설비 중 당해 소방대상물의 구분에 의한 적응소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66조 (경보설비의 기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제조소 등이 갖추어야 할 경보설비는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로서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이를 설치하되, 내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기타의 경보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4절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제67조 (공통기준)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공통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조소 등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수량 이상 또는 품명 이외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조소 등에 있어서는 함부로 화기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조소 등에는 직원 이외의 자가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제조소 등에 있어서는 항시 정비 및 청소에 노력하고 함부로 불필요한 가연물을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위험물의 찌꺼기 등은 1일 1회 이상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한 장소에서 폐기하거나 기타의 안전한 방법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6.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나 설비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하여야 한다.
7. 위험물은 온도계·습도계 기타의 계기로 감시하고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온도 또는 습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또는 비산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변질, 이물의 혼입 등으로 당해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기계·기구·용기 등을 수리할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위험물을 안전하게 제거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11.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할 경우에는 그 용기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응한 것으로하고, 파손, 부식·틈 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위험물이 수납된 용기를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함부로 전도·추락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가연성의 액체·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결시켜야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등을 사용하거나 신발을 신어서는 아니된다.
14. 위험물을 보호액속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보호액에서 노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8조 (유별공통기준)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 중 위험물의 유별로 적용할 공통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별표 2의 제1류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과열·충격·마찰 등을 피하여야 하며,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2. 별표 2의 제2류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하며, 금속분 A 및 금속분 B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3. 별표 2의 제3류의 위험물은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4. 별표 2의 제4류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을 피하여야 하며, 증기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5. 별표 2의 제5류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또는 마찰등을 피하여야 한다.
6. 별표 2의 제6류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을 피하여야 한다.

제69조 (저장의 기준) ①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에 관한 기준은 제67조 및 제68조에 규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별표 2에 제기한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이 2 이상 있는 저장소에 있어서는 동일실)에 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을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에 수납하고 품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되, 건축물의 내벽으로부터 0.5 미터 이상, 위험물의 품명별마다 0.5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라도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위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위험이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할 때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하고, 상호간 0.3 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지하저장탱크 또는 간이저장탱크의 계량구는 계량할 때 이외에는 폐쇄하여야 한다.
5.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의 주된 발브(액체의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하여 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발브중 탱크의 직근에 있는 것을 말한다)은 위험물을 이송할 때 이외에는 폐쇄하여야 한다.
6.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방유제가 있는 경우에는 평상시 그 배수구를 폐쇄하여 두고, 그 방유제의 내부에 체유하거나 체수한 것은 지체없이 배출하여야 한다.
7. 이동저장탱크 및 그 안전장치와 기타의 부속배관은 결합불량·변형 또는 주유호오스의 파손 등으로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탱크의 밑 발브는 사용시 이외에는 완전히 폐쇄하여야 한다.
8. 피전인자동차에 고정된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할 때에는 그 피전인자동차에 전인자동차를 결합하여 두어야 한다.
9.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완공검사필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10. 알루미늄알킬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이동탱크저장소에는 긴급시의 연락처 기타 응급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1. 위험물을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에 수납하고 품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되, 품명별마다 0.5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② 에틸에테르, 아세탈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저장에 관한 기준은 제67조 및 제68조와 제1항에 규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아세탈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탱크안에 불

연성가스를 봉입하여야 한다.

2. 옥외저장탱크 또는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이외에 탱크에 저장하는 에틸에테르·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온도는 에틸에테르 또는 산화프로필렌에 있어서는 섭씨 30도 이하로, 아세트알데히드에 있어서는 섭씨 15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옥외저장탱크 또는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온도는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4.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온도는 당해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5.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온도는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70조 (취급의 기준) ①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기준은 제67조 및 제68조에 규정한 것 외에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의 제조과정에서의 취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증류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내부압력의 변동 등에 의하여 액체 또는 증기가 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추출공정에 있어서는 추출관의 내부압력이 이상하게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조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가열 또는 전조시켜야 한다.
4. 분쇄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부유하고 있거나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기계·기구 등에 부착되어 있는 상태로 그 기계·기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험물을 옮겨 담는 작업에 있어서의 취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을 용기에 담는 경우에는 내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을 옮겨 담을 경우에는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④ 위험물을 소비하는 작업에 있어서의 취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분사도장작업은 방화상 유효한 격벽 등으로 구획한 안전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열처리작업은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염색 또는 세정작업은 가연성증기의 환기를 완전히 하고 폐액을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마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나의 역화를 방지하고 석유류가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험물을 폐기하는 작업에 있어서의 취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각할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감시원의 감시하에 하되, 연소 또는 폭발에 의하여 타인에게 위해나 손해를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매몰할 경우에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은 해중 또는 수중에 유출시키거나 투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타인에게 위해나 손해를 줄 우려가 없을 때 또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 또는 이동탱크 저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취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유취급소의 위험물의 취급기준

가.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고정주유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다. 자동차 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주유취급소의 공지밖에 나온채로 주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주유취급소의 전용탱크 또는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그 탱크에 접결하는 고정주유설비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자동차 등을 그 탱크의 주입구에 접근시켜서는 아니된다.

마. 유분리장치에 고인 기름은 넘지 아니하도록 수시 퍼내어야 한다.

바. 고정주유설비에는 그 주유설비에 접결하는 전용탱크 또는 간이탱크의 배관 이외의 것으로 위험물을 주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자동차 등을 그 주유취급소 안에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아. 자동차 등의 세차를 하는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의 세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판매취급소의 위험물의 취급기준

가. 판매취급소에서는 염소산염류·유황·도로료 기타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배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3조 제10호에 규정된 실에서 배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판매취급소에서는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다. 전(나)의 경우 위험물취급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가 위험물을 취급한 때에는 허가청은 판매취급소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의 취급기준

가.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

는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주입할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입구에 이동저장탱크의 급유호오스를 견고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나.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의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다. 휘발유·벤젠 기타 정전기에 의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액체의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의 주입관으로 주입할 경우에는 주입관의 선단을 이동저장탱크의 저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라.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또는 등유나 경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휘발유를 주입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전기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절 운반 및 이송의 기준

제71조 (운반용기의 기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용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운반용기의 재질은 강철판·알루미늄판·합석·유리·도기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운반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 (적재방법)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적재방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은 제71조의 운반용기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생석회 또는 덩어리로 된 유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제조소 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와 이를 포장한 외부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수량 등을 표시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4. 위험물은 운반도중 그 위험물이 전락하거나,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추락 또는 전도하거나, 그 용기의 포장이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5. 운반용기는 수납구를 위로 향하게 적재하여야 한다.
6.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에 대하여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광의 직사, 우수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유효한 덮개를 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7. 위험물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 또는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과 함께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3조 (운반방법)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방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 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현저하게 마찰 또는 동요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2.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3.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 환적·휴식 고장 등으로 차량을 일시 정차시킬 때에는 안전한 장소를 택하고 또한 운반하는 위험물 '의 보안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제65조에 규정하는 소화설비중 그 위험물에 적용한 것을 비치하여야 한다.
5. 위험물의 운반도중 위험물이 현저하게 새는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하고 가까운 소방관서 기타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4조 (이송의 기준)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에 넣을 때 또는 이동저장탱크에서 났 때에는 반드시 위험물 취급주입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위험물을 이송하는 자는 이동탱크 저장소를 휴식·고장 등으로 일시 정지시킬 때에는 안전한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을 이송하는 자는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이 현저하게 새는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하고 가까운 소방관서 기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험물을 이송하는 자는 알루미늄알킬류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송의 경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관할소방관서에 송부하고, 그 서면의 사본을 휴대하게 한 후, 그 서면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이송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서면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절 위험물 시설안전원 및 자위소방 조직등

제75조 (위험물 시설안전원을 두어야 할 제조소등)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시설 안전원을 두어야 할 제조소 등은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중 다음 각호에 기재한 것을 제외한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로 한다.

1. 보일러·바나 기타 이에 준하는 장치로써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2. 차량에 고정된 탱크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위험물을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3. 철제드럼 기타의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은 일반취급소
4. 압유장치·윤활유 순환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장치로써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5.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6. 총포화약류 단속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제76조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 등)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에 관한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 등은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외저장소 중 다음에 계기한 것을 제외한 제조소 등으로 한다.

1. 광산안보법에 의한 보안규정을 정하고 있는 제조소 등
2. 지정수량의 3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그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은 곳.

제77조 (자위소방조직의 편성) ①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로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시설”이라 한다)는 다음 표의 사업소 구분에 따라 동표의 화학소방자동차 및 그 조직원인을 가지고 각각 편성된 자위소방조직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또는 기타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 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편성을 달리할 수 있다.

사업소의 구분	화학소방자동차의대수	조직원인원수
지정시설에 있어서 취급하는 별표 2의 제4류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의 사업소	1대	5인
지정시설에 있어서 취급하는 별표 2의 제4류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2대	10인
지정시설에 있어서 취급하는 별표 2의 제4류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3대	15인
지정시설에 있어서 취급하는 별표 2의 제4류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대	20인

- ② 제1항의 화학소방자동차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화학소방자동차에는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와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장 국고보조

제78조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액) ①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용 기계기구

소방펌프자동차·수인동력펌프·소형동력펌프·소방정

2. 설비

가. 소방전용 전화장치·저수조

나. 소방관서용 청사

② 제1항의 기계·기구 및 설비의 규격과 종류별 국고보조 기준액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고보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2항의 기준액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79조 (보조의 신청) 시장·군수는 시·군에서 구입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소방시설·설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국고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에게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도지사는 필요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80조 (보조금교부의 취소·정지 등) ① 내무부장관은 시·군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취소·정지하거나 그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소방시설·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구입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때
2. 보조금을 보조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거나 보조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보조금의 교부를 취소·정지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에게 의견진술이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1조 (감독) 내무부장관은 보조금을 받은 시·군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직원으로 하여금 그 보조한 소방시설·설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82조 (기준의 특례) ① 별표 1의 (12)항(가)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2장 제2절 제2관에 규정한 소화설비의 기준에 대한 특례를 내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제2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화재의 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하게 적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저지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장 제2절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3조 (제1류 위험물 등의 특례) 별표2의 제1류 위험물·제2류 위험물·초산에스테르류 및 니트로화합물중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3조(제64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호·제4호 내지 제7호·제9호·제20호·제21호, 제54조 제1항 제2호·제4호 내지 제7호·제12호·제65조 제3호 및 제70조 제5항 제3호에 규정한 기준에 대한 특례를 내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84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법령) 대통령령 제5,097호 외용소방대원등 재해보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③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제기한 공동주택·여관 및 하숙으로서 연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 660평방미터 미만인 것과 동항 제2호에 제기한 사업장으로서 200평방미터 이상 660평방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이 영 시행전에 건축허가·인가 또는 확인을 한 것은 법 제9조 제1

[별표1]

항	호	소방대상물 또는 용도	비 고
(1)	가	공연장=영화, 연극, 음악, 무용 기타 예술을 공중의관람 또는 청문에 공하는 장소 및 시설을 갖춘 건축물 관람장=스포츠·진귀물을 공중이 관람할 수 있는 객석을 갖춘 시설 및 건축물	극장, 영화관, 연예장등 각종경기장·체육관·경마장·서커스·가건물등
	나	집회장=회의·사교등을 목적으로 공중이 집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건축물	공민관·시민홀·노동회관·예식장·공회당
(2)	가	카바레=공중에게 댄스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건축물	나이트클럽·바·비어홀·싸롱등
	나	유기장=공중이 오락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건축물 댄스홀=공중이 댄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건축물	바둑집·장기집·마작집·당구장·탁구장·보우링장 댄스교습소·실내골프장
(3)	가	유흥음식점=유흥에 종사하는 자 또는 집대부를 두고 음식영업을 행하는 건축물	요리점·요정등
	나	음식점=유흥음식점에 해당하지 아니한 음식영업을 하는 건축물	식당·다방·다과점·음악감상실·스탠드바·주점등
(4)	가	백화점=동일건물내에서 물품의 매매교환을 행하는 장소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시 장=일정한 구획된 지역에서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여서 물품의 매매교환을 행하는 장소	농업협동조합, 각종공제조합의 판매장·마켓·전시장 등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 한 것으로 본다.

④ (방염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12조 및 이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는 별표1의 (1)항·(2)항·(4)항·(5)항(가)호·(6)항 및 (12)항(가)호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이외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1978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방염처리를 하여야 한다.

⑤ (소방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1973년 12월 29일 소방법 시행령개정령 시행당시의 소방대상물로서 제17조 제1항 제6호 해당하는 특수장소에 대한 스프링크라 설비는 1978년 6월 30일 까지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자동화재속보 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제28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중 별표1의 (5)항(가)호 및 (6)항(가)호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⑦ (위험물제조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1973년 12월 29일 소방법시행령개정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제조소 등의 공지의 너비 및 주유소간의 거리의 기준에 대하여는 제53조 내지 제55조·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⑧ (판매취급소의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 이 영 시행당시 판매취급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위험물의 안전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5)	가	여 관=한국식 또는 서양식의 구조 및 설비로서 보통의 시설을 하여 숙박료를 받아 사람을 숙박하게 하는 건축물 호 텔=한국식 또는 서양식의 구조 및 설비로서 고급의 시설을 하여 숙박료를 받아 사람을 숙박하게 하는 건축물 여인숙=숙박하는 장소를 두고 다수인이 공용하게 하는 구조 및 설비로서 숙박료를 받아 사람을 숙박하게 하는 건축물	
	나	기숙사=관공서·학교·회사 등에서 종업원·학생 등을 집단적으로 거주시키기 위한 시설 하 숙=숙박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1월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숙박료를 받고 5인이상의 사람을 숙박시키는 건축물(가정하숙 제외) 공동주택=다수인의 세대가 거주하는 시설로서 복도·계단 등을 공용하는 건축물	아파트 등
(6)	가	병 원=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공중을 위한 의업 또는 치과의업을 행하는 장소중 환자 20명 이상의 수용시설이 있는 건축물 의 원=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공중을 위한 의업 또는 치과의업을 행하는 장소중 환자의 수용시설을 갖지 아니하거나 환자 19명 이하의 수용시설을 갖춘 건축물 조산원=조산원이 공중을 위한 조산업무(병원 또는 의원에서 행하는 것은 제외)를 행하는 장소로서 임부. 산부의 수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거나 9명이하의 수용시설을 갖춘 건축물	진료소·요양소 등 조산시설 등
	나	양로시설=노쇠자로서 신체상·정신상 기타 경제적 이유로 양호·보호를 요하는 자를 수용·보호하는 건축물	양로원·경로당·구호시설·경생시설 등
	다	아동복지시설=양육하기 곤란한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시설 및 건축물 유치원=육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 및 건축물 맹·농학교=맹자·농자에 대하여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기 위한 시설 및 건축물	육아보육시설·양호시설·정신박약아호보시설·맹농아보호시설·신체허약아 보호시설·지체부자유아 보호시설 등 모자보호시설·탁아시설·아동휴양시설·교호시설·소년직업보호시설 등
(7)		학 교=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차별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는 시설과 건축물	학관·학원 등
(8)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필요한 자료를 수집·보존하여 공중의 이용에 공하는 것과 역사·예술·산업·자연·과학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관·전시하여 공중의 관람에 공하는 시설 및 건축물	
(9)		공중목욕장=온수·냉수·해수·온천수 기타를 사용하여 공중으로 하여금 목욕 또는 수영을 하게 하는 시설 및 건축물	광천욕탕·한증탕·터키탕·사우나탕·실내풀장
(10)		정차장·선거=철도·차량·자동차·선박·항공기 등이 정차하는 시설 및 건축물 대합실=기차·자동차·항공기·선박의 여객의 대합에 공하여 지는 시설 및 건축물	터미널·선박·항공기의 발착장 등

(11)		사찰·교회=종교상의 예배를 하기 위하여 다수인이 집합하는 시설 및 건축물	교단사무소·예배소·교무소·종무소 등
(12)	가	공 장=기계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 물건을 제조·개조·가공·수리·포장 등을 하기 위하여 다수인이 근무하는 시설 또는 건축물	
	나	영화 및 텔레비촬영소=영화 또는 텔레비를 촬영하는 시설 및 건축물	방송시설 등
(13)	가	차고·주차장=주차하기 위한 시설 및 건축물	
	나	비행기격납고=비행기를 격납하는 창고	헬기격납고 등
(14)		창 고=물품의 멸실·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을 격납하는 시설 및 건축물	
(15)		사업장=국가 또는 단체나 개인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활동을 하는 일정한 시설 및 건축물(위의 각항에 열거된 것은 제외한다)	관공서·회사·은행·이발소·점포·화장장·오물처리장 등
(16)		복합건물 등=1개의 건축물에 위의 각항에 계기한 2 이상의 용도에 공하여지는 건축물	
(17)		중요문화재=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한 중요문화재 및 미술품	
(18)		아케이트=물품의 판매·교환을 행하는 점포로서 연장 50미터 이상 연속하여 설치된 시설 및 건축물	
(19)		산 림=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산림	
(20)		주 차=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차	

[별표 2]

위험물

유별	품 명	지정수량
제 1 류	염소산염류	킬로그램 50
	과염소산염류	50"
	과산화물	50"
	질산염류	1,000"
	과망간산염류	1,000"
제 2 류	황 린	20"
	황화린	50"
	적 린	50"
	유황(황)	100"
	금속분A	500"
	금속분B	1,000"
제 3 류	금속칼륨	5 "
	금속나트륨	5 "
	탄화칼슘(카바이트)	300"
	인화석회(인화칼슘)	300"
	생석회(산화칼슘)	500"
제 4 류	특수인화물	50리터
	제 1 석유류	100"
	초산에스테르류	200"

	의산(개미산)에스테르류	200"
	메틸에틸케톤	200"
	알코올류	200"
	피리딘	200"
	클로로벤젠	300"
	제 2 석유류	500"
	제 3 석유류	2,000"
	제 4 석유류	3,000"
제 5 류	동식물유류	3,000"
	질산에스테르류	10 "
	셀룰로이드류	150 "
제 6 류	니트로화합물	200 "
	발연질산	80 "
	발연황산	80 "
	크로로술폰산	80 "
	무수황산	80 "
	농황산	200 "
	농질산	200 "
	무수크롬산	"

1. “금속분A”라 함은 마그네슘 및 알루미늄의 분·박 및 리봉 (사진촬영용 기타에 사용되는 섬광분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금속분B”라 함은 마그네슘 및 알루미늄 이외의 금속분을 말한다.
2. “특수인화물”이라 함은 에테르·2 황화탄소 및 골로더온 기타 760밀리미터의 기압에 있어서 액체 (섭씨 20도에서 액상으로 되는것 또는 섭씨 20도 이상 40도 이하의 사이에서 액상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되는 것으로서 착화온도가 섭씨 100도 이하의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로서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의 것을 말한다.
3. “제 1석유류”·“제 2석유류”·“제 3석유류”·제 4 석유류”라 함은 각각 다음에 계기하는 물품 및 성상 (760밀리미터의 기압에 있어서의 성상을 말한다) 을 가지는 것은 말한다.
가. “제 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및 휘발유 기타 액체로서 인화점이 섭씨 21도미만인 것을 말한다.
나. “제 2석유류”라 함은 등유 및 경유 기타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 “제 3석유류”라 함은 중유 및 클레오소드유 기타 섭씨 20도에서 액상이 되는 것으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이상 200도 미만의 것을 말한다.
라. “제 4석유류”라 함은 기계유 및 시린더유 기타 섭씨 20도에서 액상이 되는 것으로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4. “알코올류”에는 무절유 및 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

5. “동식물유”라 함은 760밀리미터의 기압과 상온상 태 (섭씨 20도)에서 액체로 되는 동식물로서 불연성 용기에 수납밀전되고 또한 저장보관되어 있는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
6. “셀룰로이드류”라 함은 니트로셀룰로우스를 주재료 한 제품·반제품 및 부스러기를 말한다.
7. “니트로화합물”이라 함은 2초기 이상인 것을 말한다.
8. “농황산”이라 함은 비중 1.82이상인 것을 말하며 “농질산”이라 함은 비중 1.49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9. 도료류 기타 품명이 다른 물질을 혼합한 것에 속하는 위험물의 품명과 그 지정수량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비 고

1. “유지류” 및 “유포류”라 함은 동식물유가스며 배인 종이 또는 포와 이들의 제품을 말한다.
2. “부감사”라 함은 번데기 기름이 스며 배인 것을 말한다.

(별표 3)

유 별	품 명	수 량
제 1류	아염소산염류	10킬로그램
	취소산염류	15 "
	옥소산염류	20 "
	중크롬산염류	600 "
제 2류	유지류 및 유포류	100 "
	부감사	100 "
	가름찌꺼기	1,000 "
제 3류	금속리튬	5 "
	금속칼슘	50 "
	탄화알루미늄	60 "
	수소화물	60 "
제 4류	칼슘실리콘	200 "
	락카빠데	200 "
	고무풀	200 "
	제 1종 인화물	200 "
	나루탈렌	600 "
	송 지	600 "
	파라핀	600 "
	제 2종 인화물	600 "
제 5류	장 뇌	600 "
	니트로소화합물	40 "
	니니트로소펜타메틸렌비	40 "
	트라민	40 "
제 6류	나트륨아미드	40 "
	과염소산	30 "
	염화티오닐	80 "
	염화술포닐	80 "

3. “수소화물”이라 함은 알칼리 금속 및 알칼리토류 금속(베리륨 및 마그네슘을 제외한다)의 수소화물을 말한다.
4. “고무풀”이라 함은 생고무에 휘발유 기타 인화성 용제를 가공하여 불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5. “제 1종 인화물”이라 함은 상온에서 고체이고 또한 섭씨 30도 미만에서 가연성의 증기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6. “제 2종 인화물”이라 함은 상온에서 고체이고 또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에서 가연성의 증기를 발생하고 또는 연소열량이 매 그램당 8,000칼로리 이상인 것.
다. 섭씨 200도 이상에서 가연성의 증기를 발생하고 또한 연소 열량이 매 그램당 8,000칼로리 이상인 것으로서 용점이 섭씨 100도 미만인 것.
7. “니트로소화물”이라 함은 1의 벤젠액에 2 이상의 니트로소기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별표 4]

특수가연물

품명	수량
면화류	200 킬로그램
목모 및 대폐밥	400 "
넙마 및 종이조각	1,000 "
사 류	1,000 "

품명	수량
벗짚류	1,000 킬로그램
고무류	3,000 "
석탄 및 목탄	10,000 "
목재가공물 및 톱밥	10입방미터

비 고

1. "면화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면상섬유 및 마사원료를 말한다.
2. "사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실과 누에고치를 말한다.
3. "벗짚류"라 함은 마른 벗짚, 마른 목대기 또는 이들의 제품과 마른 풀을 말한다.
4. "고무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무제품·고무반제품·고무원료 및 고무조각을 말한다.

[별표 5]

소화기구별적응대상물

소 화 기 구 대 상 물		물사하는소화기 물사하는소화기 방	물사하는소화기 물사하는소화기 방	강화액용소화기 강화액용소화기 로	강화액용소화기 강화액용소화기 로	포말용소화기 포말용소화기 방	불연성가스방사 불연성가스방사	증발성액제를방사 증발성액제를방사	소화방사 소화방사 인산염류동등물	발사하기 기타의 것	자 동 확 산 액	물양동이 또는 수조	진 조 사	팽창진주암 팽창질석 또는
		인산염류동등물	인산염류동등물	인산염류동등물	인산염류동등물	인산염류동등물	인산염류동등물	인산염류동등물	인산염류동등물	인산염류동등물	인산염류동등물	인산염류동등물	인산염류동등물	인산염류동등물
대 상 물 의 구 분	건축물 기타 공작물	○	○	○	○	○			○		○	○		○
	전 기 설 비		○		○		○	○	○	○				
	제 1 류												○	
	위의 난 이외의 것	○	○	○	○	○			○		○	○	○	
	제 2 류	○	○	○	○	○			○		○	○	○	
	제 3 류												○	○
	금속나트륨·금속칼륨 위의 난 이외의 것												○	
	제 4 류									○			○	○
	알루미늄알킬류 위의 난 이외의 것				○	○	○	○	○	○	○		○	
	제 5 류	○	○	○	○						○	○	○	
	제 6 류		○		○	○	○	○	○	○	○		○	
	제 1 류	○	○	○	○	○	○	○	○		○	○	○	
	제 2 류	○	○	○	○	○			○		○	○	○	
	제 3 류												○	
	제 4 류			○	○	○	○	○	○	○	○		○	
	제 5 류	○	○	○	○						○	○	○	
	제 6 류		○		○	○	○	○	○	○	○		○	
특 수가 연 물		○	○	○	○	○			○		○	○	○	

비 고

1. ○표한 소화기와 대상물은 서로 적응함을 말한다.
2. "인산염류 동"이라 함은 인산염류·황산염류 기타 방염성이 있는 약제를 말한다.
3. "알루미늄알킬류"라 함은 알루미늄알킬 기타 공기에 접촉하여 발화하는 유기금속화합물을 말한다.

[별표 6]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적응소화설비

소화설비의 구분		대 상 물 의 구 분									
		전공작물 기타	전기설비	제1위험물	제2위험물	제3위험물	제4위험물	제5위험물	제6위험물		
				알과카리금속물		금속나트륨					
제1종	옥내 소화전설비 또는 옥외 소화전설비	○		○	○					○	
제2종	스프링크러설비	○		○	○					○	
제3종	수증기 소화설비 또는 물분무 소화설비	○	○	○	○				○	○	○
	포말소화설비	○		○	○				○		○
	불연성 가스소화설비		○						○		○
	중발성 액체소화설비	○	○						○		○
	분말소화설비	○	○	○	○				○		○
제4종	인산염류등을 사용하는 것	○	○	○	○				○		○
	기타의 것		○					○	○		○
	물을 봉상으로 방사하는 대형소화기	○		○	○					○	
	물을 무상으로 방사하는 대형소화기	○	○	○	○					○	○
	강화액을 봉상으로 방사하는 대형소화기	○		○	○					○	
	강화액을 무상으로 방사하는 대형소화기	○	○	○	○				○	○	○
	포말을 방사하는 대형소화기	○		○	○				○		○
	불연성가스를 방사하는 대형소화기		○						○		○
	중발성 액체를 방사하는 대형소화기		○						○		○

소화설비의 구분		대 상 물 의 구 분									
		전공작물 기타	전기설비	제1위험물	제2위험물	제3위험물	제4위험물	제5위험물	제6위험물		
				알과카리금속물		금속나트륨					
제4종	소화분말을 방사하는 대형소화기	○	○	○	○				○		○
	인산염류등을 사용하는 것		○					○	○		○
제5종	물을 봉상으로 방사하는 소형소화기	○		○	○					○	
	물을 무상으로 방사하는 소형소화기	○	○	○	○					○	○

제 5 종	강화액을 봉상으로 방사하는 소형소화기		○			○	○					○	
	강화액을 무상으로 방사하는 소형소화기		○	○		○	○					○	○
	포말을 방사하는 소형소화기		○			○	○					○	○
	탄산가스를 방사하는 소형소화기			○			○					○	○
	불연성가스를 방사하는 소형소화기			○								○	○
	방화분말을 방사하는 소형소화기	인산염류등을 사용하는 것	○	○		○	○					○	○
		기타의 것		○							○	○	○
	물양동이 또는 수조		○			○	○					○	
	건 조 사				○	○	○	○	○	○	○	○	○
	팽창질석또는 팽창전주암						○				○	○	

비 고

1. ○표한 소화기와 대상물은 서로 적응함을 말함.
2. “인산염류 등”이라 함은 인산염류·황산염류 기타 방염성이 있는 약제를 말함.
3. “알루미늄알킬류”라 함은 알루미늄알킬 기타 공기 에 접촉하여 발화하는 유기금속화합물을 말함.

정정 (3月호)

22p 左 2 列 限은(限)

右下 6 列 不能은(可能)

23p 左下 72 列 心要은(必要)

左下 16 列 心要은(必要)

24p 左上 7 列 構造報圖는(計劃)

左上 9 列 平은除

左下 4 列 子想은(予想)

20p 나, 韓國의 特性은(韓屋)으로

公 告

會員任職의 作品을 회지 建築士誌에 되도록 많이 収録코자 널리 그 作品을 募集하오니, 會員여러분의 많은 利用을 바랍니다.

특히 地方 特色을 살린 作品을 더욱 환영합니다. 論文, 散文, 趣味 等 會員코-너도 마련되 있음을 알립니다. 會員諸位

都市人の 特性과 그 發展的 模型의 誘導

金 眞 一
漢陽工大教授

1. 추구되는 集約된 方向

近代國家의 목표가 福祉社會指向이라는 데는 누구에게도 異論이 없다. 近代化作業이나 民主주의적인 實踐道場으로서의 노력은 이미 公同된 國際的 感覺인 것이다. 한편 지금 이 나라에 전개되는 애국운동이나, 그에 따른 精神革命의 요청은 한世代 지각한 감이 들지만 地勢的인 與件으로 韓國으로서는 宿命的인 운동이 아닐 수 없다. 이와같은 思潮를 요약하여 時流에 適應시키면 그것이 잘살기운동이요, 바로 福祉社會指向인 것이다. 이를 다시 풀이해서 우리는 새마을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운동의 定向을 잘 살펴보자는 國民的 欲求具顯面에서 찾아야 한다면, 잘살기 위한 條件의 擴大作業은 누구에 의해서나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또 어디에서나 전개하는 汎域的 성격의 운동으로 成熟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운동은 全力持續의 原則을 뜻하는바 그것이 일시적 또는 마음 내킬때 잠시 해보다 그쳐버리는 운동이 아니다. 自有(OWN)의 技量과 智慧와 노력을 進化的 目標의 成就面으로 간단없이 투입하는 汎時的 성격의 운동으로 지속되어야 될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옛부터 있었던 地域社會운동의 성격을 띤 것의 거의가 限人的 組織으로서 限地的 領域에서 限時的 성격에서 脫皮하지 못한 것이 그 弱點의 主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거를 되새겨 볼 때, 農村새마을운동을 도시로 그 焦點을 옮긴 것은 意義있는 일이다. 그런데, 농촌새마을운동이 官 위주였으나, 과연 도시에서도 농촌

과 같은 指導理念이나 요령으로 이 운동이 성취될 것인가. 이것을 보다 성취시키기 위해 우선 都市와 도시 사람들의 特性을 考察하는 것도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無關心 無氣力, 無責任의 都市 三無主義가 깔려있는 바탕을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2. 都市人의 特性

都市와 農村, 都市는 농촌과 대조적이다. 도시에서의 人間解放을 자연해방, 역사해방, 地域社會해방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도시는 犯罪者의 根據地이면서 天才의 근거지이기도 하다. 이 兩者에서 하나의 共通點은 전통적인 行動 規範에서 전혀 忠實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농촌의 경우 社會的 行動의 規範은 慣習에 의해서 形成되는 것이다. 年少者는 年長者의 行동을 관찰하면서 전통적인 행동양식을 不知中에 익혀 왔다. 또 연소자는 전통적인 行동을 그 自身의 人格의 要素로 하였다. 이러한 農村을 흔히 未開的이라 보는 경향도 있으나, 事實은 그런 것과는 뜻이 다르다. 어느 의미에서는 농촌은 近代都市보다 복잡한 것이다. 우선, 前都市社會는 生産기초가 自然의 周期에 따라야 하므로 自然制約이 크다. 또 因習, 傳統의 과거가 뒤따라 생활을 크게 制約한다. 이 歷史解放이야말로 자유를 갈구하는 현대인의 최대매력이다.

都市와 人間性, 도시생활은 人間性에 크게 영향을 준다. 도시사람은 친근한 사이 이외에도 많은 사람과 교류를 한다. 그것은 그 자리뿐일 수가 많고, 上司는

상사로서, 신문팔이에게는 신문팔이 아이로만 상대를 한다. 또 도시 사람의 生活은 일견 奇異하고 矛盾된 성격의 匿名性에 의해 특색지어 진다. 도시에 있어서 대단히 많은 社会的 接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個住民은 그가 접하는 많은 사람들의 人格을 모르고 있다. 따라서 그 관계하는 特定環節의 한 부분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條件들이 도시사람의 人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大都市를 訪問하는 농촌사람은 도시사람이 每事에 자기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곧 눈치챈다. 그는 그의 行先地인 光化門을 찾는 自身の 서투름에 우선 자증이 난다. 웅성거리는 都市(驛) 群衆이 제각기 行先을 쉽게 찾아 地下鉄, 음식점街, 또는 売票所나 버스정류장—아니면 그 줄서 있는 사이를 빠져 재치있게 택시를 잡는 솜씨에서, 많은 慣例나 약간의 제스처어나, 손짓의 信號를 이해 못하는 데서 자증과 갈등이 싹 트는 것이다. 이와같은 都市環境에 잘 적응하려면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것은 반드시 많은 知能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外樣上 농촌사람은 도시사람보다 劣等한 知能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데서 우리는 가끔 도시사람을 약한 사람이라고 말할 한다. 그러나 이것은 個人的 相違가 아니고 도시사람과 농촌사람의 人格形成에서 오는 생활양식의 相違에 관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일은 개개인의 誤解나 異質의인 사회간의 緊張등의 다른 원인을 理解하므로써 이러한 오해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環節狀化(Segmentalization) 도시사람은 많은 環節—各環節은 그 成員이 다른 Situation의 型에 符合한다—에 分割하는 부분적 역할을 통해서 다른사람과 접촉을 한다. 하루의 行動에 있어서, 도시사람은 다수의 社會集團에 관계하게 된다. 이들 사회집단은 第二次集團으로 불리우는데 그것은 特定目的을 위해서만 기능을 하고 다른 목적은 거의 排除한다. 이 集團은 집단全成員의 緊密로 全体的인 知己를 특색으로 하는 第一次集團과 구분된다. 도시에 이런 集團은 家族集團이나 극히 친근한 友人 사이에서만 볼 수 있다. 도시사람은 어디에서나 spacialization의 일면으로 사회관계를 만들어 간다. 例로, 이발소에서는 이발소로서만 接한다. 이발사는 머리를 깎고, 수염을 밀고 머리를 잘 다듬어주기만을 바란다. 손님도 이발사의 家庭이나 그의 道樂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이러한 것은 다른 社會關係에서도 같다. 牧師가 그렇고, 버스운전사, 店員이 그렇다. 이처럼 都市에서의 사회관계는 一面的인 性格의 것이다. 그것이 어떤 特定時의 人格의 一環節에 대해서는 集中的인 것이라 할지라도 전혀 옳은 일은 아니다. 이러한 接觸은 모든 개인의 활동이나 野心을 다른 사람과 같이 하려는 人格的 關係라든가, 또는

완전한 同一化나 정신적 支柱를 주려는 接觸에 대하는 人間의 要求를 채울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役割의 轉換. 도시의 生活樣式에 적응하려면 당사자는 대단한 緊張을 느낀다. 그는 다양한 役割에 일관된 행동을 주어 自己同一化의 體驗을 주는 支柱體에 통합하는 일에 외로이 도전을 해야 한다. 또, 다양한 역할에, 그 때와 장소에 따라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教會에서는 祈禱를 하고, 일에는 頭腦의 集中을, 蹴球 game에는 聲援을, 파티에서는 愉快하게 지내도록 제각기의 경우에 專念해야 한다. 이쯤되면 그의 人格은 分裂될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대단한 柔軟性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도시생활 속에서 自己喪失할 수도 있는 것이다.

Stereotype. 도시에서의 一時的이며 다양한 接觸은 빠른 態度決定이 요구된다. 背景을 모르는 많은 對面者와는 곧, 그는 나에게 敵對의인가, 友好的인가, 아니면 스스로 善行을 할 사람인가 등을 알아야 한다. 신속한 態度決定의 필요성은 都市의 사회관계에 또다른 요소를 導入하는 결과가 된다. 즉, Stereotype의 사용이며 그것은 人格의 Snap Judgment인것이다. 他人에 대한 Stereotype의인 思考方式은 都市環境에서는 비교적 貧困한 지식에 의지해야 하는 데에 원인이 있다. 이러한 思考는 근본의 感情보다 오히려 외부로부터의 觀察할 수 있는 행동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外樣性은 性格이나 情緒性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우리는 頑固한 사람과 溫順한 사람, 또는 親切한 사람과 수다스런 사람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대하는 기술을 익혀 왔다. 또 우리는 택시 운전사와, 守衛에 대하는 방법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Stereotype은 개략으로 사회적 分類에 따라 組織化되는 경향이 있다. 경험이 풍부한 도시사람들이 취하는 禮儀법절은 그 服裝과 風采에 표현되는 직업과 收入의 다른점에서 정하여 진다. 또, 여러가지 상황이나 事態를 이해하는 데는 詭辯性이 필요할 때가 있다. 우리는 職場의 長인 支配人과 우리가 消費者이면서 顧客인 商店의 지배인을 구별해서 대해야 한다. 우리가 일단 사람들의 個人的反應의 型을 손쉽게 判定할 수 있게 되면 未知의 사람과 대하는 데는 신속한 反應이 중요시 되는 都市生活에는 우선 成功의 실마리를 잡은 셈이다.

Cosmopolitanism. 情緒적으로 도시사람은 두꺼운 적질(Shelter) 속에 살고 있다. 心理적으로 정상적이 되려면 도시사람은 하루 중에 그가 만나는 많은 사람과의 緊密한 同一化를 피해야 한다. 더우기 人間相互作用에서의 疲勞와 倦怠는, 단순히 그 數量이 아니고 그것은 전혀 異質의인 문제이다. 도시사람을 둘러싼 많은 사람은 相違한 型의 인간이므로, 直興의으로 쓰는 Stereotype의 기술도 깊은 同情과 理解하는 態度와는 다

른 것이다. 도시사람은 어느정도의 무관심함이 없이는 多様な Personality 나 Situation—그 속을 빠져나와 人生行路의 Key를 잡아야 한다—에 의해 당혹되지않은 경우는 없다. 때문에 無關心함이 도시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도시에서 이미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인다. 도시에서는 많은 特異한 사람들은 相互理解의 길을 모색한다. 비슷한 성격이 모여 친구로서 同情을 나누는 機會를 가진다. 이들은 서로 접촉하여 그들의 特異性을 점점 더 深化시킨다. 飲酒, 登山, 낚시 심지어 盜癖狂도 있다. 그들은 점차 집단 의식과 상당한 자신을 가지고 外部世界에 대한다. 도시사람은 이러한 特異한 개인이나 집단을 異端視해서는 안된다. 도시에서의 개인이 하나의 세계를 구성하려면은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반드시 마음까지지는 아니더라도 奇異하고 이상한 행동을 받아들일 수는 있어야 한다. 자유는 도시를 지배하고 있다. 많은 Minority 는 그들 자신의 所信을 표명하고, 또 그들 자신의 生活樣式을 추구하며 團結하는 權利를 갖고 있다. 도시에서는 相違性은 당연한 것으로 表明하고 있으나 서로의 相似性의 Stamp까지 받으려는 좌세는 아니다. 때문에 도시사람은 生活信條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抱世術을 몸에 익혀야 한다.

都市家族. 개개 成人은 專門化되고 細分化된 都市諸活動에 참가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지면서 家庭으로 부터 방황하기 시작한다. 도시의 産業은 고립된 개인에게 유리한 就業의 기회를 제공한다. 도시의 機能集團의인 생활로의 참가도 個人本位로 되어 있다. 그리고 都市의 福祉, 救濟施設이 대상으로 하는 것도 家庭全體가 아니라 개인본위로 되어 있다. 그 결과 大血緣家族은 개개성인에 대한 支配力을 점차 상실하여 核家族化되었다. 그런데 개인의 都市生活背景으로 核家族도, 忠誠心의 葛藤도 개인의 利害衝突에 의해 危機에 직면한다. 이러한 利己主義로의 길은 離婚이나 非行의 높은 發生率로 나타나고 있다.

匿名性. 都市生活은 대부분 匿名상태로 지낸다. 그들 人格의 극히 일부분, 一環節이 많은 社会的 広場에서 機能을 할 뿐이다. 新聞팔이, 버스칸의 商人, 牛乳配達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도시생활의 匿名性은 어떤 類의 개인이나 集團을 유인한다. 犯罪者는 도시군중속에서 그들의 일터를 구하는데 그것은 도시군중이 金錢의 利得의 기회와 匿名性의 安全性을 동시에 提供하여 주기 때문이다. 그들은 末知人을 노리지만 그들의 友人이나 동료에 대해서는 의외로 엄격한 規律의 禮儀와 옴은 태도로 대하고 있다. 소위, 流浪集團— 藝術家, 作家, 俳優, 學者—도 도시에 모여 드는데 그것은 都

市의 社会風土가 농촌의 그것보다 비위에 맞기 때문이다. 그들은 새로운 表現形式을 구하고 先人에게 구애받지 않는 赤裸한 眞理를 구하기 위해 傳統과 束縛에서 解脫을 찾는 것이다. 即, 匿名的, 環節的 關係는 私利的 關係와 相通한다. 여기서는 개인적 忠誠心은 버려지고, 成功을 따르는 경쟁은 극도로 個人主義化되어 있다. 이 경쟁의 원칙을 버리고서까지 도시사람이 그보다 약한 친구에게 同情을 준다는 일은 바라기 어렵다.

3. 模型의 展開

위에서 보는 도시사람의 否定的인 측면을 改善하기 위하여 다음의 發展的 模型과 같이 유도하여 보았다.

	미발견적측면	과도적측면	발전적측면
自由性	방종 무규율 모방	자기발전 문화선택 역사인식	인격형성 질서존중 전통과의조화
匿名性	도피처 배금사상 卑俗化	취업자세 인간적회복 자기정화	사회성원화 현명한소비 공덕심
利己性	자기본위 雷同性 경쟁심	소속감 생활교양 역할	충성심 자율성 협동
瞬間性	가식성 일인단역 찰나주의	개방성 상호이해 상향통찰	성실성 공동참여 지속성

도시사람의 意識構造가 이 模型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자기의 生活을 통하여 個人的인, 社会的인, 그리고 국가적인 次元의 課題를 꾸준히 實施해야 할 것이다. 우선 개인적인 과제로서 도시사람은 隣保的인 協同性을 가지고 公益性을 앞세워 실천하는 個性伸張을 하며 未成熟世代의 人格的인 社會化에 盡力해야 할 것이다. 社会的 課題로서는 불건전한 퇴폐풍조를 改造하고 사회규범 및 질서에의 類型的 同화가 시급하다. 그리고 職業的 技能의 力量 擴大와 사회적 창조력과 능동적 태도의 개발에 각자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국가적 次元의 課題에서는 市民은 개인과 국가와를 同一視하여 역사적 주체 의식과 정통성을 體質化해야 한다. 또, 자기의 權利와 의무의 責任있는 行使를 하여 국민 총화에 적극적이며 實質的 참여가 요청된다.

끝

東南亞 視察團 紀行文 〈2〉

朴 榮 大
(蔚山 麗都建築 設計社代表)

2月13日(金)晴. 8時에 일어나서 1層 食堂에서 간단히 조반을 들고 우리 一行은 버스 便으로 싱가포르 주재 韓國大使館으로 간다.

말레이시아 入國 비자를 申請해야 한다. 많은 時間이 걸렸다. 오는 길에 珍奇한 악어 養殖場을 둘러 보았다. 여러마리가 우리 안에 죽은 듯 엎드려 있다.

씻하고 소리를 지르니 보기에 둔한 늑이 아주 재빠른 動作을 취하여 움직인다. 거기서 안 사실이지만 바다 악어와 민물 악어가 작기 다르다. 악어가죽 製品이 진열장에 가득하다.

여기서도 에누리가 심하다. 나는 언제나처럼 一行 중에서 같은 製品을 제일 비싸게 샀다고 놀려댄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熱帶樹와 대나무의 숲에 쌓인 조용한 洋屋의 中國 食堂에서 고기와 뽕밥으로 잘 먹었다. 우리는 어제 밤에 갔던 서울의 南山같은 곳에 다시 간다. 싱가포르의 南山이라 할까? 周圍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피어있다. 어제 밤에 보았던 市街의 高層建物群들이 밝고 빛나는 太陽 아래 한결 鮮明하게 보인다. 우리는 캐-볼카를 타고 센트사(平和와 고요의섬)섬으로 건너 간다. 싱가포르의 海岸線이 한눈에 싹드러온다. 참으로 상쾌한 氣分이다.

길을 내려다 보니 아찔하다. 바다의 물결과 椰子의 숲에 쌓인 적은 섬들과, 섬을 둘러싼 흰모래밭이 매우 곱다. 그때 一行中 한사람이 손가락을 가르키며 고향을 친다. 그쪽을 보니 흰 모래밭에 한마리의 악어가 어슬렁 어슬렁 거어 오르고 있지 않은가! 참 神奇한 모습이다. 얼마후 우리는 또 時計를 들여다 보며 日程에 쫓겨 되돌아나왔다. 또 버스에 搭乗하여 이곳에 有名한 타이거·밤가든으로 向했다. 가는 길에 東쪽 車窓으로 소르단 回敎寺院이 지나간다.

黃金色으로 둥근 그리고 뾰족한 돔, 이것은 典型的의 回敎寺院의 建築樣式이다.

東洋에는 大多數가 佛敎國이지만, 이곳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만은 回敎徒가 많은 나라라고 한다. 타이거·밤 公園은 약간 경사지이며 正門은 中國古代建築樣式이다. 올라가는 길목에는 各種의 人物, 動物, 建物 등으로 實物크기 以上으로 彫刻 彩色되어 있었다.

푸른 숲과, 길과, 다리와, 돌계단과, 亭子와 고운 잔디와, 그리고 만발한 꽃속에 여러 조각들이 가지 가지 형태로 놓여 있었다. 그 규모는 크고 여기에 中國人 胡氏가 父母의 功德을 추모하고 기리노라고 많은 得財한 財産을 아낌없이 投入하여 珍貴한 芸術 및 工芸品을 數年 或은 수 십년이 걸려 完成하였다.

그 후 많은 사람에게 無料로 開放하여 觀覽 할수 있게 慈善을 베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꼭 같은 규모의 것이 香港에도 있다고 한다.

물론 胡氏의 私財에 依해 築造된 것이다. 胡氏에게는 文표, 虎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 다 지금은 故人이 되고 現在는 胡氏의 막내 따님이 재산관리를 맡아 한다고 한다.

胡氏의 大陸的인 氣質이라 할까? 그 生覺의 遠大함에 故人의 冥福을 빌면서 人品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故國 親友에게 第三信을 보내는 글월을 쓴다. 來日 아침이면 아름다운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 조용히 마음을 整理하고 이곳서 받은 印象을 노트에 담아 둔다. 밤은 덧없이 깊어만 간다.

〈쿠알라·룸프〉

2月14日(土)晴, 6時에 일어나서 집을 쉼겼다. 9時 SQ112機로 싱가포르 空港을 離陸했다. 우리들은 처음으로 보잉 737 小型 Z機를 타게 된 셈이다. 不過 40分만에 말레이시아의 首都 쿠알라 룸푸르의 上空에 이르렀다. 上空에서 볼 이곳은 고무나무의 숲으로 덮여 있었다.

이곳 말레이자 사람들은 모두가 우리나라 사람보다 體格이 小型이며 피부가 검다. 그리고 깊은 눈동자를 갖고 있었다. 또 껍이나 溫順하고 親切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中에서는 가장 淳朴한 國民으로 느껴지며 親近感을 더해준다.

英語로 案内하는 30代の 이곳 青年은 껍도 沈着하고 每事에 操心性이 있어 보인다.

Subang 空港에서 쿠알라 룸푸르까지는 22.5km 空港街道에는 異國情趣를 흥선 풍기는 고무나무들이 뒤로 흐른다.

큰 工場도 보인다. 案内人께 물어 보았더니 獨逸 벤즈 会社와 合作会社로 各種 自動車 組立, 生産, 販賣 輸出을 하고 있다 한다. 近郊 高速道路 建設에는 놀람게도 우리 나라 高麗開發 建設会社와 大林産業이 進出해 있다는 消息을 듣고 감개가 컸다. 한국 技術者에 對한 評判이 現地人들에게 좋다는 것이다. 英國人이 말고 있는 建設工事に 比해 부지런하기 때문에 進度가 빠르며 工事의 質도 좋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技術者들이 海外에서 정말 잘 뛰고 있구나 生覺하니 맘 든든하게 여겨진다. 우리는 市内到郊에서 建設되는 高層 建物 現場들을 볼 수 있다. 建設發展하는 首都 쿠알라 룸푸르의 活潑한 모습이다.

얼마後 市内中心街에 자리한 Regent Hotel에 닿았다. 純白의 15層 建物이다. 内部는 유럽 古典式으로 內裝處理되어 있고 모든 壁面과 裝飾들은 티크 原木으로 加工 彫刻되어 安全感을 느끼게 하며 旅行者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 앉게 해 준다. 바닥의 寄木張이며 테이블 그리고 遮陽門까지도 모두 티크木으로 되어 있다.

6層 階에서 땀을 씻고 市街를 굽어보니 兩國 特有의 온갖 奇花妖草가 數千個나 화분에 담겨 있다. 너는 820호室을 配當 받았다. 말레이시아는 본시 말레이인들만의 나라였으나 1963년 9월에 구말라야 聯邦 싱가포르(1965年 8月 脫離) 및 英國領 보르네오(사라와크·사바)가 합쳐서 發足된 新生國 地形은 코끼리의 코모양으로 길게 뻗어 말레이시아半島 北部는 泰國과 國境을 이루고 西쪽은 말라카 海峽을 사이에 두고 스마트라 섬에 面하고 있다. 全國土의 80% 이상이 山과 낮은 습지의 혼합이고 太陽과 풍부한 雨量으로 숲이 茂盛하다. 여기도 經濟權은 中國人이 쥐고 있다는 것이다. 政治的으로는 英國人이 實權을 掌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複雜한 樣相을 表面에 나타내고 있다. 原住民 아가씨들의 고운 衣裳이 눈에 띄는가 하면 中國系 아가씨도 보이고 우아한 모습의 사리를 걸친 印度 아가씨들도 보인다.

多民族 混血國家라고 느껴진다. 높이 솟은 回敎塔, 中國風 寺院 말레이아 特有의 建物용마루가 휘어져 兩 끝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구치고 있다. 4個州에서 交

代로 首相이 5年마다 뽑힌다고 한다. 總面積은 33萬 km² 이고 人口 1,100萬名 言語는 英語와 말레이 固有語를 使用하며 日本語도 通用된다고 들었다. 싱가포르 화폐도 通用된다고 한다. 國民所得은 우리보다 높고 고무와 주석產地로서 世界總生産高의 1/3을 占하고 있다. 全人口 中, 말레이시아人이 45%, 中國人이 35% 其他 印度 파키스탄 사람이 約 10% 内外라고 한다.

쿠알라 룸푸르는 세란폴州的 州都이며 이 나라 首都로 人口 100萬 말레이시아의 거의 中央에 位置하고 있다. 우리는 또 市内 觀光에 나섰다. 서울을 떠나 꼭 일주일일이 지났다. 團員中에는 釜山서 오신 鄭鎭哲會員이 65才 고령이시고 紅一點인 亦是 釜山出身朴鏡子 女史의 健康이 염려되었다.

급변하는 日氣. 나라마다 다른 食事, 물, 그리고 連日 접치는 딱딱한 스케줄에 맞추어 뛰는 強行軍, 鄭會員께서는 기진맥진 완전히 피로한 기색이다. 우리는 모두 內心 不安하였다. 되도록 宿所에서 休息을 취하도록 勸誘하였다. 이곳 고무나무 農場에 들렀다. 고무 加工 工場도 둘러 보았다. 끝없는 山野에 整然히 줄지



쿠알라·룸푸르 郊外에 있는 고무나무 栽培林에서

어 선 고무나무 마치 軍隊의 열병식처럼 가지런하다.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런 고무 나무가 아니고 보통 키가 6~7m 程度이며 잎은 윤택하지만 크지는 않다. 生 고무의 加工過程은 아주 간단하다. 樹液採取만 끝나면 간단히 處理된다. 家內工業 程度의 規模라 하겠다.

여기서는 견딜 수 없는 지독한 냄새가 나지만 現地人은 잘 참고 견뎌낸다. 거기서 나와 一行은 Batu 鍾乳 堀로 갔다. 우리나라 濟州島 萬丈窟 보다 적은 규모라 生覺하면되겠다. 平地에 있는 것이 아니고 山腹 中턱에 있는 데 높이 100m 남짓하지만 6人乗카-가 왕복한다. 습기가 비교적 적고 天井에 수천이 넘을듯 박쥐들이 서식하고 있다.

下山 길에 土産品 商店에 들러 보았다. 이곳 原住民 아가씨들의 손으로 짜여지고 染色된 織物로서 男女衣類는 특유한 무늬와 디자인으로 된 옷이다. 우리는 값도 싸고 記念으로 사 입고 거리로 나왔다. 서로를 분별할 수가 없었다.

순식간에 말레이인으로 변장되어 누가 누구인지도 무지 알 수가 없었다. 어찌나 그때 배를 울켜 쥐고 어린애처럼 모두 웃고 말았다.

다음 코오스는 国会議事堂이었다. 막상 도착해 보니 軍人들이 삼엄하게 경계망을 펴고 있었다. 理由를 알아 본즉, 며칠前 極左派에 依해 爆彈이 投擲된 일이있었다고 한다.

이 나라는 回敎의 나라답게 아라비안나이트를 連想케 하는 등의 回敎寺院들이 여러곳서 볼수있다. 그 規模도 매우 큰便이다. 우리는 한 回敎寺院에 들렀다. 入口서 신발을 벗고 大理石 層階를 올라 大廳으로 갔다. 大理石의 기둥이며 바닥들이 티없이 아름다웠다. 그가운데는 못이 있고 噴水가 여러곳서 치솟고 있어 淸涼하게 느껴진다. 거기서 우리는 비를 만났다. 熱帶地方 特有的 午後에 내리는 스콜이었다. 約1時間 可量 繼續되었다. 우리는 車로서 國立競技場 앞을 지나왔다. 우리나라의 蹴球選手들이 이 競技場에서 뛰었다. 生覺하니 感懷가 있다. 우리의 말레이지아 案内人은 Korea 에 對해서 相當히 아는것이 있었다. 내가 갖고 이고간 거북선 담배를 한갑 膳物로 주었더니 거북船 그림을 보고 倭兵을 무찌른 艦船이 아니냐고 묻는다. 나는 큰 얼굴로 그렇다고 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것을 보고 또 느꼈다. 東南亞 어디로 가나 中國人이 없는 곳이 없으며 巨大한 商權의 牙城을 차지하고 있다는 事實과 中國語는 어디로 가나 通用된다. 그리고 어느 都市로 가나 거리마다 回製車輛들이 洪水의 물결을 이루며 疾走하고 있다는 것이다. 都心地의 照明看板에는 日製時計와 카메라가 宣傳되어있다. 空港이나 hotel 이나 觀光地 어디로 가나 日人들의 물결이다. 어느나라든 日語를 아는 사람이 많았다. 나를 日人인 줄 알고 日本語로 말을 걸어왔다. 나는 "I am Korean"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눈만 껌뻌 껌뻌하고 있었다. 어떤 憤怒 같은것이 치솟았다. 우리 나라도 하루 速히 G. N. P가 上昇되고 東南亞로 많은 商品과 技術人力들이 進出하여 Korea를 認識케 하는 날이 切迫한 所望으로 여겨진다. "國民이 外國에 와서야 나라의 所重함을 더욱 切實히 깨닫고 愛國하는 者가된다" 外國을 다녀온 나의 親友의 말이 다시 되뇌여진다.

저녁 食事を 하기 爲하여 우리는 宿所에서 얼마 안 멀어진 곳에 徒步로 갔다. 看板이 아리랑(Arilang) 食堂이다. 이면 異域에서 韓國食堂을 보게 되다니, 2層



말레이아의 首都 쿠알라·룸푸르 에 있는 國會議事堂.

의 소담한 室内에는 손님들이 차있다. 盛況을 이루고 있는듯 하다. 스피카에서는 銀방울 姉妹의 구성진 노래 소리가 情답게 들린다. 50이 채 못되어 보이는 짙은 化粧의 女人이 나와서 우리를 반겨준다. 이 食堂의 經營主, 勿論 韓國人이다. 우리들은 對話를 갖고 싶었다. 그러나 그 女人은 바쁘게 돈다. 우리들의 태-불을 꺼내면서 未安하다고 눈인사를 한다. 된장국과 쌀밥과 김치와 불고기가 나온다.

鄭鎮哲氏와 成團長이 麥酒를 산다. 나는 暫次 蓄積되어온 몸과마의 旅毒이 녹아 내리는듯 하다.

來日은 陰曆 正月 大보름 中國風習에 따라 市内 차이나 타운에서는 前夜祭가 한창이다. 爆竹을 터트리고 불꽃노리가 밤 가는줄 모르게 밤하늘을 繡놓는다.

나의 房에 앉아 내故鄉을 生覺하며 아름다운 불꽃에 넋을 잃는다. 米日이면 이나라도 떠난다. 淳朴하고 맘씨좋은 말레이지 사람들이여 잘있거라.

2月 15日 (日)晴 6時 일어 났다.

아침 일찍 조반을 끝내고 屋上을 전망대로 삼아 쿠알라 룸푸르 市街를 찬찬히 구경하며 休息을 취했다.

도처 人間이 있고, 집이 있고, 나무가 있고, 江이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리

出發에 앞서 市内 建築工事場을 둘러보았다. 모래도 우리것과 달라 아주 빛이 회고 有機質이 전혀 없어 粒度가 조금 가는 것이 흙이라 하겠다. 자갈은 白色의 화강암 碎石인데 亦是 粒度가 잘게 보인다. 철근들은 $\phi 30\text{mm}$ 가 눈에 많이 띈다.

3時 55分 CX 170으로 쿠알라 룸푸르를 離陸했다.

香港 現地時間으로 7時 50분에 安着했다. 時差를 고치고, 폴리레이인 호텔에 旅裝을 풀었다. 디럭스 호텔이다. 나의 방은 921호실, 旅行中에 우리는 항공기 便 의우려 各國 화폐환전率 의우려 宿所 号室의우려, 빨래하랴, 구두, 담으랴, 觀光하랴, 사진찍으랴, 便紙 쓰랴, Memo하랴, 눈이 핑핑 돌 程度였다.

釜山會員 朴女史는 간밤에 子正무렵 어느누가 自己 방문을 심하게 두드려 많이 놀라서 통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한다. 아마 어느 술친구가 自己방 호실을 착각한 모양이다. 旅行中에는 흔히 있는 일이라 하겠다.

나도 잘 나가다가 東京 銀座 호텔에서 그만 남의 房
을 붙들고 들어가 버렸다. 日人인듯한 相對가 더
당황하는 모습이란 지금도 뇌리에 잊혀지지 않으며
苦笑을禁할 수 없다.

Holiday Inn Hotel은 世界 各國에 체인을 갖은 香港
屈指의 Hotel의 하나이다. 지난해에 新築開館한 집으
로 산뜻한 새내음이 있다.

地上 20層 地下 3層, 客室 600이 넘을 듯, 1層 후
론트는 外國人으로 언제나 붐비고 있다. 이 HOTEL
은 飛行場이 있는 九龍 사이드에 있다.

밤거리를 1時間 可量 散策하고 도라왔다. 우리 나라
는 하루의 始作이 아침이지만 이곳은 “日沒과 더불어
하루가 始作한다”라는 말이 거짓이 아닌것 같다. 輝煌
찬란한 照明 아래 모-든 人間의 各型態의 動作은 始
作 되는 것이다.

〈香港〉

2月16日(月)晴. 여기 氣溫은 泰國·싱가폴·인도
내시아 보다 한결 지나가가 낫다. 年平均 氣溫 24℃라
고 한다. 香港은 人口 400萬의 英國 直轄 殖民地이다.
言語는 英語와 中國語 그중에도 廣東 方語를 많이 使
用한다.

國土 總面積은 不過 1,034km²에 지나지 않는다. 通
貨는 香港 달러를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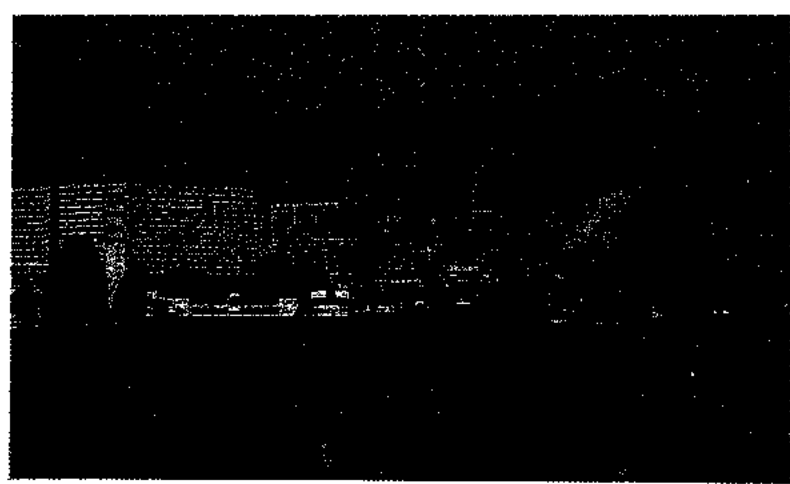
香港은 中國 本土 廣東省의 南東部에 位置하고 있
다.

香港섬 北쪽의 1.6km 바다를 사이에 두고 九龍市가
있고 이곳에 國際空港이 있다. 香港 아일랜드와 九龍
市는 英國領이지만 나머지는 中國으로 부터 租借한 땅
이다. 香港섬은 花崗岩質으로 된 丘陵의 섬으로서 平地는
거의 없다. 北쪽의 가파른 傾斜面에 階段式으로 造成
한 것이 빅토리아市 香港의 首都이다.

香港은 地理的으로 熱帶圈에 있지만 比較的 氣候 變
化가 많다 한다.

香港이 英國에 領有하게 된것은 저 有名한 鴉片 戰
爭以後, 當時 香港은 이름 없는 漁村에 不過했지만 百
年 남짓한 期間으로 오늘과 같은 世界的 自由 貿易港
인 大都市로 發展한 것이다. 天然的인 좋은 港口와 地
理的으로 交通의 要路, 그리고 數 많은 倉庫로 中繼貿
易을 했다. 世界의 모든 商品들이 다 있다할수 있겠
다. 太平洋 戰爭 以後 中繼 貿易에 그치지 않고 加工
貿易에 손을 뻗쳐 香港製品이 全輸出高의 77%를 차지
한다니 놀라지 않을수 없다. 400萬 人口中 約10萬 이
水上生活을 하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다. 全人口의 99
%가 中國人이고 나머지는 英國人과 印度人이라한다.

九龍사이드와 香港사이드와의 最近 距離는 約 1,600
m 이고 거기는 패리가 運般하고 있으며 海底 隧道도
連結되어 있다.



香港에 높이 솟은 最新建物들과
옛 交通手段인 廣크의 帆船이 共存하고 있다

우리는 待期한 버스에 搭乘하고 南쪽 海岸線을 따라
中國 廣東에 있는 中共 境界地로 갔다. 이곳의 地名은
락마·차오(落馬州)라 한다. 거기에는 많은 外國 觀
光客들이 붐비고 있었다. 우리도 丘陵위로 올라 멀리
江이 구비쳐 흐르고 있는것이 보인다. 平野의 한가운
대를 흐르는 이江이 境界線인 것이다.

빨갛고 흰 三角旗가 約 100m의 간격을 두고 꼬쳐 있
다. 中共側 境界에서는 至今 수선 工事を 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休戰線이 있는 우리의 処地로서는 單純한 求景으로
서가 아니고 深刻한 鬱悶을 느끼게 한다. 우리는 下
山하여 車를 탄다.

우리는 지금은 九龍半島의 反對쪽을 달린다. 우리의
案内人은 韓國을 一次 다녀온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
면서 “韓國사람들은 넓은 땅을 갖고 살수 있으니 참
으로 부럽다”고 한다. 나는 처음엔 무슨 뜻인지 잘몰
랐다. 說明에 依하면 이곳 香港의 地価는 世界的이며
人口密度 또한 世界第一 이라고 한다.

그러기에 中産層 以下는 모두가 비좁은 아파트나 船
戶에서 生活해야 한다.

그것도 거리가 20坪 以下の 것이며 畢生의 努力의
代價로 얻어진다고 한다.

案内人의 말이 수궁이 간다. 山비탈의 單獨으로된
單層 기와집들이 車窓에 보인다. 저것이 極少數의 富
裕層에서 居住하는 住居들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면 都市 변두리에서 흔히 볼수 있는 一般的인 기와 住
宅 같이 보인다.

이곳의 아파트는 윗層 일수록 高價라고 한다.

우리들이 가는 길가에는 都市擴張 工事 및 宅地 造
成 工事場과 道路 工事を 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우리는 九龍市街地를 다시 둘러왔다. 어느 中國食堂
에서 點심을 먹었다. 冷水를 한컵 시켰더니 冷水 한병
가져와서 돈을 내라고 한다. 모두 그 人心에 놀라지않
을 수 없다. 알고 보니 蒸溜水라고 한다.

市内에서 2層 버스를 보았다. 英國과 홍콩에서만 볼
수 있다는 빨간색 外部에는 商品宣傳이 그려져 있고

보기에 기웃뚱거리며 不安定하게 느껴진다.

海底터널을 지나 싱가포르에서 본 저 有名한 中國人 胡氏가 築造했다는 똑같은 Tiger Balm garden에 이르렀다. 地勢는 가파른 絶壁의 산을 背景으로 하고 있으며 멀리 바다를 굽어보면 갖가지 原色의 빛을 發하고 있다.

여기는 主人 胡氏의 銅像과 遺骨을 모신 納骨塔과 위패가 安置되어 있었다. 胡主人의 큰뜻에 숙연히 고개가 숙여진다.

다시 一行은 車를 달려 香港섬의 中央山頂으로 올라갔다. 나선형으로 들어올라 가면서 周圍를 觀望 한다. 울창한 金속의 山腹길로 車는 疾走 한다.

이섬에서 쓰는 火力發電所 釜全体가 쓰고 먹는 貯水池 漁船들이 드나드는 적은 浦口 香港서 이름난 富豪의 住宅들도 볼수 있다. 山頂 가까운 곳에서 車는 선다. 最高 山頂에 가자면 다시 캐블카를 타야 한다. 우리들은 時間에 쫓기어 캐블카에는 타지 못한다.

우리는 그곳서 九龍 사이드를 바라본다. 그리고 이 곧 香港 사이드의 海岸線을 따라 서있는 高層建物들을 바라본다. 그곳에 62層 東洋最高의 建物이 銀白色으로 그偉容을 자랑하고 있다. 모두 아름다운 世界的인 大都의 모습이다. 어느듯 山 중턱 부터 구름이 일기始作한다. 우리가 있는 山頂 가까운 곳도 瞬息間에 구름속에 감싸인다.

山아래로 내려 간다. 海邊에는 海水浴을 한가롭게 즐기는 外國人들과 귀여운 아이들이 불장구를 치고 있다.

觀光 予定에 따라 바다 위에 數 많은 장크들을 보며 香港의 名物 에버딘 (Aberdeen)

海物食事を 하러 갔다. 車를 내려 渡船을 갈아 타고 건너 便, 浮船 위에 지어진 中國式 建築物은 豪華찬란한 色彩로 단장되어 있었다. 3層 建物이다. 建物안 前面 中央에는 古代 中國天子의 龍座와 기둥이 서 있고 照明이 黃金色의 龍座를 비추니 莊嚴하게 느껴진다. 우리는 主人의 양해를 얻어 交代로 龍座에 앉아 보고 카메라에 담았다. 海物 食事を 싹껏 먹었다. 모두 珍奇하다. 黃昏 빛이 출렁이는 바다와 하늘을 붉게 물들인다. 平和롭고 꿈같은 風景이다. 돌아오는 길에 이곳에서 商店을 經營하는 郭氏께 電話를 걸었다. 저녁에 반갑게 Hotel로 찾아주어 만났다. 그분의 案内로 어느 百貨店에 들러 毛筆을 몇 자루 샀다. 나는 U S달러 밖에 없었는데 郭氏가 代身 香港달러를 支拂하여 購入하게 되었다. 돈 때문에 절절메다가 그만 붓을 두고 돈만 내고 와버렸다. 밤이 늦어 百貨店도 閉店한 後라서 어쩔 道理가 없었다.

宿所에서 故郷 親知께 第4 信을 띄웠다.

2月 17日(火) 晴 食事が 끝나고 午前엔 自由時間이라서 나는 郭氏집에 들러 어제 毛筆을 두고 온 것을 이야기 하고 同行을 請했더니 自己집 店員을 시켜 찾아 왔다. 나는 몸씨 기쁘고 반가웠다. 침대에 누워 旅毒을 풀겸 좀 몸을 쉬었다. 한결 몸이 가볍고 개운한 느낌이다.

午後 3時 30分 空港으로 떠났다. 5時 30分 CX 500 機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나라인 日本으로 떠났다. 羽田空港에 到着한 것은 現地時間으로 밤10時頃이었다.

入国手續이 몹시 까다로운 税関員을 만나 아쉬운 時間을 허비하였다.

空港 待合室에서 서울交通 陳箕植 社長과 林東文, 東京支店長의 迎接을 받으며 空港 버스 便으로 銀座8丁目에 있는 銀座 第一호텔에 닿았다. 5412호실에 愼重 廣氏와 나란히 房에 들었다 (愼은 團員中 第一靚은분) 나와는 工業學校 先後輩 關係였다. 마침 柳濟斗 권투 選手의 世界第二次 방어전이 있는 날이라서 結果가 몹씨 궁금하여 호텔 종업원에게 물어 보았더니 15回 KO 敗 하었다기에 우리 一行은 그제 서운 함을 말로 表現하기 어려웠다. 나는 목욕을 하고 폭 쉬었다.

<日 本>

2月 18日(水) 雨

아침부터 찌푸른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리들은 日本建築士連合會와 會晤을 하게 되었다. 그 쪽 事務局長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市内 東京會館 5層 會議室이 予約되어 있었다. 10時에 그곳으로 갔다. 日本側에서 堀井(호리이)會長과 우찌야마(內山)副會長과 나카지마(中島)專務理事와 그 外 任員들이 多數 參席하여 우리들을 맞아 주었다. 호리이會長의 환영사는 遠路에 訪日을 眞心으로 반긴다는 要旨의 말씀과 앞으로 親善交流의 度를 더해 갈것을 당부한다. 成團長의 答辭와 會員 人事紹介가 있었고 3月 28日頃 서울에서 있을 本協 臨時總會에 李圭福 會長이 堀井連合會長을 招請한다는 초청장이 傳達되었다. 선물교환이 있었고 이어 質疑応答形式의 座談회가 始作되었다. 나는 現 日本建築士會에서 行政的 面에서 가장 어려운 問題點들을 詳述해줄 것을 要請했다. 많은 問題點들이 提起되었고 또 論議 되었다. 우리나라의 實情과 共通되는 여러 問題들도 나왔다. 現 日本에서는 年 1萬名의 建築士들이 輩出 되고있는 點 士法과 建築法の 問題點等이 相瓦 이야기의 焦點으로 되었다.

現日本서는 独占禁止法에 依해 設計 報酬料가 自由化될 政府側의 움직임이 보이자 連合會에서는 關係要路에 陣情 建議 說得 運動을 펼치고 있으며 最後에 가서는 政府相對로 法廷 斗争까지할 決意를 갖고 있다.

公害問題와 防災問題 그리고 말많은 日照權 問題等 度範圍 하게 論議 된다.

또 昨年에 能本県에 있는 大洋 아파트에서의 大火 發生時에는 入居者 100余名이 死亡하였다 한다.

會議室 옆房에 미리 準備된 술과 食事의 자리로 옮겨 이야기들은 繼續된다.

下午 3時頃 惜別의 情을 나누며 明日 다시 우리들을 東京副都心地라 일컬수 있는 신쥬구(新宿) 高層 빌딩街에 우리를 案内해 주기로 約束하고 헤어졌다.

宿所로 돌아온後 우리들은 후리·타임이 되었다.

나는 韓日 國交 正常化 된後 우리나라로 처음 進出한 日本大成建設이 韓國肥料工業株式會社를 建設할때 그들 會社에서 約2年에 걸쳐 設計및 監理 勤務를 한 바 있었다. 그當時에 같이 일한 大成建設 職員들에게 電話를 하였다.

그들은 미리 내가 올것을 알고 있었으며 自己를 집에 宿所까지 마련하여두고 있었다. 목소리를 들더니 무척 반가워 한다. 5時 勤務時間이 끝나자 나의Hotel로 찾아왔다. 마쓰자와·시게루(松沢滋)氏와 아사이 유이찌(麻井雄一)氏다. 前日 訪日때 大阪및 東京等地에서 만난지 約5年만인 가보다.

우리들은 그동안 가끔 便紙 往來가 있었지만 이렇게 만나고 보니 기쁘다.

끝칠줄 모르는 話題 여러 同僚들의 安否와 지난날의 追憶談 모두가 즐거웠다. 요즘은 中東地域의 設計에 바쁘다고 한다.

내가 韓國서 붓글씨를 써서 族子로 만드려간 3巾의 두루 말이를 주고 그 内容의 글귀를 解釋하여 주니 바른 生活속에서도 이렇게 書道에 精念하나 感嘆할 따름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다. 麻井雄一 大仁을 爲하여 丙辰迎春에 竹山 朴堧輝가 이글을 書하니 淸賞하여 달라는 落款이 前後列에 작은 글씨로 쓰여지고 頭印과 遊印 号와姓名의 石印이 찍혀져 있다. 本文 書體는 張仝碑와 曹全碑文의 合體인 隸書體로 되어있다.

셋은 어둠이 깔리고 내온이 点滅하는 東京의 心臟部인 銀座의 거리로 나섰다.

거리의 싸인보드에는 록키드 事件의 뉴스로 법석을 이루는것 같다.

요즘 日本의 晝間 電力 消耗가 34%나 增加했다 한다. 그것은 모두가 록키드 事件의 TV를 視聽하기 때문이라고 풀이되고 있다 한다.

비어홀에 갔다. 5年前에 우리는 그곳서 痛飲한 적이 있었다. 다만 歲月이 흘렀다는 것과 그때는 무더운 三伏더위의 夏節이었다는 것 뿐이다. 많은 이야기에 많은 술들을 마신다. 10時가 넘어서야 우리들은 地下室 洋酒집으로 옮겨 또 마신다. 이번 旅行길에 抑制해 왔던 술을 한꺼번에 매꾸려는 듯이 자꾸 마신다. “有

朋이 自遠方來하니 不亦樂乎”라는 孔子의 말이 實感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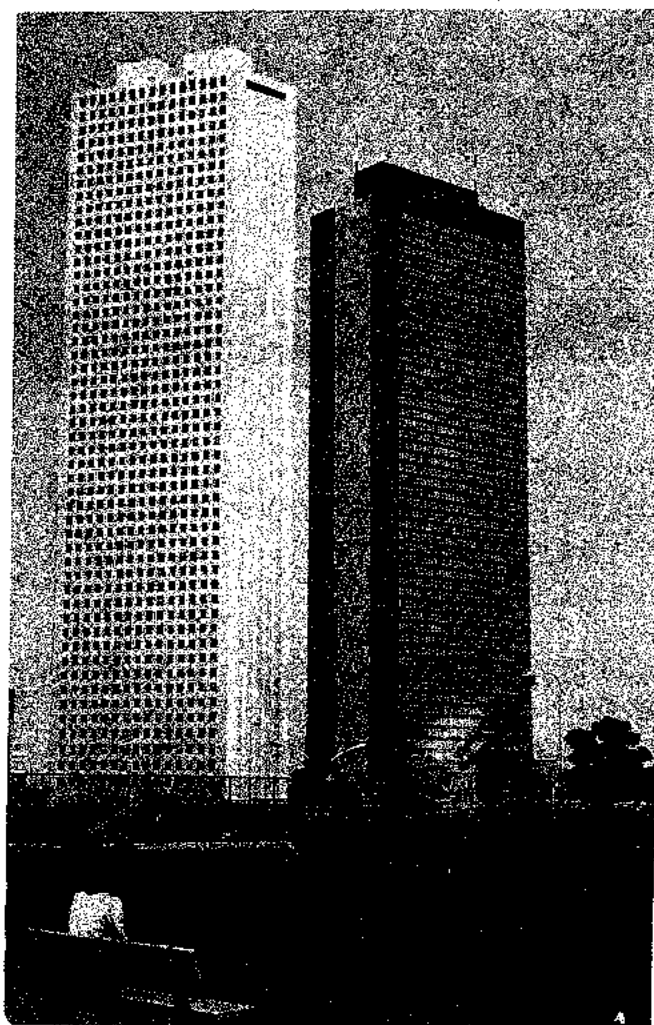
12時가 되어서야 나는 宿所로 돌아왔다. 용케 内房을 찾아 들어 寢台에 쓰러진다.

2月 19日(木) 曇 우리는 10時 서울 交通에서 내어주는 버스 便으로 宮城앞으로 왔다. 부슬비에 젖고있는 二重橋를 보았다. 자못 感懷가 複雜하다. 日政時代에 學校에서 強壓으로 宮城瑞拜와 “皇國臣民의 盟誓”의 暗誦을 10年間이나 하였으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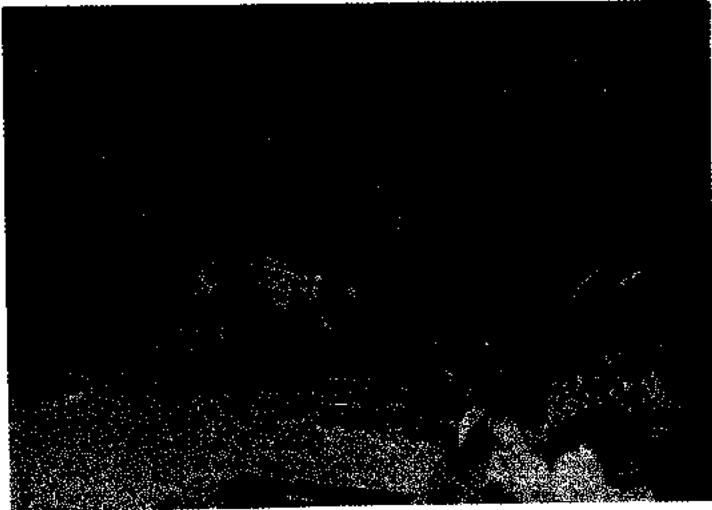
그때 天皇은 現人神의 至尊이라고 했다. 그러나 戰後인 지금은 天皇을 가리켜 덴장(天君)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다는 案内의 說明이다.

우리는 신쥬구(新宿)地區로 갔다. 52層의 쓰미도모(住友)빌딩·미쓰이(三井)빌딩·개이오(慶應)빌딩의 摩天樓가 나란히 偉容을 誇示한다. 쓰미도모(住友)빌딩의 外壁 處理는 銀白의 스펀레스 板으로 되어있다.

52層까지의 高速 에레베트를 탔다. 20秒쯤 걸렸을



日本 東京의 副都心地, 신쥬구(新宿)에 높이 솟은 쓰미도모(住友) 및 미쓰이(三井)빌딩(52층)



까? 展望室에서 내다 보는 東京의 끝없는 모습이 너무 廣大하다. 分明히 여기에 問題點이 있을 것이다.

이 建物에는 모든 安全 및 管理가 컴퓨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다.

우리들은 그곳을 떠나 아카사카(赤坂)를 거쳐 간다(神田)·우에노(上野)를 經由해서 아사쿠사(淺草)로 간다. 같은 市内인데도 한時間이 더 걸린다. 車輛疎通이 잘 안되기 때문인 것이다.

神田·淺草等地는 東京以前에도(江戸)時代부터 庶民들의 住居市場 등이 분비는 곳으로 庶民들의 哀歎이 點綴된 곳이기도 하다.

우리들은 그곳의 라이몽(雷門)을 보고 劇場을 둘러 나왔다.

우리는 明日 아침 解團을 한다.

宿所에서 蔚山 나의 집으로 電話를 냈다. hotel의 電話係員이 電話料金は 어느쪽에서 支拂하겠느냐고 묻는다. 나는 蔚山에서 내겠다고 말하고 있으니 2분도 채 안되어 집이 나왔다. 그간 집과 事務所과 모두의 安否를 물었다.

그리고 나는 22日 羽田発 4時50分の CPA便으로 떠난다고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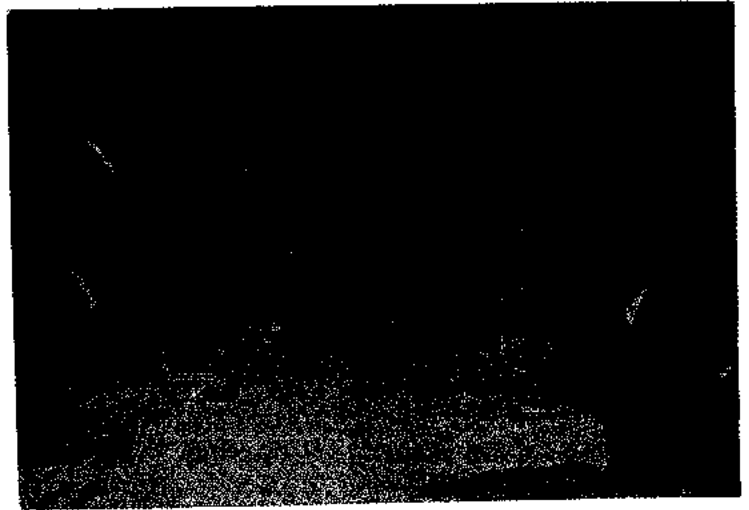
東京의 밤은 아직도 춥다.

2月20日(金) 曇 釜山 會員 3名과 나의 룸·메이드는 明日 서울로 歸國한다고 準備를 서둔다.

그 나머지의 會員들은 大阪等地로 해서 좀더 머물다가 가기로 했고 후론트에 내려와 計算書를 보니 컴퓨터에 依해 Room 마다 電算化 되어 나와 있다.

支拂關係를 마치고 나는 明日 1泊 더할 房을 予約해 두고 아사이(麻井)氏 에게로 떠난다. 一行中에는 하꼬네(箱根) 地区로 떠나는 사람, 大阪 및 京都로 가는 사람 모두가 제각기의 用務·目的에 依해 떠난다.

우리들은 다시 韓國서 만날것을 期約하면서 惜別의 人事를 나눈다.



나는 그날과 그翌日 日本 大成建設本社 및 海外部·設計部等を 둘러보고 또 많은 現場 등 나의 業務에 분주히 된다. 그리고 現在 大成建設의 中東進出 業務와 設計의 프리핀을 듣는다.

나는 밤에 日本中流 家庭인 아사이(麻井)氏 自宅으로 가서 禮遇를 받으며 留宿한다.

나의 끝없는 冥想은 밤이 깊어감을 모른다.

22日 下午 5時 大成建設의 知人들과 그의 家族들의 歡送에 答하며 C. P. A機에 올랐다.

앞으로 해야할 많은 일들을 構想하며 반가이 맞아줄 내나라 내家庭으로 가기 爲하여 東海의 上空을 날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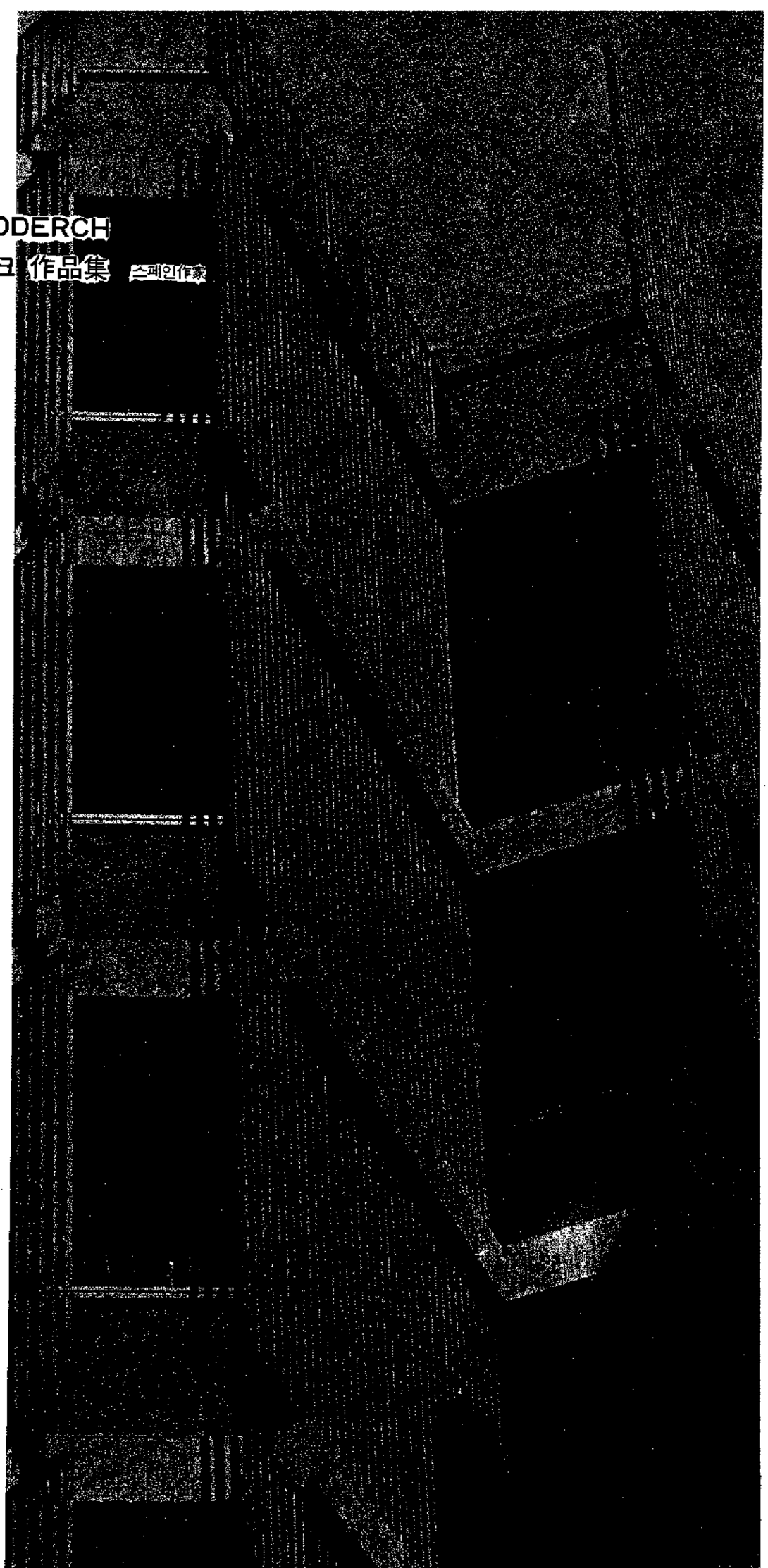
1976年 3月 10日 脫

蔚山에서

海外作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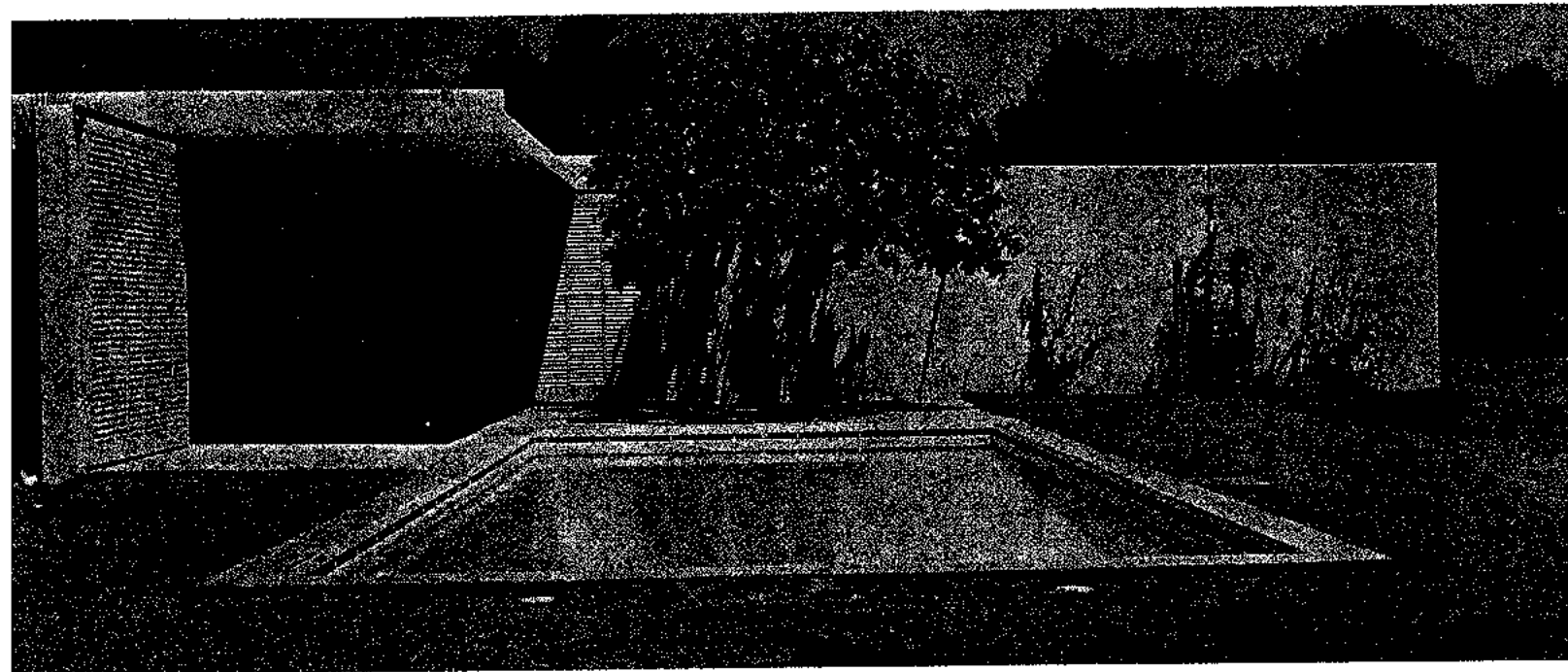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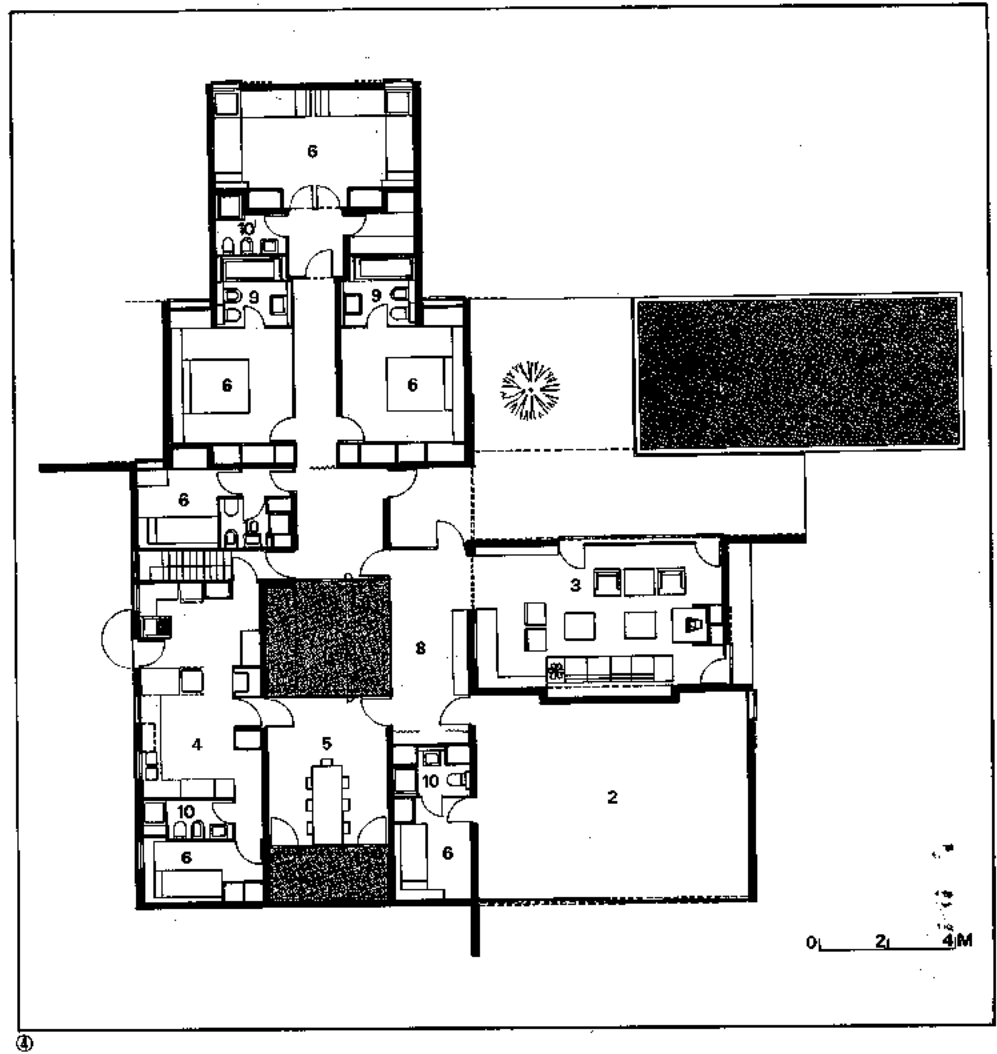
設計：J. A. CODE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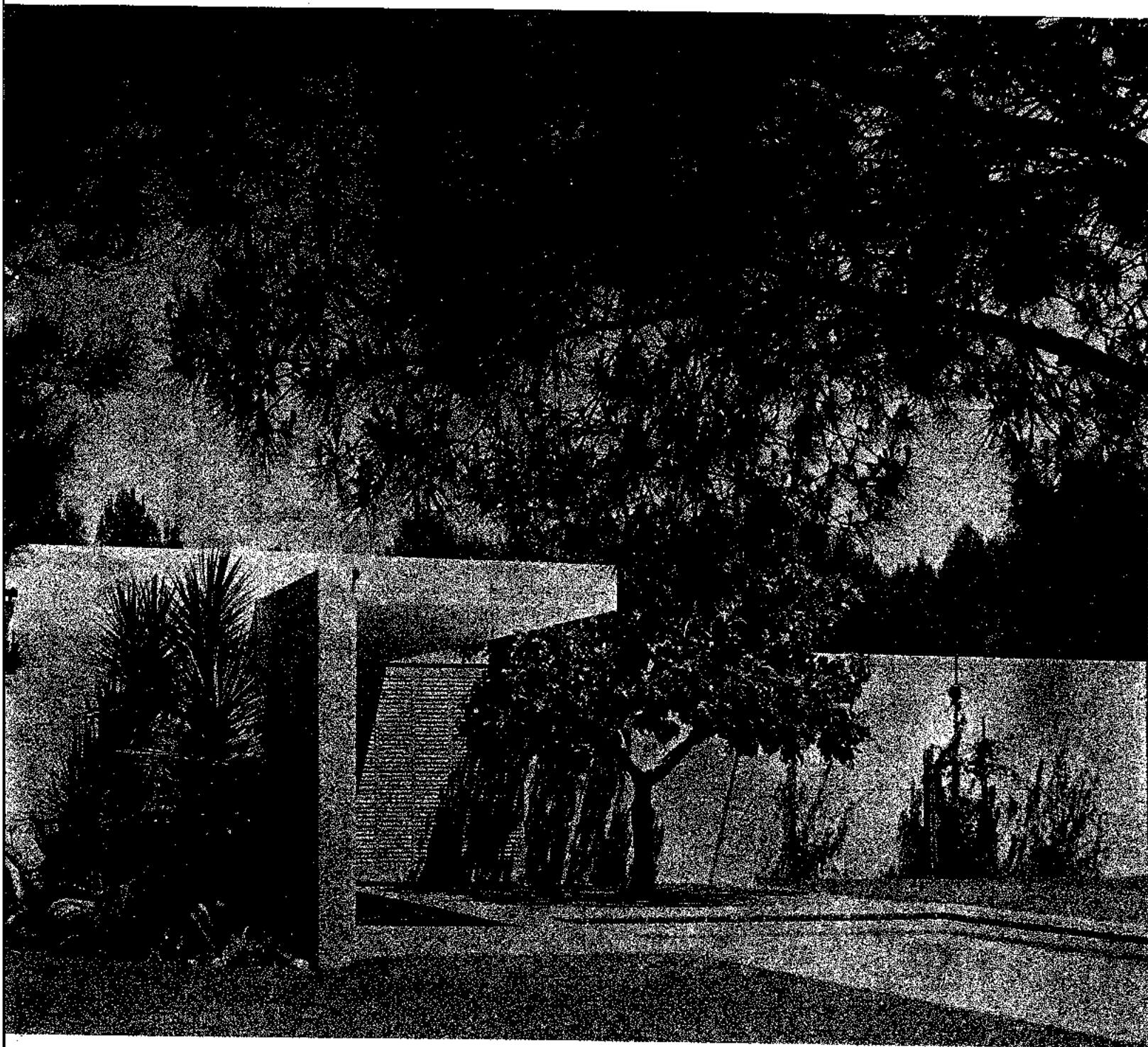
코데루크 作品集 스페인作家



GILI HOUSE

스페인 싯째즈(바루세로나)
1967~68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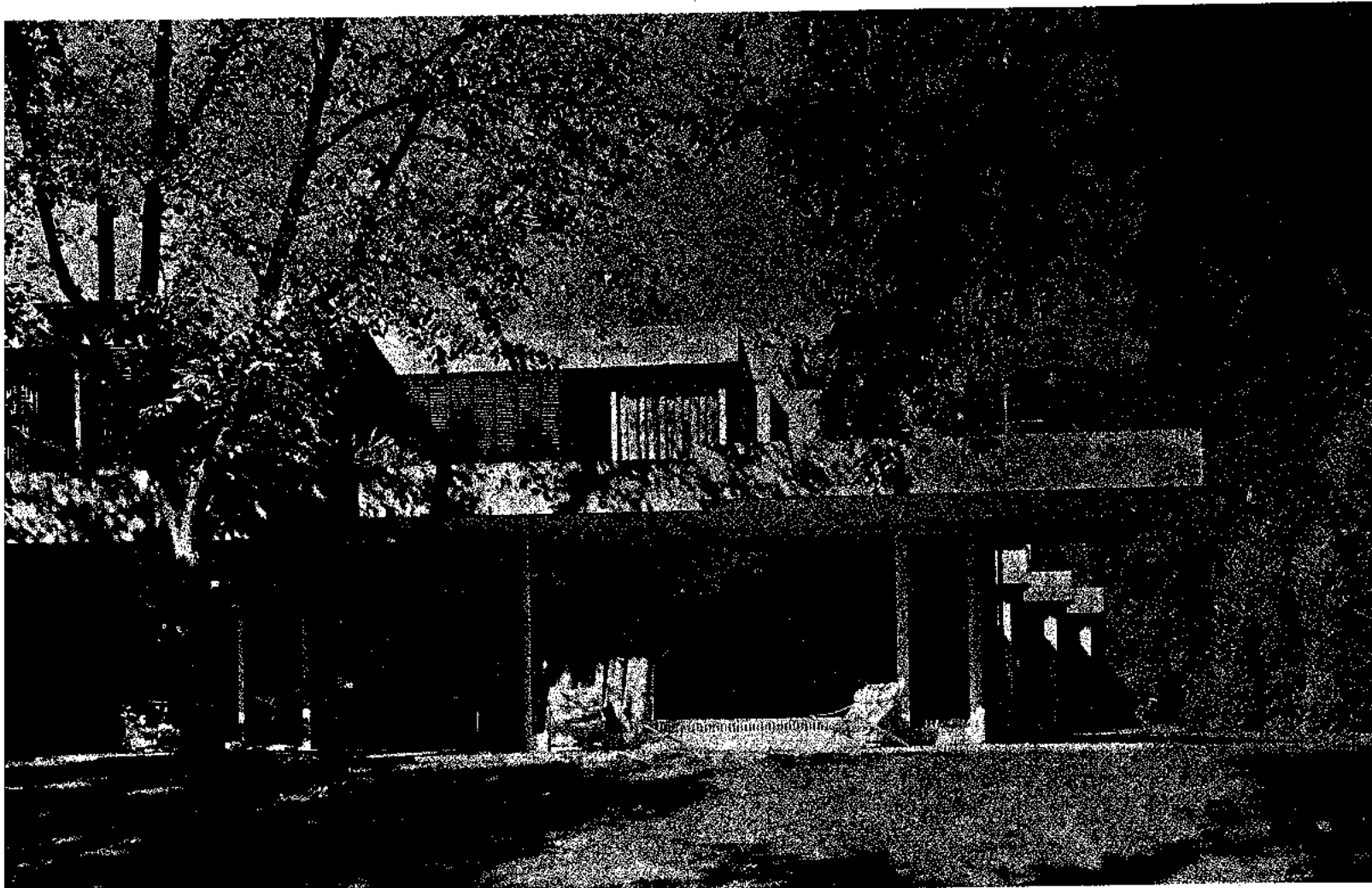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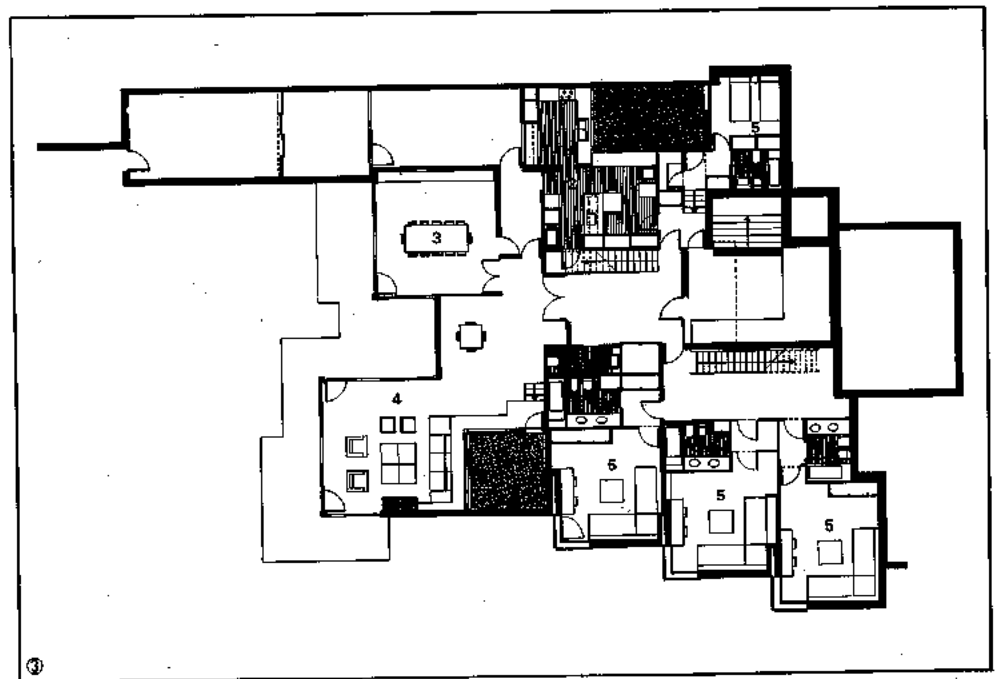




개요: 敷地는 海岸側에 있으나 黃金海
 岸의 南西端에 있고 狹小한 中에서도
 高級分譲 別荘地로서 造成된 地区이
 다. 道路整備도 되었지 못한채 松林
 이 密着되어 있다. 그 松林속에 하얗게
 기러 邸가 서 있다. 그의 傳統的 建築
 要素를 現代化시켜 新建築材를 使用
 그것을 받아드려 繼承시키려는 態度
 가 反映하여 그렇다고 퍼자 엉터리도
 많은 反復하여 使用研究로 이룬 高대
 루크의 空間이 여기에 있다. 고대루
 크・当年 52才였다.

GUELL HOUSE

스페인 · 바루세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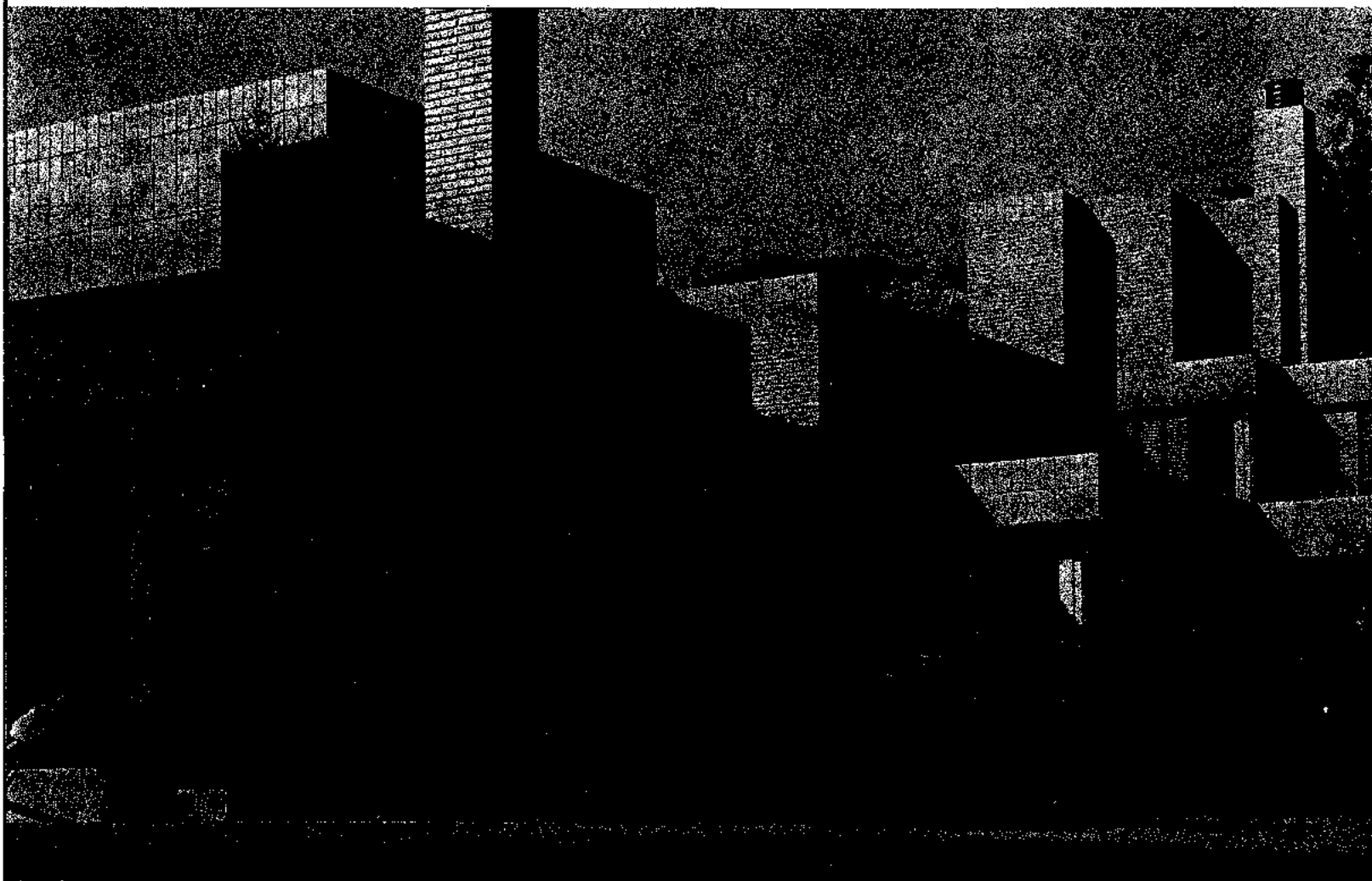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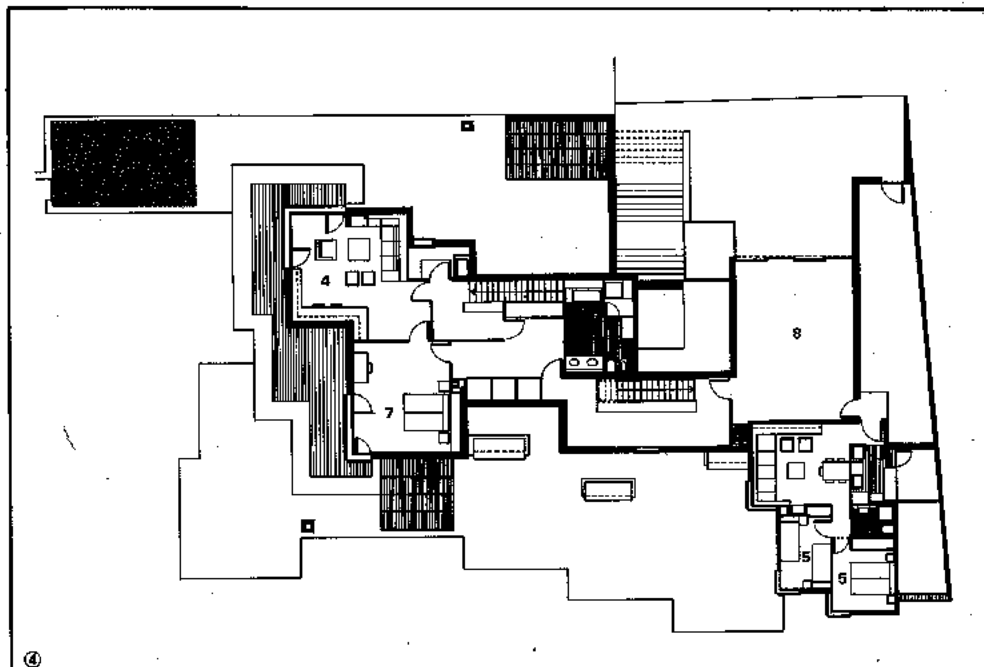


바루세로나 "듀바다르"에 計劃되어진 個人住宅이다. 環境은 市内와는 생각과는 달리 잘 保全되어져 바루세로나의 都市公署와도 동면어진 好條件에 있어 都心까지 地下鉄을 利用하면 15分前後로 달을수 있는 곳에 敷地가 있다.

樹林에 둘러싸여 背景에는 듀바다르의 敎會가 처다 보인다. 고대두르는 지금까지의 회계 절한 平平한 軒線의 強하게 튀어나온 開口部를 원 해까지 미다저로 처리 單層으로 單純 또 増築의 可能性을 加한 STYLE을 깨고 都市住宅으로서 計劃 되어진 APT或은 APT 「고제-라즈」에의 試作으로 생각케 하는 個人住宅이 바루이 "구에루" 邸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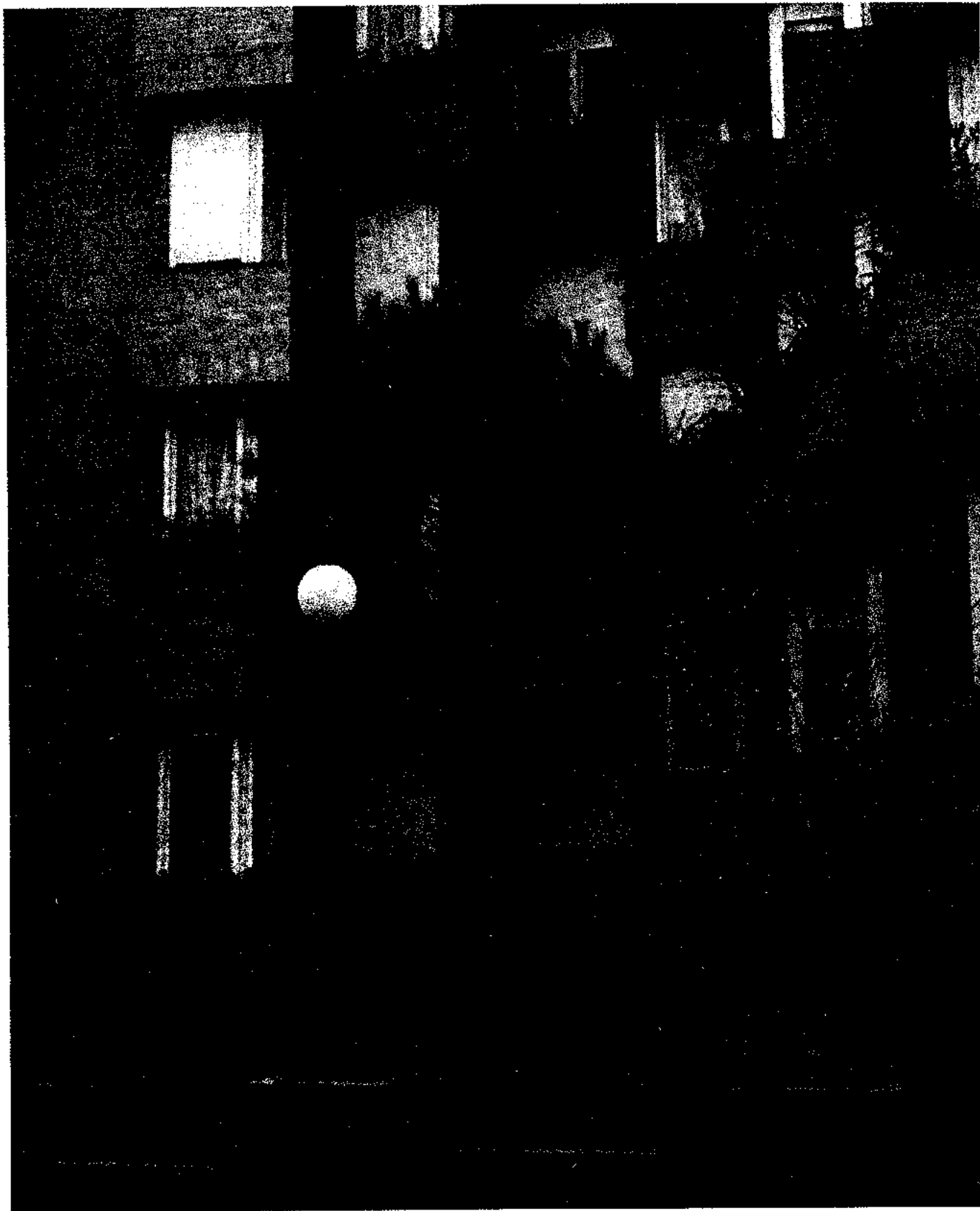
色彩도 무겁고 表面에는 光沢을 주워 크게 또 不規則하게 처리된 軒에 의해 從來 해까지 미다저를 없애고 2個所에 設置된 TOP LIGHT가 맞맞한 空間에 액센트를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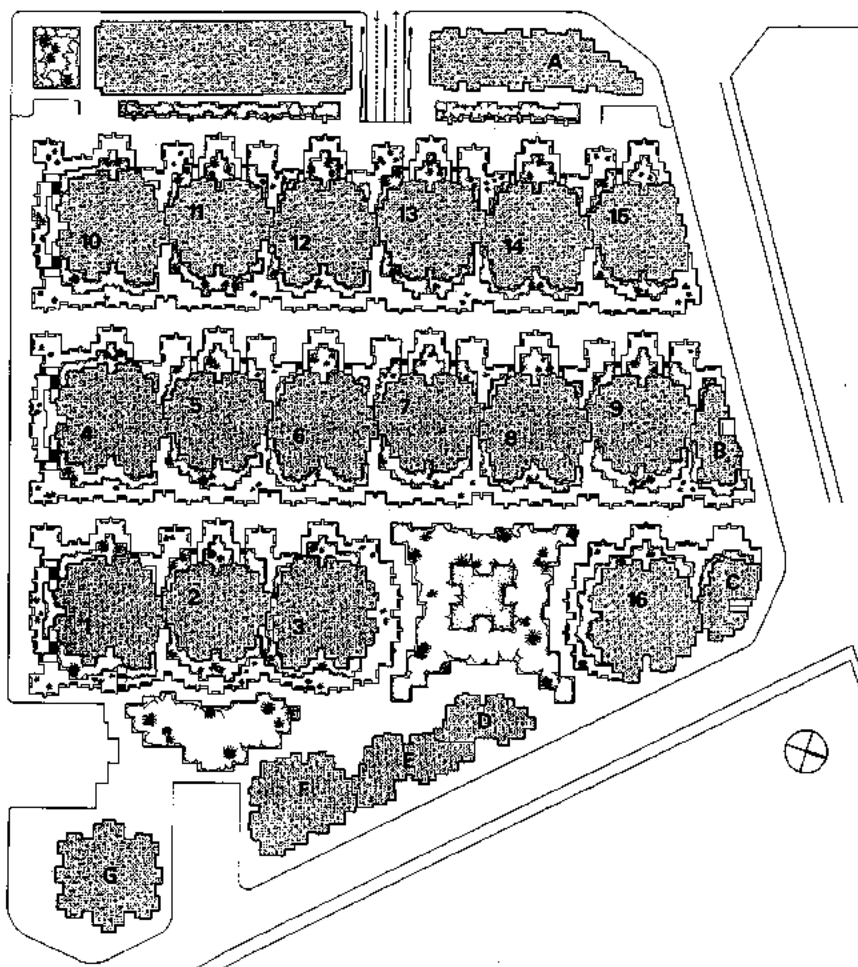
計劃面에서도 이제까지의 T字形 或은 L字形의 單純에서 다시 細密하게 다루어진 空間의 흐름을 볼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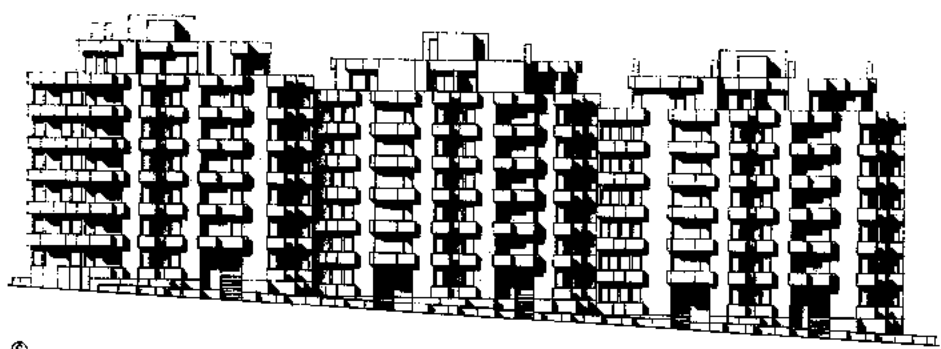
APARTMENT GROUP "COCHERAS"

아파트 「코체라즈」
스페인 · 바루세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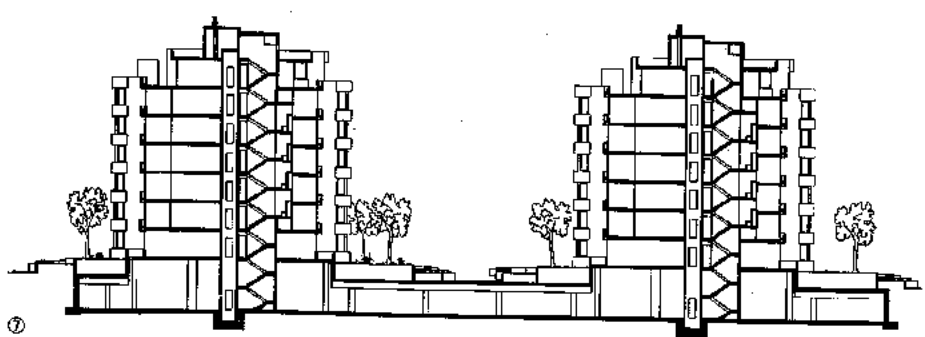




⑤



⑥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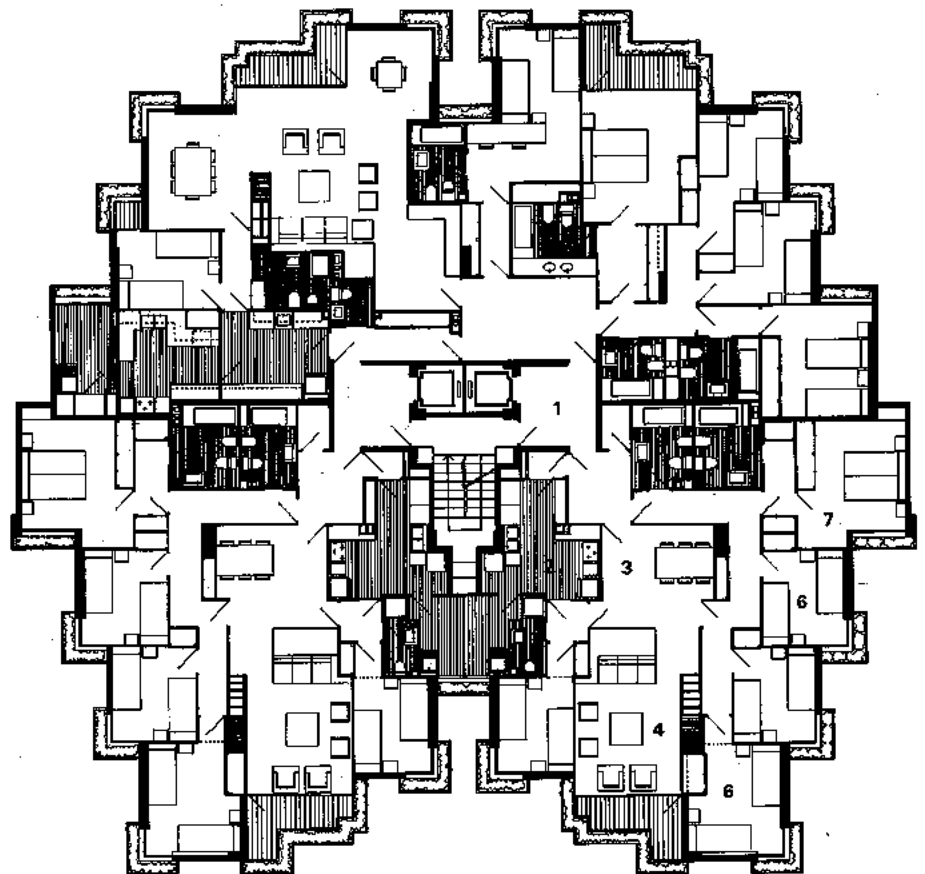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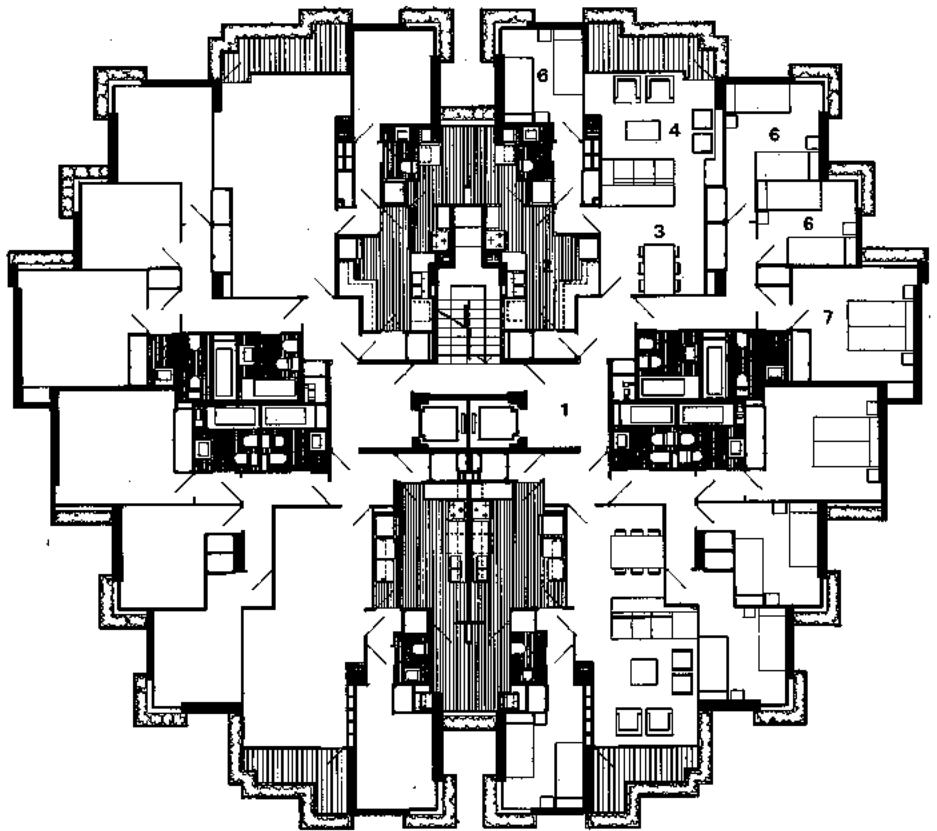
바루세로나 市の 北西 副都心 가루보 소테로 広場 가까운 70M×15M의 変形 4角形地에 스페인 最大の 不動産業者 우아루데는 20數層의 中産階級을 위한 塔状 APT 3棟을 計劃했다.

市の 建築局은 이에 對해서 美觀上建設의 認可를 간섭하고 있었다. 이 周辺은 10層前後의 住宅群이 近年 建設된 곳이나 20層에 達하는 建物は 아직 建設되지 못한 곳이다.

그리고 이計劃은 새로히 고대투크에게 委擧되어지기로 되었다. 設計를 進行함에 고대투크의 基本的 態度는 다음 두가지가 있다.

- ① 우선 最少限 低層으로 처리할것.
- ② 單純하고 無末乾燥한 住宅이 되길 받것.

그는 많은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 生活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에 現기중을느 낀다.



이와 같은 基本的 態度에 對해서 低層으로 처리하면 住居의 單價를 올리느냐 建蔽率을 올리느냐가 된다. 그러나 스웨인이라는 그나라 特殊性으로 日照量 方位도 自由스럽다.

그는 르·코루비제의 或은 스칸디나비아 型의 団地를 北方民族 型으로 보고 반듯이 太陽熱이 強한 南歐에 맞추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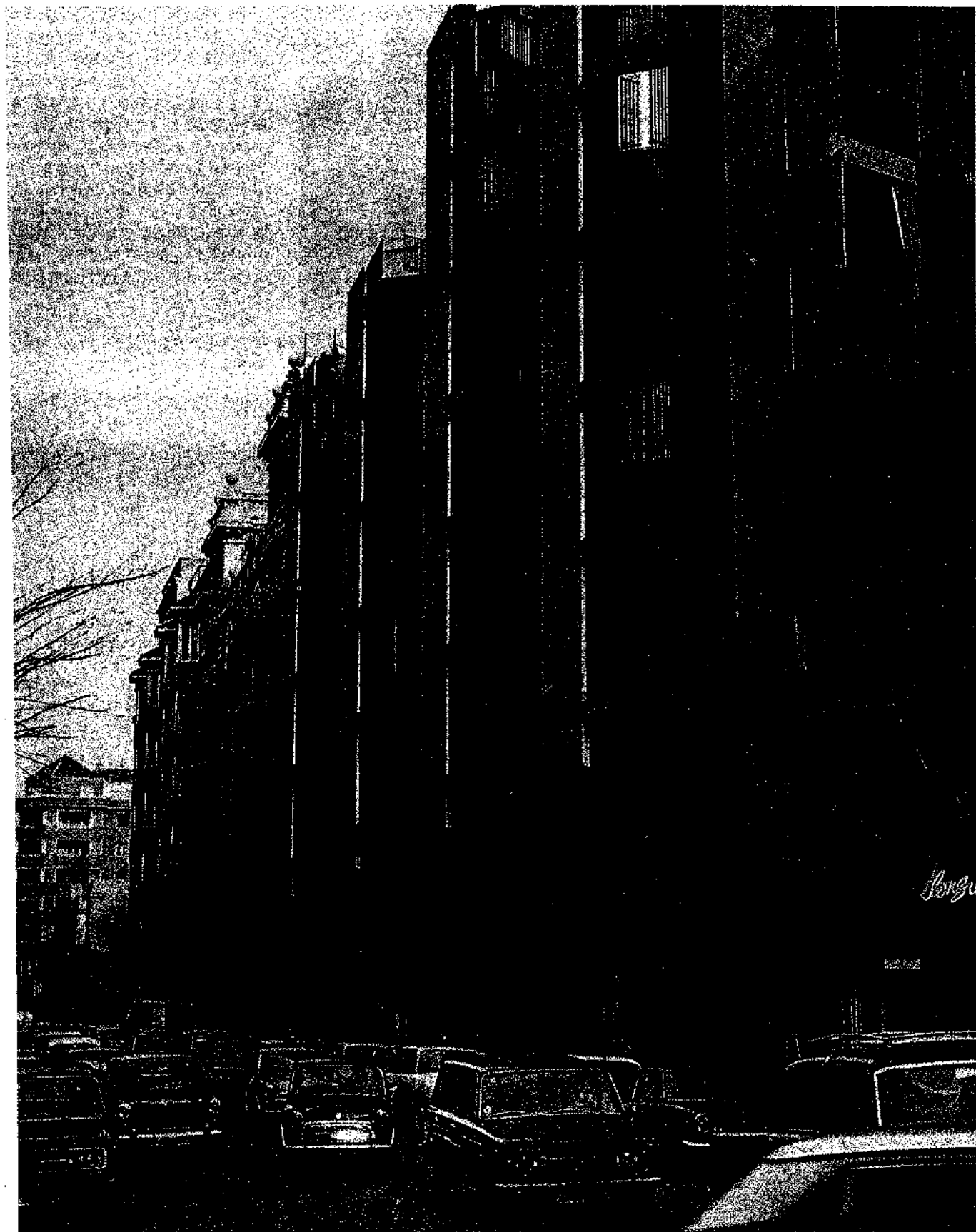
이나라 建築史를 보더라도 아랍樣式이나 유럽樣式또는 거기에서 派生되는 各樣의 樣式이 얼마나 熱狂的으로 받아들이는가를 알 수 있다.

저기에는 分明 民族的인 것(魂) 이라고나 할까 그와 같은 魂을 現代建築·都市計劃에도 적절히 反映시키지 않고서는 않된다는 것이 고대루크의 生覺인 것이다.

APARTMENT HOUSE "GIRASOL"

아파트 "히라솔" 1965~68(工期)

스페인 · 마드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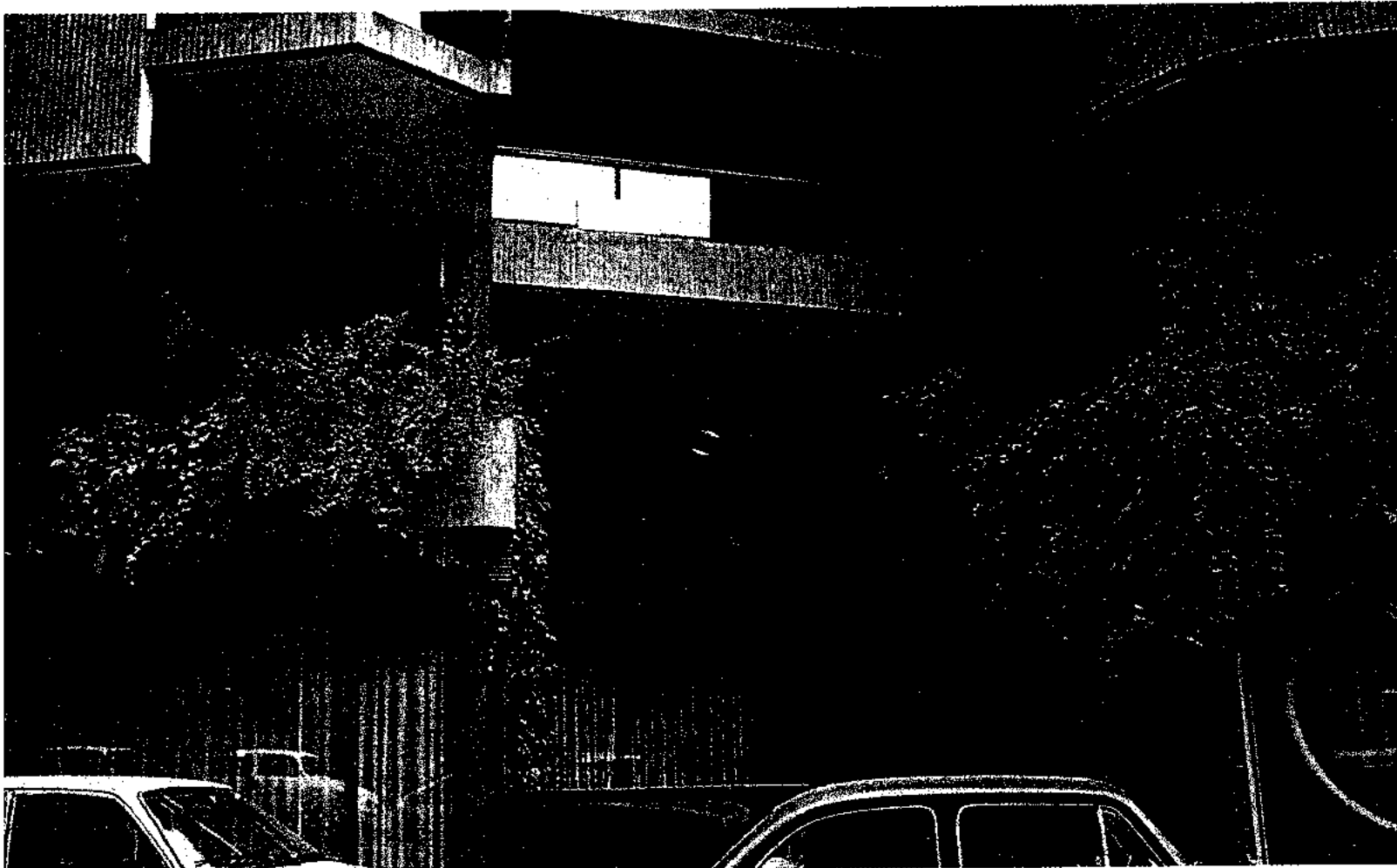


개요: 마드리드의 北西 나바세라-다산
脈中에 計劃된 200人 收容의 宿所(19
44-45年)에 계속되는 고데루크의 가
스테자 地方의 計劃이다.

히라솔이라 이름한 이 APT는 마드
리드 北東部 19世紀末의 都市改造및
擴張期에 格子狀으로 計劃된 地區에
位置하고 마드리드都心 푸에루다·대
루 솔 廣場에서 3km圓의 사라만가 地
區라 불리우는 準住宅 地區에 있다.

敷地에는 以前 建築物이 있었으나
철어버리고 그所有者인 不動産業者가
고데루크에게 課題로서 依頼했다. 고
데루크는 사라만가 地區의 現狀을 考
慮 DESIGN調和를 生産할려 했으나
이에對해서 建築主는 周圍와의 調和
보다는 고데루크의 個性있는 DESIGN
을 要求해 왔다.

그렇다고 그와 같은 要求를 100%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計劃이 이루어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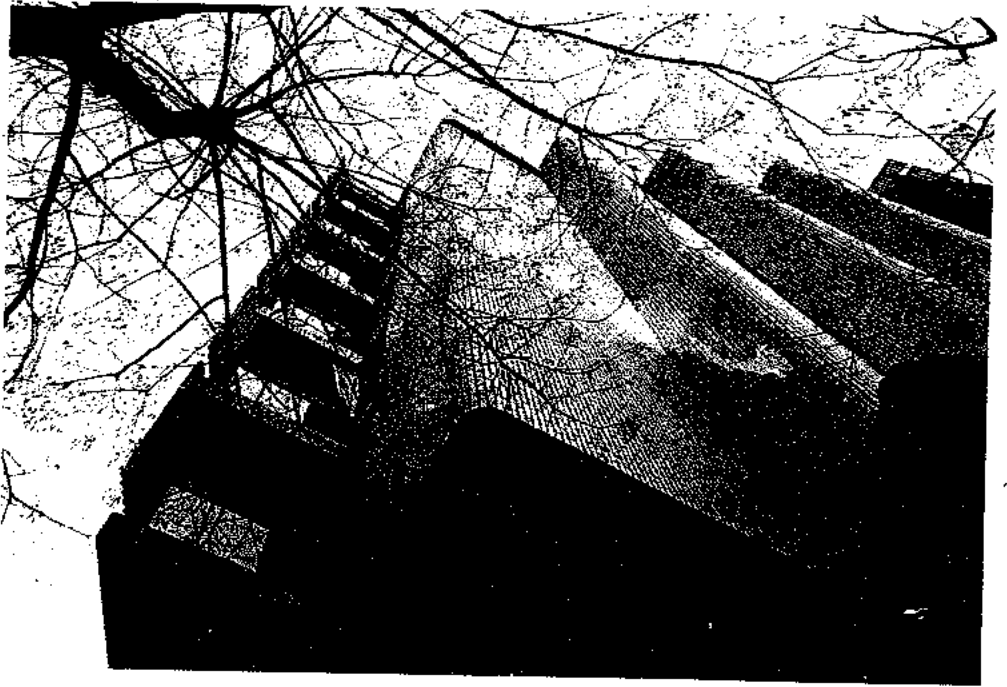


敷地는 라가스카通에 面하는 約 50 M 리즈멘通에 面하는 約20M의 短形인 것이다.

構成은 地上1層이 賃貸 또는 売却 商店 및 事務室이다. 地下1層이 흔히 말하는 地下商街形式으로 되어 市民에 開放 되어져 있으나 마너오에서 導入되어진 自然光에 의해 採光되고 換氣되어진다.

地上層 2層에서 7層~8層까지가 APT部로 되어져 住居部와 公共部の 接点인 2層은 넓게 開放된 空間으로서 階梯과 에레베타 있을 뿐으로 盛土를한 空中庭園단으로 閉鎖的이고 自然과의 接觸이 어려운 格子狀地에 溫潤를 던져 주고 있다.

住宅의 副-的인 型은 없고 變化가 많은 箱子型式이 되기 쉬운 APT建築에 變化를 주워 購入者에의 選擇權을 주고 있다.



建築設計事務所의 經營組織實態에 對한 調查研究

◀從業員에 對한 心理學的 考察을 中心으로▶

李 璟 會 延世大副教授
任 鴻 彬 延世建築大学院

國文抄錄

本 研究는 서울시에 分布되어 있는 1級 建築設計事務所中 34個所에서 122명의 建築設計 從業員을 對象으로 建築設計事務所의 規模에 따른 從業員들의 職業에 대한 滿足度, 士氣價值觀 作業條件에 對한 態度等의 心理學的 變化度를 調查하였다.

이상의 事項에 대한 資料는 規模에 따라 3그룹으로 分類하여 Chi-Test와 T-Test 檢証法에 의하여 設計事務所 規模別 各種變數들의 相異點을 分析 確認하였다.

結論에서 從業員들의 權益保護 動機誘發 士氣昂揚 등에 관한 問題點의 解決方案과 企業의 擴大와 安全性을 위한 理想的인 組織形態에 對한 모델을 提示하였다.

1. 序 論

오늘날 經營組織問題를 單純한 技術經濟의 問題로서가 아니라 人間의 問題로서 보는 認識은 現代組織論에 있어서 하나의 中心的 課題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設計事務所는 組織의 基本이 되는 直系式組織(Line organization)職能別組織(Functional organization) 直系參謀式組織(Line & Staff organization)의 限界속에서 權限移讓의 關係를 外面하는 徹底한 一人 經營體制(one-man Management)를 行하기 때문에 이로 因한 企業의 擴大阻害, 作業의 制約, 將來性の 稀薄, 過重한 作業時間, 低賃金, 높은 轉職率 등의 矛盾을 派生시켜 社會의 次元에서 時代에 逆行하는 듯한 印象을 주고 있다.

從業員의 65% 以上이 大學卒業者인 優秀한 職員들로 構成되어 있지만 企業의 零細性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從業員의 71%가 賃金에 對한 不滿을 갖고 있으며 51%가 轉職을 하고자 하는 深刻한 問題點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設計事務所의 제반問題點을 고려한 合理的經營體制의 確立이 時急히 要請되고 있다.

人間은 自己가 屬해 있는 集團內에서의 所屬感 協同感 友情感 또는 同僚集團에 의한 收容感等を 重要視하고 있는 反面 自我慾求(ego needs)로서 自己信念, 自己能力, 滿足感, 他人으로 부터의 認定感, 將來性을 더욱 重要視하고 있다. 따라서 經營의 合理化作業의 策一段階로서 時代的 變遷에 따라 從業員들의 欲求水準을 잘把握하고 理解하여 刺戟하여 從業員들이 追求하는 諸般欲求를 充足시켜줄 수 있는 手段을 講究하여야 한다.

本調査研究에서는 서울시에 所在하고 있는 建築設計事務所 從業員 122名을 對象으로 從業員들의 社會經濟的 背景, 作業環境條件에 對한 態度, 職場에 對한 滿足度, 組織에 對한 態度등에 대한 心理學的 考察을 通하여 建築設計事務所 經營에 따른 問題點을 調査研究하였다.

2. 調査概要

1) 調査対象の選定

本調査対象の選定은 서울시에 散在하여 있는 1級 建築設計事務所 409個所の 設計事務所中 59個所를 各区别 設計事務所의 分布比例에 따라 選定하였다.

2) 調査者: 本 研究者 外 4名

3) 調査期間: 1975. 10. 1~1975. 10. 7

4) 調査方法: 予備調査를 거쳐 任意選定한 (random sampling) 設計事務所에 대해 調査研究目的을 說明하고 本 研究者의 案内書信과 함께 訪問時 調査表를 配付한 後 1日 經過後 回收하였다. 總59個所中 34個所 122名의 応答를 얻었다.

5) 調査内容: 調査表는 經營主와 職員用 두가지가 使用되었으며 그内容은 다음과 같다.

(1) 經營形態

(2) 従業員 및 設計事務所의 規模(size)

(3) 入社基準

(4) 設計事務所의 經營上 重要因子

(5) 設計費와 設計事務所間의 關係

(6) 一般事項: 年齡, 學歷, 入社年數, 設計業勤務年數 經濟水準 資格證所持与否

(7) 作業環境: 照明 騒音 換氣 採光 冷房 (여름의 경우) 設計実面積 設計台의 크기(冊床, 의자, 作業面積 包含)

(8) 満足度: 職業 賃金 出退勤時間 勤務時間 賞与 金支給 休暇

(9) 作業의 制約要素

(10) 作業의 専門化

(11) 經營主에 대한 意見

6) 分析方法: 資料의 統計分析은 Computer를 使用하여 頻度數分布 平均值 相關關係를 求하였고 32個所 設計事務所를 従業員數에 따라 小規模(5人以下) 中規模(6~9人) 大規模(10人以上) 3구분으로 分類한후 各 group間에 応答内容의 差異點을 Chi - Square檢證을 通하여 比較 考察하였다.

表 2~1 従業員數에 依한 設計事務所規模

group	大規模	中規模	小規模	總 計
従業員數	10以上	6人~9人	5人미만	
応答者數	41名	42名	39名	122名
設計事務所數	6個所	13個所		34個所

3. 우리나라 建築設計事務所의 經營組織實態

3~1 現 況

우리나라 建築設計事務所의 分布狀況은 表 3-1과 같이 全國적으로 1407個所가 分布되어 있으며 이중서울에 645個所가 分布되어 있어 第一位는 分布率을 보

이고 있으며 濟州道가 20個所로 次高적인 分布率을 보여주고 있다.

特記할 만한 事實은 서울의 境遇 1級 建築設計事務所의 分布가 2級の 分布에 비해 越等히 높은데 比하여 地方의 境遇 大部分 2級の 分布가 1級の 分布를 越等히 上廻하거나 對同小異한 逆現象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에 分布되어 있는 建築設計事務所는 645個所로서 全國建築設計事務所 分布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1級 建築設計事務所가 409個所 2級 建築設計事務所가 236個所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各区别 建築設計事務所의 分布는 1級的 境遇 圖 3~1과 같이 中区

〈表 3-1〉 地域別 設計事務所의 分布狀況

地 域 名	1 級	2 級	總 計	比率(%)
서 울	409	236	645	45.8
京 畿	44	44	88	6.3
江 原	13	13	26	1.8
忠 北	9	14	23	1.7
忠 南	28	53	81	5.8
全 北	16	20	36	2.6
全 南	24	53	77	7.5
慶 北	72	83	155	3.9
慶 南	22	53	75	7.3
釜 山	90	91	181	12.9
濟 州	11	9	20	1.4
總 計	738	669	1,407	100%

鍾路区 西大門区 城東区 龍山区 麻浦区等 서울의 中心 地에 가까운 地域일수록 1級 建築設計事務所가 集中되어 있으며 永登浦区 冠岳区 東大門区 道峰区 城北区等 외곽 地域에는 2級 建築設計事務所가 主로 分布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2 企業의 形態와 組織類型

우리나라 建築設計事務所의 企業形態는 株式會社와 個人形態의 2種類로 区分되는데 이중 85%가 個人形態로서 1人經營體制(one-man control)에 의한 直系式 組織(Line organization)을 採하고 있으며 極少數의 大規模 設計事務所에서는 株式會社形態에 의한 直系式 參謀組織(Line & staff organization)을 取하고 있는 곳도 있다.

3~3 經營管理의 構造

本 調査에서 나타난 建築設計事務所의 經營管理構造는 規模에 따라 圖 3~2와 같이 5가지 形態로 나타나고 있는데 各 組織構造別 分布 頻度數는 第 3 構造形態가 41%로 가장 높은 分布를 보이고 있으며 第 1 形態와 같은 組織構造도 15%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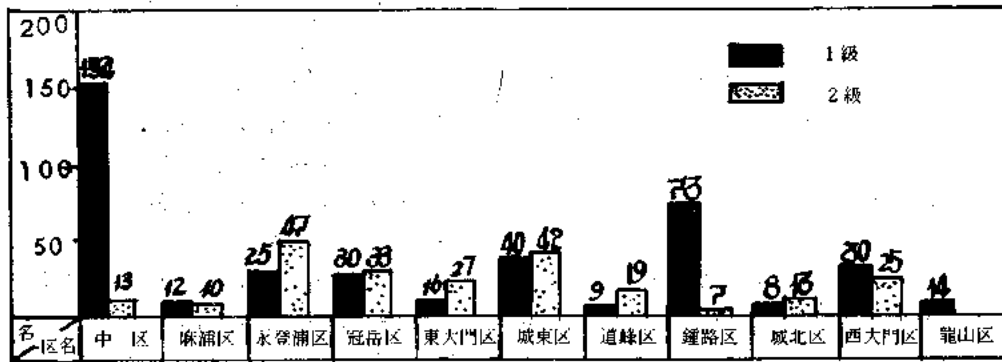


圖 3.1 서울市 各區別 1級과 2級 建築設計事務所의 分布比較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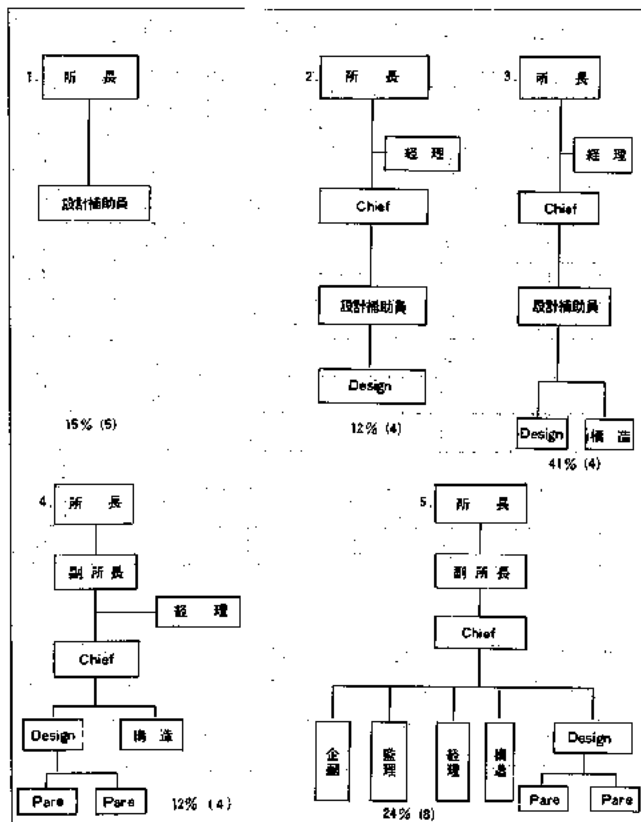


圖 3.2 設計事務所 經營管理 構造

3~4 設計事務室規模

企業의 規模는 從業員 規模와 더불어 企業의 社會的 位置에 많은 影響을 미친다.

調査된 設計事務室 規模는 7坪~11坪 規模의 設計事務室이 9個所로 第一 많았고 100坪과 250坪 規模의 大規模 設計事務所도 各各 1개소씩 있었다.

平均 1個 設計事務所 所有面積은 28坪으로 中小業의 規模를 나타내고 있으며 個人當 所有面積은 3坪에 達하고 있다.

한편 從業員數에 따른 規模를 보면 3名~9名을 갖은 設計事務所가 全體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4名이 勤務하는 곳이 8個所의 設計事務所로 가장 많고 47名과 54名の 從業員을 가진 곳도 各各 1個所씩 있다.

平均 1個所의 設計事務所에서 8·9名の 從業員이 勤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專門職務部署

現在 우리나라 建築設計事務所의 職責은 一般的으로 所長, 副所長, 室長, Chief, 設計補助員, 技士 등으로 呼稱區分하고 있으며 이들의 業務는 所長의 경우 一般 會社의 社長의 業務와 大同小異하며, 副所長, 室長, Chief는 規模에 따라 各各 職責의 名稱이 多少 差異는 있지만 大部分 設計事務所內의 技術的 責任을 担当하게 된다. 設計補助員과 技士는 一般會社의 社員과 같은 位置로서 各 設計事務所에 따라 그 呼稱이 技士 或은 設計補助員이라 稱하여 지고 있는데 이들은 各各 專門職務部署에 따라 配置되어 作業에 임하게된다. 이들의 職務別 分布狀況은 디자인(Design)이 全體의 74%를 차지하여 第一 높은 分布를 보이고있고 構造部門과의 比率는 15:1을 나타내고 있다. 其他의 7.4%는 無 回答에 該當하는 者로 大部分 組織의 體系의 不實과 經營管理上의 問題로 因해 그들의 職務部署가 애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從業員의 社會經濟的 背景

1) 教育水準

從業員의 社會階層別 水準을 測定하기 爲해서 學歷을 調査한 結果 圖4~5와 같이 大卒以上이 62% 高卒以上이 38%로 比較的 높은 教育水準을 보여 주고있다.

2) 年 齡

從業員의 年齡은 大規模·中規模·小規模의 規模에 따라 各各 平均 29歲, 28歲, 29歲로 比較的 均一한 年齡分布를 보여주고 있으며 全體平均 年齡은 28歲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와같이 平均年齡이 30未滿인 것은 建築設計事務所의 特殊性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3) 勤続年数

設計事務所에서勤務하는従業員들의勤続年数を調査한結果 図4・1과 같이3年未満까지의従業員이33%를 나타내고 있으나勤続年数3年以上부터는 그分布가 급격히 하락하여11%의分布度を 보여주고 있다.

또한勤続年수가增加할수록従業員の分布도 낮아지고 있으며規模에 따라서도總分布曲線과大同小異한現象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設計事務의從事年수는2年~4年이 전체의44%로 가장높은分布를 보이고 있으며5年~7년까지가 그다음으로33%를 차지하고8年~10年이6%를 나타내고 있다

근속년수	%	응답자수
1년 미만	34	42
1년 - 3년 미만	33	41
3년 - 5년 미만	10.7	13
5년 - 7년 미만	9	11
7년 - 10년 미만	3	1
10년 이상	6	7

4) 月収入과支出現況

月平均 従業員이收入程度는2萬~6萬圓收入의分布는54%로서 가장 높은分布를 보여주고 있어 서울勤勞者 月平均所得額 59,240圓과比較할 때 낮은水準의所得임을 알 수 있었다. 2萬圓 以下の 所得者가5%를 차지하고 있는反面 14萬圓 以上の 所得者도11%의分布를 보이고 있는데 이原因은經營主의 応答이 包含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月支出狀況은 図4・2와 같이 月收入에 비해 높은分布를 보이고 있어設計事務所 従業員이 大部分이課外收入에 依存하고 있음을推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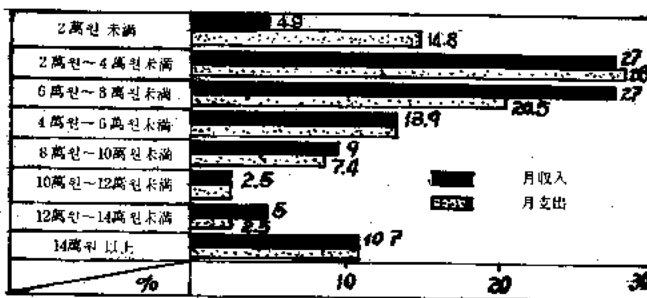


圖 4.2. 月収入과 支出分布

5) 建築設計事務所の入社動機와入社基準

現在勤務하는建築設計事務所の入社動機를 보면資質向上때문이란 応答이56%로第一높은分布를 보

이고 있으며 其他가26% 將來性이19.6% 賃金이1.6% 名声0.8%를 各各나타내고 있다.

其他의大部分은 將來性을 위한 資質向上이 動機였다는 応答이었다.

賃金과事務所 名声보다는 將來를 위한 資質向上이 作業員들에게 더 큰比重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設計事務所の入社基準은推薦을 為主로 하는設計事務所가74%를 나타내어第一높은分布를 보이고 있고其他(親舊의緣故 및 親戚關係 實習)가21% 試驗에依하는設計事務所가6%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一般社會의入社基準 方法과는對照的인 것으로 徒弟制度에依한傳統的인方法에서 基因된 것이라推測된다. 따라서 그影響은組織全般에 비쳐 오늘날의設計事務所の問題點을 안고 있는主要原因이 됨을 알 수 있다.

5. 作業條件에 對한 態度

사람은自己가 하고자 하는 일에 滿足을 느낄때 矜持와 自負心을 갖고 最大能力을 나타내므로 經營組織의 目的을 達成할 수가 있는 것이다.

作業時間 賃金 勤務時間 其他대우등 作業條件에따른設計事務所 職員들의 태도를調査分析하였다.

5-1 作業時間

1日作業時間은 규모에 따라 図5・1과 같이 달라지고 있다.

規模가大規模인 境遇 8時間~9時間 未満이第一높은分布를 보이고 11시간을 超過한 곳이없다.

中規模 境遇 10時間~11時間이第一높은分布를 보이고 그以上 勤務時間에 對해서는急激히 그分布가 낮아지고 있다.

小規模 境遇 8時間~11時間 未満까지의 分布는 大體로 비슷한 分布를 나타내고 12時間 以上 勤務分布는10%를 보여 주고 있었다.

作業員이 願하는 作業時間을 보면72%가 8時間의作業時間을 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2 出退勤時間

出退勤時間은午前9時 或은 9.30分으로 定해져 人體로 잘지켜지고 있으나 規模에 따라 退勤時間은一定하지 않고 設定해져 있더라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表5・1에서 보는 바와같이 實際出退勤時間과 規模에 따른 相關性을 χ^2 檢証法에 依拠 確認한結果 a (Level of significance) 0.05보다 安全한 값을 얻었다. 따라서 規模와 出退勤時間과는 相互 相關性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小規模가33% 中規模가2% 大規模가24%의 不滿을 나타냈는데 小規模 境遇 經營主임의에 따라 出退勤時間이 定해지기 때문인 것으로指摘되며 大規模 境遇 規模가 擴大 되었음에도 그規模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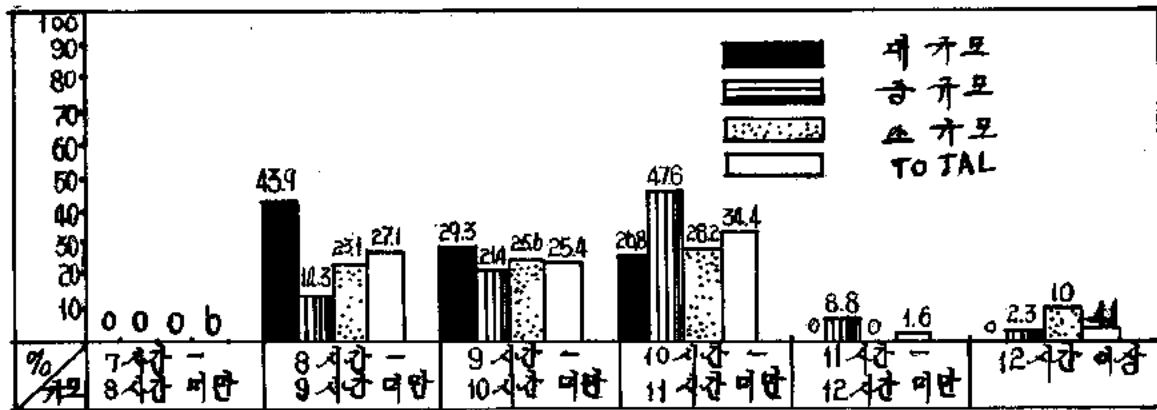


圖 5.1 規格에 따른 作業時間의 變化圖

比例한 体系가 円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5-3 給料

設計事務所의 給料에 對한 滿足与否는 다음 圖 5-2 과 같이 71%가 不滿足임을 알수있었다. 規模에 따라서는 大規模가 71%로써 第一높은 不滿足의 分布를 보이고 小規模가 64.1% 中規模가 47.6%을 나타내고

〈表 5-1〉 規模別 出退勤 時間

ITEM	大規模	中規模	小規模	TOTAL
滿足하다	10	15	16	41
	24.39	35.91	41.03	33.61
그저그렇다	21	18	10	49
	51.22	42.86	25.64	40.16
不滿足하다	10	9	13	32
	24.39	2.15	33.33	26.23
TOTAL	41	42	39	122
CHI-TEST 8.656, D.F. 4, C.COE 0.257391, *9<0.05				

있음을 알수있는데 이와 같은 現象은 設計事務所에 따른 職員들의 價值觀에 對한 影響과 一定 作業員數에 對한 規模의 拡大에 따른 經營의 不實에 因한 것이라 풀이된다. 또한 現狀態下에서 設計事務所의 給料은 適當한 것인지의 与否를 調査하였더니 適當하지 못하였다는 回答이 82%를 차지하는 높은 不滿足率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중 45%가 아주 適當하지 못하다란 強한 不滿足을 나타내고 있었다.

規模에 따라서는 大規模인 境遇 75% 中規模가 57% 小規模가 68%를 나타내므로 中規模의 境遇가 設計事務所의 運營에 비추어 大規模나 小規模보다 比較的 좋은 待遇를 받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規模別 設計事務所 給料의 適當性 与否를 糾明하기 위해 Chi-Test한 결과 表 5-2 과 같이 α (Level of significance) = 0.05로 할 境遇 D.F (Degree of F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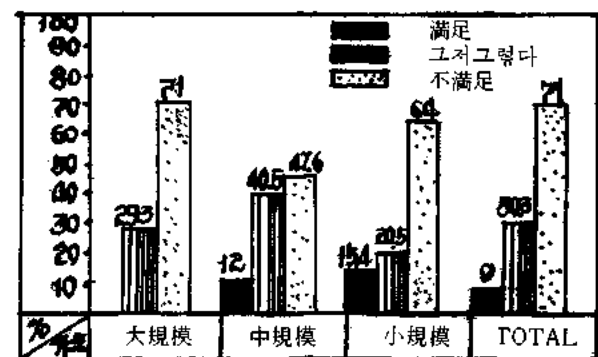


圖 5.2 給料에 對한 滿足度 与否

edom) = 8 이므로 $p < 0.05$ 가 되었다.

따라서 現狀態下에서 設計事務所 給料의 適當性 与否는 規模와 關聯性이 있음을 確認하였다.

(表 5-2) 設計事務所의 現給料給与에 대한 適當性

ITEM	大規模	中規模	小規模	TOTAL
適當하다	0	5	7	12
	0.00	11.90	17.95	9.84
그저 그렇다	10	13	5	28
	24.39	30.95	12.82	22.95
불적당하다	31	24	27	82
	75.61	57.14	69.23	67.21
TOTAL	41	42	39	122
CHI-TEST 10.86500 D.F. 4 C. Co E 0.28596 i, p				

이와같은 現象은 小規模 境遇一人 經營의 不條理에서 起因된 것이라 하겠으며 大規模境遇 社會의 水準에 비해 過渡期에 있는 設計事務所의 組織의 体系가 이에 補助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며 一人經營의 限界性도 또한 主要한 原因이라 하겠다.

5~4 賞与金

有給休暇 보너스 特別手当等 賞与金の 支給与否는 図5~3과 같이 33%가 賞与金を 支給받고 있고 30%가 支給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 其他의 37.7%는 経営主 任意로 支給받을 때도 있고 支給받지 못할때에도 (1年을 基準) 있음을 表示하였다. 이를 다시 細分化하여 規模別로 分類 調査하였더니 中規模가 賞与金 支給率이 第一높고 小規模가 第一낮은 現象을 알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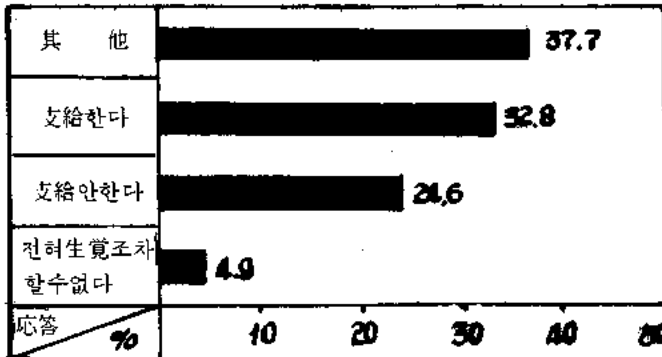


圖 5.3 賞与金支給關係

5~5 休 暇

建築設計事務所의 年 休暇分布狀況은 圖5·4과 같이 5日~9日이 41.8%로 第一높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으며 年中無休인 分布도 23.8%나 차지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狀 況

規模別 休暇分布 狀況은 中規模가 比較的 다른規模에 비해 休暇 日數의 分布가 높은 傾向을 보이고 있어 休暇狀況은 規模에 따라 相互 影響을 받음을 檢證 $\chi^2 = 19.5dt - 10p < 0.05$ 할수 있었다.

5-6 作業에對한 滿足度

設計自體의 作業에 對해서 滿足 与否를 調査한 結果 圖5·5와 같이 滿足과 不滿足이 똑같은 分布를 보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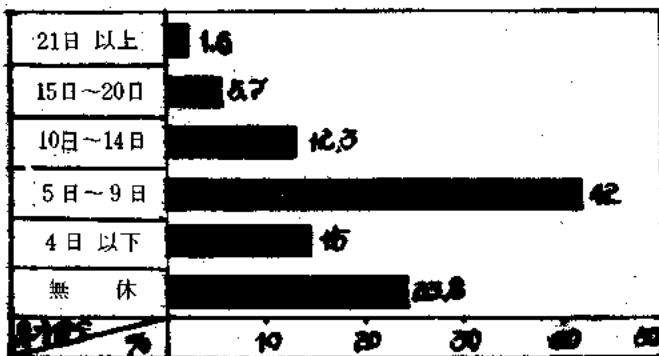


圖 5.4 建築設計事務所의 年 休暇分布狀況

또한 規模別 滿足度의 差異를 調査하였더니 圖5·6와 같이 大規模에 不滿足이 第一높은 反面 滿足度의 分布도 第一낮은 것을 알수있으며 中規模에서는 이와는 對照를 이루고 小規模에서는 30~35%의 均一한 分布를 보이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이와 같은 現象은 大規模인 境遇 規模가 擴大 될수록 組織的 體系가 形成되어 作業自體가 細分化 專門化 되고 있기 때문에 作業者의 意識상실에 基因된 것으로 解析되며 小規模의 境遇 作業自體가 小規模일 뿐만 아니라 設計全面에 걸쳐 自己意思를 充分히 살릴수 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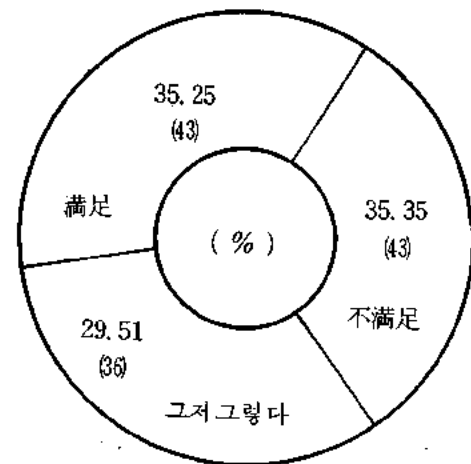


圖 5·5 作業에 對한 滿足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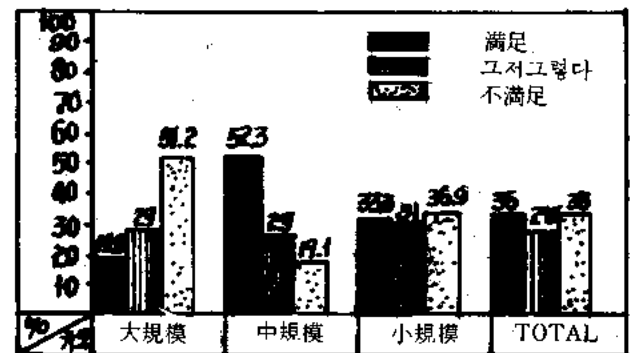


圖 5.6 規模別 作業에 對한 滿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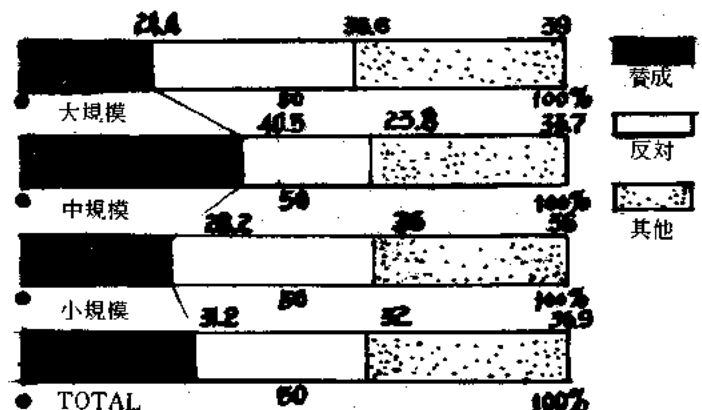


圖 5.7 分業化에 對한 意見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規模에서 오는 作業에 對한 滿足與否와의 連關性을 Chi-square Test를 通해 檢證하였더니 의미있게 나타났다.

따라서 規模와 作業에 對한 滿足度與否와의 關係는 相互 連關性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5~7 分業化에 對한 態度

設計事務所의 分業化에 對하여는 圖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31.5%가 分業制에 依한 作業을 贊成하고 32%가 反對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其他의 45%는 分業制에 對한 贊成을 前提로 応答한 後 經營主의 意思가 作業員에게 現在보다 더 많은 影響을 미칠 憂慮 時期尙早 全般的인 工夫를 할수없다 등을 指摘하고 있으며 事實上 70%以上이 分業化에 對해 贊成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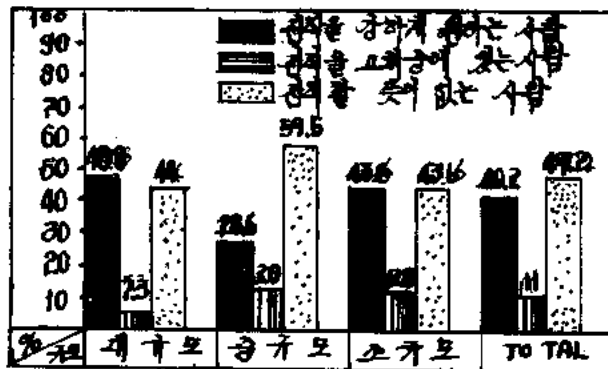


圖 6.1 設計事務所 從業員들의 轉職與否

6. 從業員의 職業에 對한 滿足度와 意識構造

6~1 轉職率

設計事務所 職員들의 過去轉職率은 確實한 統計가 設定되지 않았지만 本調査에서 轉職意思를 表示한 比率은 圖6·1과 같이 40%를 차지하며 11%가 轉職의 可能性을 비추고 있어 約51%에 該當하는 設計事務所 職員들이 轉職意向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수있었다.

職業에 對한 滿足度는 圖6·2와 같이 54.1%가 滿足으로 20%가 不滿足으로 26%가 그저 그렇다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轉職을願하는 사람中 職業에 不滿足을 가진 者도 있지만 職業에 滿足하는 사람도 包含되어 있음을 알수 있었다.

規模別 職業에對한 滿足與否를 調査하였더니 圖6·3과 같이 中規模에서 가장 높은 滿足度를 나타냈고 이어 大規模 小規模順이 된다.

規模에 따른 職業의 滿足與否를 Chi-Test를 通해 檢證하였더니 表6·1와 같이 α (Level of Significance)를 0.05로 할 경우 $p < 0.05$ 로써 職業의 滿足與否는 規模에 影響을 받는다는 것을 確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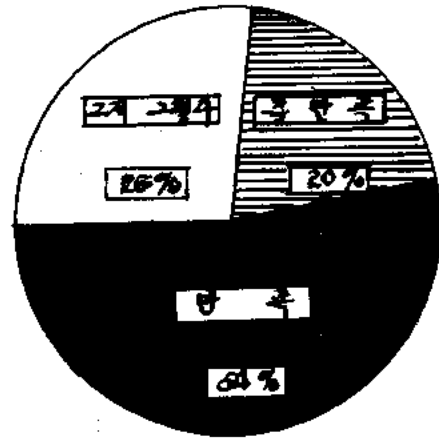


圖 6.2 職業에 對한 滿足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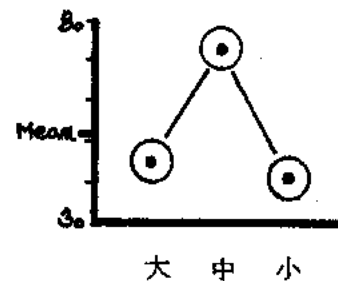


圖 6.3 規模別 職業에 對한 滿足度

〈表 6·1〉 規模別 職業에 對한 滿足

ITEM	大規模	中小規	小規模	TOTAL
滿 足	19	31	16	66
	46.34	73.81	41.03	54.10
그저그렇다	11	9	12	32
	26.83	21.43	30.77	26.23
不 滿 足	11	2	11	24
	26.83	4.76	28.21	19.67
TOTAL	41	42	39	122
CHI-TEST 12.64307 D. F. 4. C. COE				

6~3 意識構造

1) 價 值 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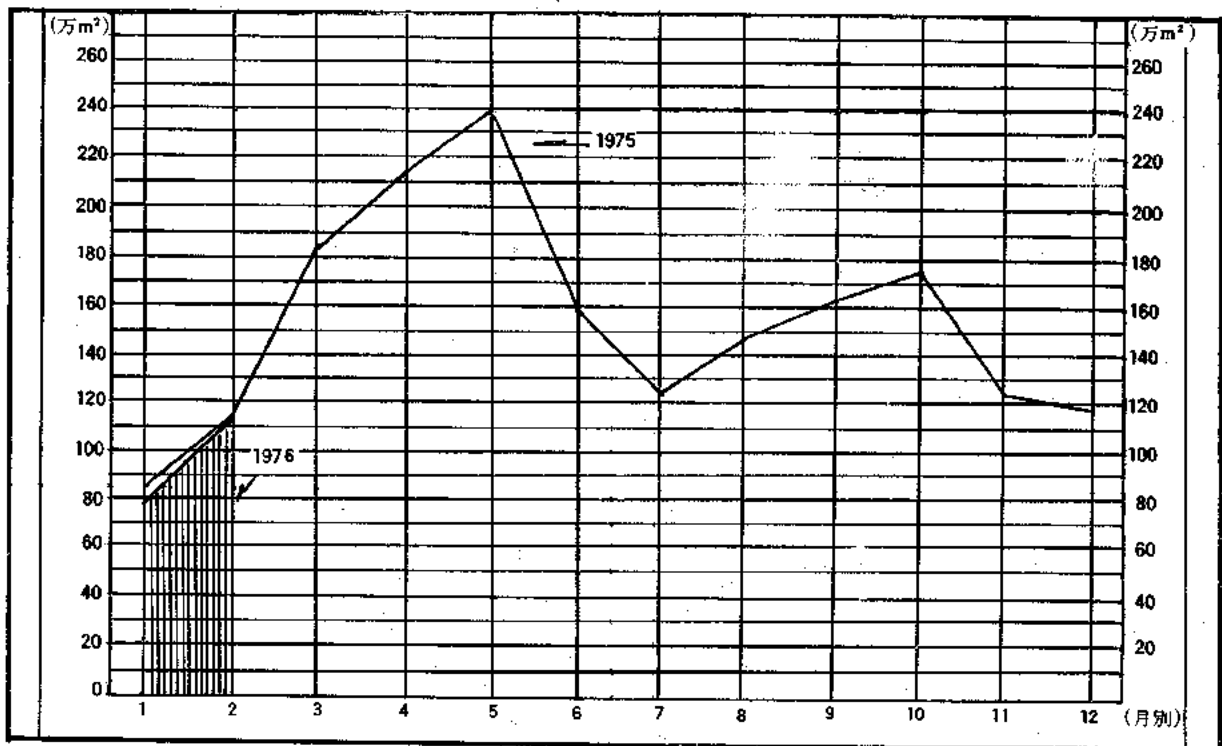
建築設計事務所 從業員들이 設計士로서 矜持와 自負心을 갖고 있는지 與否를 調査한 結果 圖6·4와같이 中規模의 設計事務所 職員들이 확고한 價值觀을 갖는 程度가 61.9%로 第一높은 分布를 보이고 있으며 大規模의 경우矜持와 自負心이 없다가 23%로서 제일 높고 그저그렇다의 分布는 規模에 差異없이 大同小異함을 알 수 있었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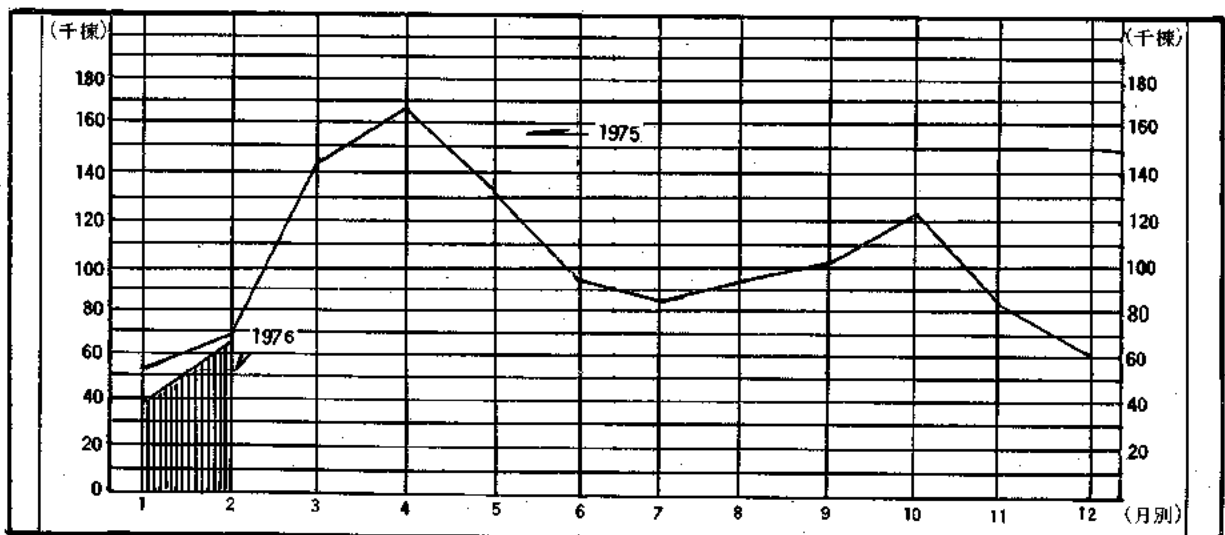
全国建築許可統計

(1976年 2 月分)

月別建築許可 (延面積) 統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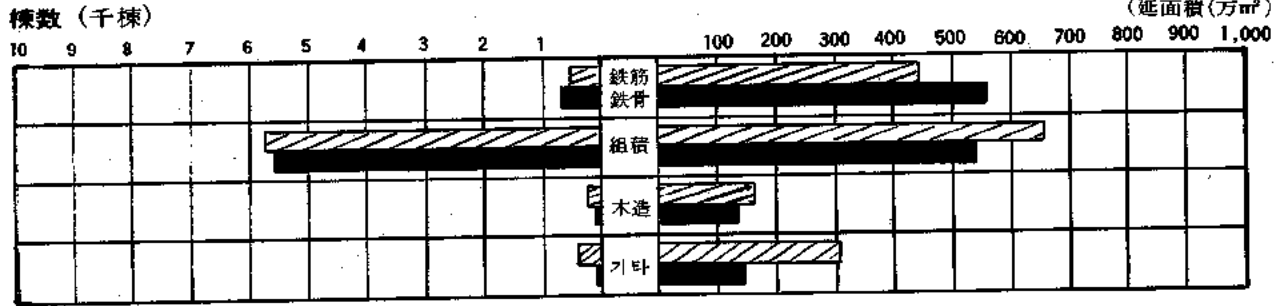
月別建築許可 (棟数) 統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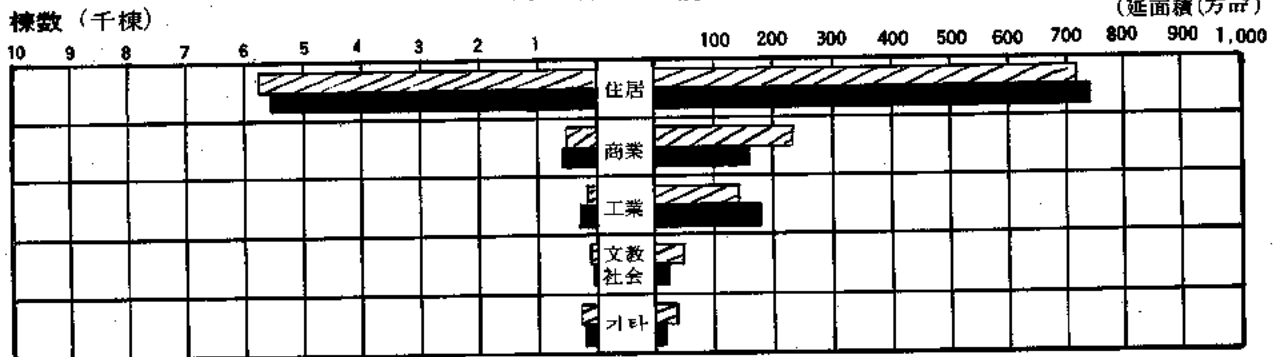
2 月 分

構造別 許可統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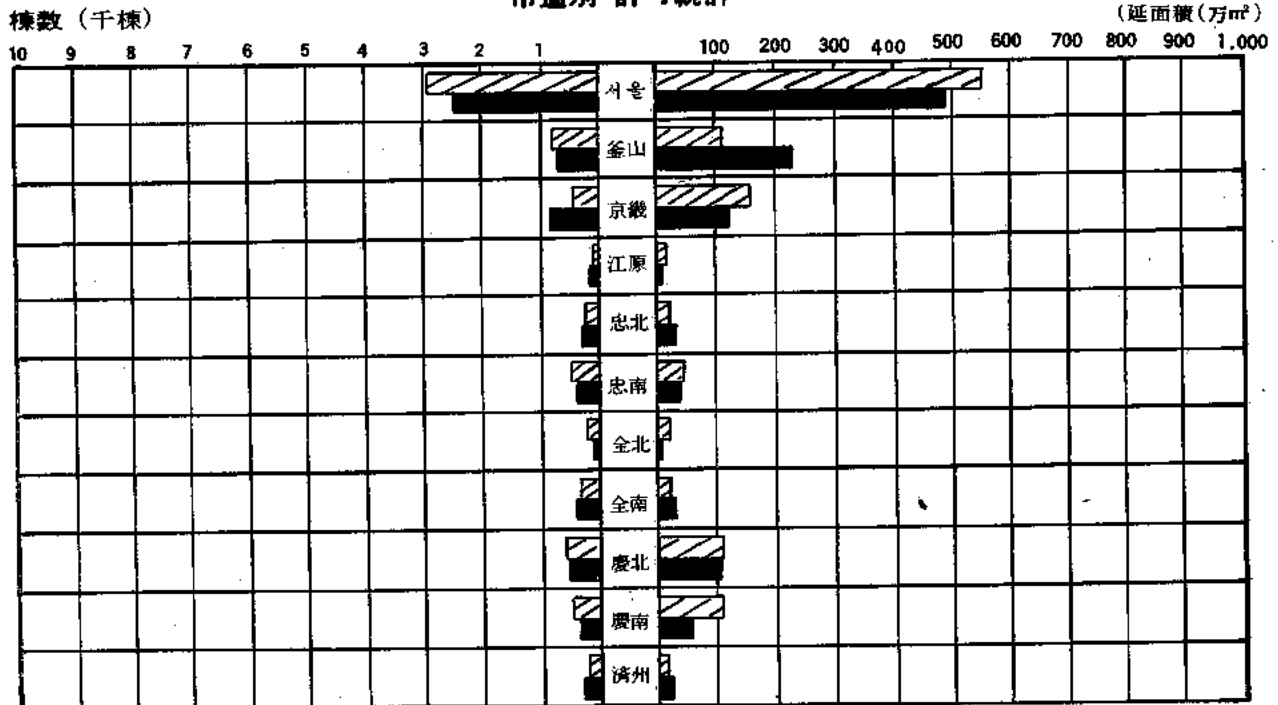
1975 
1976 



用途別 許可統計



市道別 許可統計



全国 許可 統計總括

